

# 이달의 민변

97년 10월호(통권 제13호)

---

특집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사건 일본의 어선 나포와 국제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자료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 발제문

동보두영

# 이달의 민변

97년 10월호

- 1.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2.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3.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4.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5.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6.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7.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8.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9.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10.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11.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 12. 10월 10일 - 1997년 10월 10일 '10월 10일' 특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례 (97년 10월호)

# 법학이론

호출이 10월호

시론 '국민후보' 어떻게 볼 것인가 -고영구 • 4

## 특집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9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21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계동 • 31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사건 일본의 어선 나포와 국제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조시현 • 36

회원의 변론경험담 변호사의 정체성과 소중한 느낌들 -차흥권 • 52

나의 유학기 원헨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김인만 • 55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임영화 • 58

유학회원 통신 노틀담 LL.M 프로그램 소개 -박찬운 • 63

법학이론 10월호

# 법학이론

## 자료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박수근 • 69

한총련 탄압에 대한 학생운동의 진로 -김영규 • 76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요약문 • 81

사회복지위원회 강연 발제문 빈민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호 • 89

기획소송 소장동 신고한 시위를 무력 저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96

신고한 시위를 무력 저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 100

한국노동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104

5.18 관련 수사기록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12

사무국 보고 • 116

성명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 • 120

서성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견해 • 122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중 전·노씨 사면에 반대한다 • 124

# '국민후보' 어떻게 볼 것인가

고영구

4월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정부가 축출되고 정계의 대대적 재편이 이루어질 무렵 어느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는 10여년의 독재정부가 무너진 직후라서 독재세력과 정치판에서 맞섰던 민주당의 집권을 누구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때여서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정계재편은 어떤 구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보수·진보의 양당체제가 가장 좋은 구도라는 대답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그 45%가 모두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 보수·진보양당체제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절반쯤에 가까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임에 틀림없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죽산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은 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독재정권은 죽산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으로 대응하였다. 4.19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생겨났던 진보정당들은 5.16 쿠데타로 그 싹이 모두 잘리고 그 지도자들은 이른바 혁명재판에서 처형되었다.

이후 30년간 지속된 군부정권 하에서 진보진영의 조직적 정치세력화는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90년대 초에 있었던 민중당 시도도 실패한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났다.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확산되어 있던 진보정당 출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과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정부수립 후 근 50년 동안 극우적 독재·군부 정권이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지속하여왔고 국민대중이 그들의 통치에 길들여지도록 세뇌·조직하여왔던 점이다. 둘째는 경제성장과정을 통하여 거대자본이 형성되고 자본과 정권이 유착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봉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금까지의 진보운동이 지식인, 명망가 중심으로 시도되었고 대중의 조직적 기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허공에서 시

행착오적 실험을 거듭하다가 분해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다가은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과 재야 민주·통일·진보운동의 전국적 조직체인 전국연합이 축이 되어 국민후보를 내고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 즉 진보정당의 창당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섰다.

이들의 선거참여에 대하여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다. 먼저, 지금의 정치적 지형으로 보아 선거의 결과가 진보정당 내지는 노동자의 정당을 힘있게 꾸릴 만한 성과를 얻기가 만만치 않아 또 한 번의 실패하는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하기가 이번 선거도 끝내는 위력을 발휘할 지역감정 때문에 노동자들의 표가, 그들 자신의 계층적 이해가 아니라 지역적 이해에 따라 이리저리 쪼개져, 국민후보에게 집중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여 투표자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극우적 색깔공세가 국민후보를 괴롭힐 것도 예상된다. 더욱이 지금의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일색의 정치적 기득권세력과 보수언론 및 거대자본세력이 국민후보를 포위하여 공정한 선거게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도 틀림없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척박하고 험난한 조건에서 일정한 성과를 선거결과에서 끌어내기가 무척이나 힘들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보세력의 정치운동은 계층적 조직기반 위에 터전하지 못하였던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그간 의식의 면에서나 조직의 면에서 팔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왔고, 노동대투쟁과 노동법 파업투쟁을 통하여 고도의 질적인 발전을 하여온 50만을 헤아리는 민주노총이 조직기반으로 되어 있는 국민후보가 과거의 선거에서 처럼 무기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나 예상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집권세력이 선거때마다 악용하고 있는 색깔공세에도 이미 국민들이 식상해 있다.

국민후보에 대한 다른 하나의 비판은 국민후보가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50년이 넘는 헌정사상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처지에서 정권교체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민후보의 출현으로 절대우세의 후보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찌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좌절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라는 것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완결된 목적은 될 수 없다.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앞을 다투어 보수임을 내세우고 있고 친노동자정책이나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예 금기시하고 있다. 진보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당이나 정치세력간의 정권교체가 상징적이고 절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보수이념이 세계를 풍미한 지 이미 오래다. 어떤 이념과 사상이든 그것이 경쟁자 없이 일방통행을 하여서는 교조화되고 형해화되어 폐해가 드러날 위험이 항상 존재한

다.

왕정시대의 훌륭한 통치이념이나 사상이 될 수 있었던 유교도 유일사상으로 500년을 지배하는 동안 여러 가지 폐해를 드러내어 마침내는 민족을 쇠운에 빠지게 하였던 조선왕조의 예를 보거나, 가까이는 체제 내의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보더라도 유일사상, 유일체제의 위험성을 알기에 충분하다.

어떤 이념과 사상이든 그에 대립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 비판되고 긴장과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부단히 개혁되고 발전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종합적 표현이고 실천과정인 정치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의 이념만을 따르는 정치세력들만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보수 일색인 우리 정치판에 진보세력의 현실정치세력화라는 명제는 그것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21세기를 준비하고 분단을 극복하여야 할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이것을 성과물로 결집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진보정당을 힘있게 건설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대사가 되지 않을까.

특집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편집자 주: 여기에 실린 특집원고는 모임동 10여개 단체가 지난 9월 10일에 기독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문화예술인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입니다.

#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sup>1)</sup>

강 내 회(중앙대영문학과)

## 1. 국면의 성격?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 활동들에 대해 체계적이다 싶은 검열과 탄압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작년에는 소설가 장정일과 김하기가 입건 또는 구속되더니, 두어달 전부터는 음란폭력성 만화를 신는다고 일간스포츠지 관련자를 고발하다가 급기야는 <빨간 마후라> 사건을 계기로 <나쁜 영화>의 일부 장면들을 잘라내고, 『천국의 신화』를 만든 만화가 이현세를 입건하는 등 검열과 탄압이 문화예술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탄압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이 아니다. 문학계에서 『자유부인』의 정비석, 『분지』의 남정현, 『반노』의 염재만 등이외에 김지하, 고은, 한수산 등 많은 작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입건, 구금, 구속, 기소, 혹은 투옥의 형태로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고, 미술계에서 신학철이 기소되거나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홍성담등 그 소속 화가 십수명이 구속되어 형을 집행받은 바 있고, 영화계에서 <파업전야>나 <장산곶매>를 제작한 영화인들도 탄압 받은 적이 있으며, 음

악계에서도 왜색이나 대마초 흡연 등의 이유로 이미 자, 신중현, 송창식, 조용필 등 많은 대중가수들이 판금조치 당한 적이 있고 정태춘이 오랫동안 투쟁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시인 박노해와 진관, 소설가 황석영과 김하기 등 문인들은 감옥에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탄압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왜색, 퇴폐, 음란 등 '미풍양속' 위해와 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 문란이 발미가 되어 진행된 적도 적지 않았으나, 그래도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정치사상적 이유가 더 큰 작용을 한 편이었다. 예술가들이 걸핏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니, 간첩행위를 했다는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사상범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국면은 사상의 자유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 탄압이 증가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년전 마광수 교수가 구속된 데 이어 작년에 장정일씨가 입건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음란폭력성조장매체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노골적 성묘사 혹은 폭

1) 이 발제문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끌어내기 위한 개략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추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시도할 생각이다.

력 장면을 신는다는 이유로 스포츠신문의 만화가들과 신문사 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빨간 마후라>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만화가들과 간부들을 기소하고, <나쁜 영화>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또 『천국의 신화』를 출간한 만화가 이현세를 소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현재 국면의 성격이 좀더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사상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집중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이런 국면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로 그동안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에 가해지던 검열과 탄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가수 정태춘을 중심으로 한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반대 운동은 일부 승리를 얻어 내기도 했지만 금년 들어 예술가들에 대한 소환, 입건, 구속 등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판결의 효과는 기대하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듯하다. 명목상으로는 사전 검열이 철폐되었으나 개인들, 일부 시민단체, 언론방송계가 '국민 정서' 위배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으로 음란폭력 표현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검열 효과를 가져오는 입건, 구속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방송심의위, 공연윤리위, 간행물윤리위 등이 '알아서 판결을 해주어' 편하다고 여겼던 문화예술 생산업체들이 사후의 책임 추궁으로 더 큰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 외려 사전 검열을 강화하기까지 하는 형편이다. 최근의 사태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키게 될 것은 따라서 불문가지인데, 우리 사회는 그만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탄압을 받아 위축받게 되면, 사상의 자유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사상은 꼭 표현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표현과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상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박노해, 황석영, 진관, 김하기 등의 시인, 작가들이 구속된 것은 주로 그들의 사상 때문이지만 그들의 사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그들이 생산한 표현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표현은 이처럼 사상의 증거물이 되고, 사상의 최종 발현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낸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우리 사회의 사상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문화예술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탄압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 모순'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영상관계법, 음반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개정 혹은 신설로 법제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결과일 것이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주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진행되었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주로 가족질서, 전통적 가치의 파괴 등 도덕적 이유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탄압의 대상은 물론 전통적 가치관을 뒤흔드는 비도덕적 행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문화예술에서 이런 행위는 '도덕적 수치감'을 주는 음란한 성묘사, '비정상적' 성관계라고 규정받는 동성연애, 시간, 수간 등의 묘사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마광수, 장정일의 소설, 이현세의 만화, 또 <나쁜 영화> 등이 입건되거나 탄압을 받는 주된 이유는 그 표현물들이 음란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깊이 개재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국면은 도덕적 이유에 의한 문화탄압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문화탄압의 정세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발계의 주요한 목표이다.

## 2. '문화전쟁' 과 신보수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정세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사회의 변동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199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에 문화적 자유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세대 네뎃대로 하라'는 구호가 1990년대 초두에 나온 데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에는 도발적이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이다 싶을 정도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문화적 형태들이 등장하였다. 폭주족의 행태에서 보듯 신세대의 삶의 양식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성풍속도 역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빨간 마후라>는 그런 새로운 성풍속도를 보여주는 혼한 사례일 뿐이다. 청소년에게만 문화적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호황'을 누리고 1988년 올림픽을 치루고 난 이후 한국에는 이후 지속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과소비가 체질화되는 소비사회적 양상이 나타났다. 과거 문화는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는 '고급문화'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소비자본주의의 본격 가동으로 인하여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아울러 문화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성의 욕구와 욕망의 표출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자유 혹은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인데 아울러 자유에 대한 이런 요구를 위협

으로 간주하고 그 요구를 한정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노력 또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종의 '문화전쟁'이 아닐까 싶다.

'문화전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신보수 세력이 스스로 '퇴폐하고 타락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라고 규정한 세력에 대해 벌이고 있는 '성전'이다. 선진자본주의에서 보수세력은 1960년대 진보세력의 약진에 의하여 수세에 몰리다가 1979년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1980년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정권을 잡는 것과 함께 지배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신보수세력은 주로 복음파로 구성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시민군운동을 벌이는 호전적인 반정부인민주의, 신나치 등 다양한 세력들을 포괄하는데 '폴뿌리' 정치를 지향하는 강경우파 혹은 극우세력이다. 최근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한 맥베리와 같은 자를 배출하고 있는 이들 신보수세력은 모럴 머조리티와 같은 도덕재무장을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로버트슨 목사와 패트릭 뷰캐넌과 같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 나서기도 하고, 윌리엄 베넷처럼 레이건 행정부의 교육장관 및 부시 행정부의 '전국약물통제정책국'(Office for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대표를 지내기도 하는 등 미국의 지배층을 이루기도 한다. 이들은 제씨 홈즈나 킹 그리치와 같은 강력한 대변자를 하원과 상원에 가지고 있으며, 공화당의 경우 50개 주 중 10개 주를 장악하며, 지방자치체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다. 신보수는 1987년 이래 미국의 '전통가치'를 수호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패트릭 뷰캐넌이 1992년(?)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서 '타락한'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미국을 도로 찾자'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일부 문화계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 기부장

계를 회복해야 한다거나, 유색 인간말종들을 내쫓고 백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거나, 혹은 가족의 신성함을 짓밟는 동성애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한다.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세속 휴머니스트, 성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소수민족들, 반인간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적의를 나타내는 것도 신보수세력이다. 이들은 자신의 광신적 신앙, 서구 혹은 백인 우월주의 등을 비판하거나 여성 및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NPR(공영 라디오)와 PBS(공영TV방송),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NEA(예술지원기금) 등이 일반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반미국적, 반전통적 가치들을 전파하는 데 열중한다며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도 이들이다.<sup>2)</sup> 이들 문화전쟁 세력은 정치권 내에 있는 킵리치 하원의장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풀뿌리 보수집단의 지원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보수세력이 전개하는 문화전쟁과 같은 신보수주의 운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보수적 종교인, 학자, 혹은 시민대표가 정당 후보로 나서거나 동맹을 이루어 발언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진보적 인사들이 정치적 활동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하는 담론정치가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향일 뿐, 우리 주변에 '문화전쟁'과 유사한 보수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지원 검사나 손봉호 교수와 같은 중요한 발언자들이 있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집단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요구와 발언을 법제화한 영상관계법, 음반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장치가 있고, 공연윤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준국가장치들이 있으며, 나아가서 보수적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는 명시적 연계는 아니나 일종의 암묵적 협조체계 같은 것이 있어 보이며 최근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실질적 검열과 탄압도 그런 협조체계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sup>3)</sup> 이런 양상은 군사독재 시절의 국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유도되던 것과는 다르다. 과거에도 장발, 미니스커트 착용, 약물 복용 등의 행위나 '퇴폐' 문화를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리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거나 방송 출연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단속과 탄압이 독재자나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국가기구의 직접 명령과 집행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국가단체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부응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sup>4)</sup> 1980년대말부터 '범좌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조직폭력배나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 등의 형태로 국가장치가 직접 나선 데 따른 호응의 성격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1990년대에 들어와 신세대의 새로운 감수성 출현, 학교교육의 공동화, 유흥업의 거대 산업화, 인신매매 증가 및 포르노문화의 확산과 청소년의 대거 가출 현상 등에 대해 주부나 일반 시민의 우려가 커져가는데도 경찰 등 정부기

관의 대응이 부진함에 따라 불신이 겹쳐져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보수 선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60년의 4월 혁명 이후 진보세력의 상승세가 이어져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변혁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일으켰으나 1989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20세기 진보의 전범을 제공하던 현실사회주의가 피멸함으로써 진보세력은 그때까지 강하게 품어오던 변혁의 전망을 많이 상실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끌어 모으던 힘도 1992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분산되었다. 게다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신보수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의 군사정권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종결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진보세력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더 많이 일으키던 1970년대와 8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보수세력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3. 신자유주의 사회의 모습

신보수주의 경향은 주로 도덕과 감성의 영역, 즉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울러 이해관계 영역인 경제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의 후예로서 20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저항에 직면하자 사회진보세력과 타협 끝에 도달한 케인즈주의적 수정을 다시 과거의 자유주의로 되돌리려는 운동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자유주의의 전횡에 맞선 사회주의 운동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주의가 타협함으로써 내세운 케인즈주의적 처방이

그 약효를 잃게 된 1970년대 초 이후로서 이때 자본은 포디즘적 축적 전략을 일부 수정하여 '포스트포디즘' 혹은 '유연적 축적' (flexible accumulation)을 지향하였다. 유연적 축적이란 예컨대 과거의 경직된 기업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일용직, 임시직 혹은 하청 고용을 늘리고 기업을 감량화하며, 컴퓨터기술의 도입으로 생산과 소비의 적기화 등을 시도하고 나아가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여 초국적 자본을 지향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축적 전략이다. 이 유연적 축적은 과거 포디즘을 통해 국가, 기업, 노동 간에 형성되었던 타협을 깨고 복지국가의 틀을 해체함으로써 케인즈주의가 용인한 사회적 화합을 깨는 효과를 낸다. 이 결과 탈규제, 사유화 또는 민영화, 복지비용의 삭감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민중과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NAFTA 결성에 반대하는 멕시코 농민반란군(자파티스타)의 무장저항, 작년 프랑스의 파업, 금년의 미국의 UPS 파업이 일어난 일이나 금년초에 개약된 노동법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 세력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민주당, 노동당, 사회당 등이 집권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1980년대에 구축된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의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국가와 자본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벌어지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일어나던 시기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주변부 포드주의'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동안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1980년대말 불경기를 맞음으로써 이후 구조조정에

2) 가수 바버라 스트라이샌드에 따르면 미국의 예술진흥원(NEA) 1년 예산은 F-22전투기 한 대 값이다. 펜타곤은 전문가에 따르면 필요하지도 않을 F-22전투기를 442대 구입할 계획이라는데 그 중 한 대만 사지 않으면 예술지원비로 충분한 셈이다. PBS는 납세자 1인당 1달러, NPR(국민공영라디오)은 29센트로 운영된다. 또 NEA의 일년 예산은 미국군악대 예산과 같다고 한다.

3) 이 발제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이들 중 많은 곳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들 역시 국가장치 혹은 준국가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전쟁'처럼 풀뿌리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들어가 기업조직을 유연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 기업의 '군살빼기'로 조기퇴직 유도, 정리해고제도 도입 시도가 일어나는 것은 그 증거이다. 이 결과 핵심요원들 이외에는 일용직, 임시직 또는 하청고용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구 1300만명 중 45%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일용직 혹은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한국도 다수 노동력의 주변부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적 증명이다. 노동력이 이처럼 핵심과 주변부로 이원화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동질감의 와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신세대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성장에 따른 여성인구의 새로운 욕구 성장을 언급하였는데, 그런 변화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들과 달리 노동인구의 분화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주변적 집단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낙오자인구'가 증대함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부동하는 사회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부 문화, 하위문화, 소수문화를 이룸으로써 노동자문화와 같은 대문화의 동질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이외에도 한국에는 교육모순으로 인한 학생 및 청소년 인구의 문제화라는 현상이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한국은 대중교육을 강화해왔는데, 이 대중교육의 근본 기능이 자본의 안정된 축적과 증식을 위한 노동력 과잉공급에 있었던 만큼 교육의 근본적 개선은 이룰 수가 없었다. 노동력 과잉공급을 위해서는 학생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피했지만 노동시장의 위계화 필요로 인해 학생인구 내부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문제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양산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기존의 노동자인구든 예비노동자인 학생인구든 인구의 거의 전층위가 핵심과 주변부로 양분되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 양분으로 인해 민중과 대중의 삶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성격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한국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교역수지 12위, GDP 규모 11위에 해당하고, 국민 일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어선 발전한 나라로 치부되어 이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과실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은 수년전 문화복지를 표방하며 삶의 질을 높일 것 노라고 나서기도 했지만 이는 사회복지를 포기하기 위한 호도책일 뿐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삶의 질과는 무관한 '민영화' 뿐이다. '민영화'는 복지국가가 그런대로 완성된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경향은 드러난다. 이결과 거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상품관계로 전환되며, 우정, 사랑, 자연환경과 같이 과거 '공짜'로 즐기던 인간관계나 자원들이 이윤 축적의 수단이 됨으로써 삶의 실질적 궁핍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기 퇴직, 대량해고, 임시직 및 일용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증대해야 할 필요는 더욱 커져가지만 신자유주의는 유연적 축적 전략을 통해 오히려 작은 국가를 지향하며, 복지비용을 축소한다. 사회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비용 등은 갈수록 개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대중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구의 체계적 방치 속에서 학생들 개인 간의 경쟁으로 사교육비는 급증하게 되고, 의료 비용도 복지국가의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체로 개인 부담이 크며, 특히 주택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삶의 주요 모순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공공영역의 축소와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요

구의 증가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포섭됨으로써 사적 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가 있으며, 삶은 예외 없이 상품관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일적 지배 하에 두고 모든 삶의 영역을 상품관계가 지배하도록 하면서 다시 문화영역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 탈구가 생겨난다. 탈구는 사회구성체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의 한 층위가 다른 층위의 논리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이런 탈구가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문화적 신보수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중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며,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서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 농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들의 차이들을 수입, 인종, 성차, 종족성의 처지에 따른 적대로 전환함으로써 이들 집단들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이에 따라 신보수주의적 공공정책을 펼쳐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그들의 몰락에 대한 공포를 임금 위계의 더 아래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한다. 국가에 의한 폭력과 개인의 일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정부기구의 '축소'가 복지 시행을 위한 장치들의 제거로 인한 축소이지 결코 통치와 위력의 축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따라서 통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길거리에 무장 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국내에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고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수주의는 사회적 통제를 늘리려는 것이다. 문화적 도덕적 신보수주의 전략, 즉 문화전쟁이 필요해지

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 4.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대응

신자유주의 축적논리가 지배적인 논리가 되면서 정치경제는 유연적 축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이에 따라서 노동력의 유연화가 일어나며,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통제의 강화가 발생하지만 유연적 축적은 다시 기획의 중요성이나 기타 다른 창조적 힘을 풀어놓기도 한다. 1980년대말 이후 소위 포스트모던한 문화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연적 축적이 풀어놓은 새로운 창조적 능력이 문화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데이빗 하비가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유연적 축적이 만연하는 사회는 즉흥성(volatility)과 순간성(ephemerality)이 지배하게 된다. 유연적 축적은 자본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능한 한 '눈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 쪽으로 자본을 이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장기계획보다는 단기계획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고,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기술 개발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관리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격감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의 수행능력을 마비시키고, 장기간의 독감과 같은 증세를 낳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인 '여피증후군'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즉흥성의 생산을 적극 관리하거나 그것에 개입하기 위해 취향과 의견을 조작하려는 노력이 극대화된다. 새로운 기호체계와 이미지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광고와 미디어 이미지가 문화적 실천에서 훨씬 더 큰 통합 역할을 맡게 되고 자본 축적의 동학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pp.350~351). 유연적 축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따라서 문화적 생산에 대한 자본의 집중으

로 문화가 산업화되고, 삶의 전영역이 상품생산과 이윤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술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가 발생하여, 섹스, 화폐, 권력의 상호관련 현상도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유로운 성문화는 대중의 새로운 감수성의 증거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성의 상품화로 성이 화폐관계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안에 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유연적 축적을 구사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따라서 문화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된다. 한편으로 유연적 축적 전략이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과실금을 따게 되는 대중도 생기는데 이들이 여파적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특히 금융부문이나 문화생산 영역에서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장하는 세력으로 '문화대중'(cultural masses)이라고도 불리는데, 문화적 자유주의 경향을 띠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다른 한편 유연적 축적은 위에서 분석한 대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인구를 대량 생산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문제아 혹은 낙오자들이 되면서 '펑크적' 경향을 띠는데, 우리 사회에는 지존파나 막가파가 아니면 폭주족, 봉다리족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문화적으로는 여파든 펑크든 금융주의나 경건주의보다는 향락주의 혹은 이상파괴주의 등 자유주의적 양상을 띠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문화에서 자유주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성애든 동성애든 자유로운 성관계를 추구하거나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성표현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꾀하는 등 기존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의 틀을 깨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문화의 이런 자유주의를 방치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의 감성이나 행동방식이 경제적 생산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

나, 예술적 실험들이 사회적 복지를 필요로 할 때 문화의 자유주의는 대체로 억압되거나 선별적으로만 허용되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개인의 자유만 허용함을,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가 인간 모두에게 허용되는 자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보다는 독점하려는 입장이며, 따라서 문화적 자유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치게 된다. 문화의 자유가 여파와 같은 일부 문화대중에게만 허용될 뿐, 여파와 동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펑크의 경우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등장하고 있는 폭주족처럼 일탈적 행동을 추구하는 집단들에 대한 기성세대, 경찰 당국, 언론, 방송 등의 반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폭주족과 같은 '문제아', '빛나간' 청소년들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가 주조해낸 새로운 인간형의 하나이다. 문제아, 가출 청소년들, 폭력학생 등은 자본주의 교육이 수행하는 인구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늘 감시와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위협하게 여기는 지배세력은 이들의 출현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도덕적으로 재단하며 일부의 음란폭력물 생산자에게 있다고 우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추동되는 자유주의적 경향들의 대중화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가족을 삶의 최종적 안식처로 만들고자 하는 가족이데올로기(《나홀로 집》), 결혼을 신성시하는 결혼이데올로기(《사랑과 영혼》), 개인보다는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국

가이데올로기(《람보》, 《인디펜던스데이》) 등이며 필요에 따라서 도덕재무장과 같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보수적 노력들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명분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 기획과 같은 사회통합 정책으로 수렴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1979년에 정권을 잡은 마가렛 대처의 교육장관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가 한편으로는 신직업주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적 혜택을 받은 인문학(the Humanities)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 대신 직업교육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인의 영국인다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교과과정'(the National Curriculum)을 강화하려 한 것이 그 예이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교육부장관을 지낸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이 '문화전쟁'(the Culture Wars)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새로운 통신 및 정보 자본의 등장으로 문화에서 자유주의를 강화할 소지가 나타나서 국면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빌 게이츠같은 새로운 자본가들은 인터넷과 같은 자유로운 통신의 전세계 확산을 필요로 하므로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위 '사이버문화'가 자유주의적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데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사이버문화'와 '가상계급'(virtual class)과 등장한 미국에서 문화전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보수주의의 자유 통제는 쉽게 중단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모순이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할 듯 싶다.

## 5. 대응의 방향 모색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공안당국과 공운 등 보수세력의 탄압 혹은 검열에 맞서기 위해 우리 사회 진보진영은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방안을 제시할 차례가 되었는데 사실 걱정이 앞선다.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 발제문의 한계로 문제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처지라서 제시하는 방안이 내부 토론을 위한 가안 정도의 성격 이상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현 탄압국면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한 정세 분석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면 일단 대응은 신자유주의적 축적 논리와 그 문화적 탈구 현상에 대한 대응이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반해 탄압받는 당사자는 정세 분석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 국면이 생길 때 현안문제에 대해 장르별로 투쟁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탄압을 받는 당사자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쟁의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전체 국면과 정세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음반법에 대해서는 일부 검열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매체영향력이 적은 '오디오'는 풀어주는 대신, 영향력이 큰 '비디오'는 옥죄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전선'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세분석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으면 공조를 구축이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통신검열의 문제는 남의 문제로 보이고,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컴퓨터 혁명이 삶의 전반에 대한 지배력 강화하게 되고, 전자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경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은 오늘 이 토론회가 다루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의 장르들, 문화적 실천의 부문들이 개별화, 파편화하여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과거처럼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인식하여 대응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진행되는 탄압에 가담하는 세력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현재 간행윤리위, 공연윤리위, 방송심의위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며, 그 정치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사회적 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들은 개인들일 뿐인가 아니면 대중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보수주의 세력이 소수 개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위 '풀뿌리' 정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운등의 '심의관'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감수성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논리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강지원 검사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표현물을 보지 않을 권리,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므로 남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할 뿐이라는 입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려는 측과 음란물을 보지 않을 권리를 추구하는 측 사이에 타협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어떤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여기서 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와 거부의 권리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로 축소된다. '등급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이며, 만화 등의 유통 통제를 해야 한다느니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식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경계선을 왜 인정해야 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성적 흥분을 초래하면 음란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것이 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따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아가서 또다른 쟁점은 성적 흥분, 혹은 수치심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수치심은 누구의 판단인가, 개인의 판단인가, 집단의 판단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단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아직 논란을 제대로 벌인 적도, 합의에 도달한 적도 없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외설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면 사회적 합의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최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문제와 쟁점들이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사회는 공운이나 방송심의위 등이 사전 혹은 사후 결정과 처벌의 위협으로 영화, 책, 음반 등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의 일방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공격이 정세적으로 규정됨을 이 발제를 통하여 살펴본 셈인데, 그렇다고 하여 논리적인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논쟁의 종식이며, 이는 곧 사회에 허용되어야 할 비평의 자유를 축소하는 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큰 자유가, 혹은 원리가 침해받거나 무시당하는지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표현자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탄압을 시작하는 것은 사회의 비판적 능력을 축소하는 것

이 되고 말 것이다.

동시에 국내 진보진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경제적 진보와 문화적 진보의 공통점 혹은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의 공감대 형성 혹은 입장 차이의 확인을 위하여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황석영, 박노해, 진관, 김하기 등의 투옥과 장정일의 구속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차이들을 어떻게 가늠하며, 어떤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 장정일의 구속에 대해 사석에서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진보적 비평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화에서 어떤 태도가 진보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진보진영은 엄숙주의와 경건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한 구진보적 성격이 크다. 구진보는 사회주의국가의 당국가가 내세우는 헌신적 영웅주의를 이상화하며 기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진보의 감수성은 현재 새로운 감수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성의 자유나, 기존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나타나는 '버릇없는' 반응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 혹은 도덕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감수성에 따른 실험적 삶의 방식, 전통적 가족관계의 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페미니스트, 혹은 동성애자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보수적 탄압이 일어날 경우 진보진영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은 당연하다. <빨간 마후라>나 <나쁜 영화> 등이 탄압을 받거나, 혹은 『천국의 신화』가 입건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이 가진 문화예술

적 감수성 문제를 쟁점으로 떠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곧 '차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아닐까?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욕구가 분출하고, 혹자는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볼지 모르나 성적 표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면 당위와 욕망, 질제와 쾌락 사이의 간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 간극을 최대한 긴장되게 벌여놓는 것이 좋겠는가, 혹은 간극을 최대한 축소해야 할 것인가? 또 표현의 어떤 수준까지가 개인적 권리의 표출이고 어디에 이르르면 범죄가 구성되는가? 우리 사회와 진보진영은 이런 질문을 화두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였거나 혹은 그런 질문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였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 6. 결어

이 발제는 현단계 문화예술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정치경제학적 정세 분석을 시도한 셈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이 쉬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보는 이 발제의 분석에 일리가 있다면 문화예술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통제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조항(일명 1%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정부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의해 나왔다가 취소된 것만 보더라도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술장식품 설치의무는 겨우 존속되었지만 현행 규제대로라면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모두 1%법의 대상

이 되던 것이 이제는 연면적 2만평방미터 이하 건물은 건축비의 1%에서 0.7%로 하향 조정되었고, 2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2만평방미터까지는 0.7%,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로 더 낮추어졌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 이런 식의 규제 철폐나 축소 조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BS 노조의 파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방송국이 예산 지원 없이 위성파외방송을 파행 운영하려는 데 대한 항의의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단 방송만이 아니라 공익성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 현상은 우리 사회 어느 부문에나 발견되는 고질병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와중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상충하는 데 따른 문화적 결과로서 사회복지의 축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도덕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유연적 축적

의 전략 구사는 부분적으로 여피문화의 가능성과 성적 자유 등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일탈로 보이는 현상들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는 오로지 문화의 상업화 혹은 문화산업의 출현에 따른 결과이다.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적 태도가 문화로 이월될 때 선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여피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수용하지만 펑크적 경향을 띠는 자유주의적 태도는 즉각 공격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적 면모를 띠게 된다. 경제에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은 대중의 개인적 문화적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치나 종교적 권위에 호소하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는 무한으로 추구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 제한과 억압을 가하는 이 세력은 자유를 독점하려는 세력이다. 이 독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는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 광 회

### 1. 들어가는 말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 지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동일한 말이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에 이르러 넓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sup>1)</sup>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형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이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을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요즈음의 상황은 문제되는 매체도 소설, 만화, 신문, 컴퓨터 통신 등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에도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위시한 출판물과 <파업 전야>와 같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군사정권시대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군사정권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측이 당연히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압제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크게 보아 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논리의 탐구와 대안의 제시 같은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가 아닌 정치적, 물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다툼은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요소가 다소 약화된 상태로 상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얽혀든 복합적인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상황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이전 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현 시점에서 본다면 동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현의 자유'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1) 일반적으로, 국민이 언론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 2.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표현의 자유' 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단순한 문제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그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측에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한 논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 편이 주장하고, 다른 한 편은 '사회 전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응수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거의 무력함에도 논의가 확장되거나 구체화되지 아니한 채 반복되고 있다. 가령,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문제가 되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해당 신문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의견을 밝혔는데, 각 의견 사이의 논조의 차이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의한 최종적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동일한 논리로 합일될 수 있었다.<sup>2)</sup>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견만으로는 장정일씨가 과연 처벌되는 것이 옳은지, 이 승희씨의 누드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하는지,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어디까지인지, 한총련이 만든 자료집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되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하여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지점을 정확히 하고, 그 해결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 가.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문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내용별로 나누자면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성적인 '표현의 자유'와 폭력적인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러한 구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우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중요성, 원리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메커니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르게 취급받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면 논의의 흐름은 '음란물 규제'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몰타기됨으로써 우선 시급한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당달아 달미를 잡히는 예가 적지 않았다. 영화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영화는 사회적·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독립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번진 논의의 중심은 '포르노영화관 허용 여부'로 대표되는 음란물의 문제였고, 그것은 사회비판적인 영화의 해방마저도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

2) 1997. 8. 27. 자 『일간스포츠』, 이희창, 김대중, 김중필후보의 정견 참조.

3) 성적인 표현과 폭력적인 표현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적인 표현은 형사상의 제재가 되지 않는 등 다소의 차이는 있다. 그것은 폭력적인 표현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표현을 탐닉하는 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사회에 공격적인 행동을 초래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폭력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의 논리가 풍부한 음란물의 규제수준에 맞춰 정치적인 표현물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정일씨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 등이 도덕적인 표현의 문제라면, '한총련관련 컴퓨터통신 제한 조치', '학생운동권이 제작한 자료집에 대한 이적표현물 규정 및 찬양·고무죄의 자의적 적용', '컴퓨터통신상의 선거관련발언에 대한 규제' 등은 정치적인 표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 나. 침해의 주체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는 국가권력이었다. 물론 국가권력이 아니라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나, 의미하게 다루고 진지하게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정도로 위협한 경우는 대체로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가 충분히 해결되기도 전에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가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자본이다. 그 가장 극적인 예는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뒷받침하는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1997. 4. 18. 개막)에서 천안문사태를 다루었다는 <태평천국의 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까 고민하던 주최측에 의해 상영이 취소되고, 더불어 본선경쟁출품작 중 한편으로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마저 상영이 취소된 것이다.<sup>4)</sup>

또한, 자본 중에서도 언론자본의 내부적인 검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단이 각 매체들이 언론자본의 수중에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이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데, 스포츠신문의 만화에 대한 검찰의 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같은 자본이 경영하는 종합일간지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포츠신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만화를 게재하는 언론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 자본으로서 지배적인 사상과 문화를 옹호하는 보수성, 기업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말초적인 자극을 생산할 필요성 사이에서 일관된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들 언론자본을 어떻게 옹호하거나 또는 배척하는가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다. 매체의 다양성

집회에서의 정치적 발언 자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는 경우<sup>5)</sup>처럼 어떠한 매체를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표현은 어떤 매체를 통하여 매개되고 있다. 그 매체는 소설, 만화와 같은 고전적인 출판물과 영화, 비디오물 같은 영상물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 CUG(폐쇄이용자그룹)와 같은 컴퓨터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도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침해들은 사상적으로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되 각 매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그 억압에 대한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각 영역이 처한 입장과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저항이나 대응만을 주로 하

4) 김명준, 『배반당한 꿈』, 『키노』, 1997년 5월, 104면 이하 참조.

5)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박수를 친 것을 찬양·고무죄로 기소한 예도 있었다.

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연결하여 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침해되는 매체가 다르면 각기 다른 방식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각 매체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확보 정도도 다르고, 음란·폭력물이라고 하여 단죄되는 정도도 다르다. 심지어 컴퓨터통신같은 경우는 가장 선진적인 미국에서조차 아직 그 법리와 규제의 원칙이 형성 도중에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분명한 원칙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이 상이하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가령, 만화가 음란·폭력물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규제에 좀 더 노출되는 이유는 단순히 문자에 의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등에 비하여는 수용자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직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영화와 같은 경우는 수용자층이 보다 대중적이고, 표현능력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다 구체적인 규제가 진행되어왔고, 그를 둘러싼 논의도 큰 진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헌법적 판단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 매체의 차이는 다른 강도와 내용의 억압을 낳고 이에 따라 그 논의의 정도가 진행된 상황도 불균등하므로 대응방법의 모색이나 현재의 억압적 구조를 대체할 대안적 매커니즘의 제시에 있어서도 총론은 같되 각론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 3.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지금까지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라는 평면적인 문제제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그 반대논리가 대립하는 상황

에서 적당한 중간을 찾아 선을 긋는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볼 경우, 지금 벌어지는 상황처럼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보호'가 마치 언제나 상호 대립되는 이익들이나 것으로 여론을 잘못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래 취지는 실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각 매체에 따라 훨씬 더 구체적인 논의와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논점만을 살펴본다.

① 모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② 만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③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가.

④ 우리 사회는 '불온', '음란', '이적성', '유해'와 같은 개념에 대한 논리적 기준을 발견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가.

⑥ 매체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에 차이를 낳는가.

⑦ 각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수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⑧ 소위 음란·폭력물은 추상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도 범죄의 증가나 성적 행동의 변화에 기여하는가.

가.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적 논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적 논리의 고전인 『자유론』에서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권력 행사의 한계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리는 거의 모두 이 저작에 들어있는바, 요약해본다.

(1) 강제에 의해서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방어'이다. 그리고,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sup>6)</sup> 어떤 개인의 행위 중에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다만, 타인의 보호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나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타인과 관계되는 개인의 행동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이 사상 자체의 자유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고, 양자를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 한편, 비록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눈에 바보스럽거나, 기이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6) 특히 음란물의 인간행동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실증적인 뒷받침 없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1970년 미국의 '음란성과 포르노에 대한 대통령위원회'(일명 존슨 위원회), 1979년 영국의 '음란성과 영화검열에 관한 내무성위원회'(일명 윌리엄스 위원회), 1985년 미국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무장관위원회'(일명 미즈 위원회) 등의 실증적 연구가 있었는데, 존슨 위원회와 윌리엄스 위원회는 영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즈 위원회는 영향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면, 1994).

(3)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4) 행동이 의견과 마찬가지로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다. 곡물상이 빈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든지 혹은 사유재산이 도둑질이라는 의견이 단순히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될 경우에 박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일한 의견이 곡물상의 집 앞에 군집한 성난 폭도들에게 육성으로 전달되는 경우, 혹은 플래카드의 형태로 동일한 폭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5) 자기 자신의 선에는 관계되지만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과 성격으로 인해 그가 감수해야 할 유일한 불편은 타인의 비우호적인 판단과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는 불편뿐이다. 우리는 그를 사회의 적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순전히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 대중이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대중이 간섭을 할 경우에 확률적으로 보아서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간섭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6) 존 스튜어트 밀은 그리하여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넷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에 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의는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선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없고, 이성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

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사람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국가권력의 규제도 모두 폭력적이고 위선이며 증오할만한 것이라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물이든 법이 아니더라도 여론의 견제를 받기 마련이므로 사실상의 제약을 피할 수 없고, 규제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다수의 기호에 불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가진 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급진적인 견해도 경청할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sup>7)</sup> 하지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견해도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지는 아니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할 자유나, 흔히 드는 예와 같이 영화관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외칠 자유를 허용할 수 없는 데에서 보듯이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의 고전적인 논의를 참조해보았을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의에 따라 어떠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싸워나가야 한다. 지금의 국가권력은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자신들의 자의적인 잣대로 '이적성'이라는 논리를 동원하여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진보적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떤 논리는 그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의하여 평가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호논의를 통하여 폐기되거나 도태될 뿐이므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한다는 것은 가장 규탄할 만한 범죄이다. 다만, 어떠한 정치적 표현이 의견의 피력이나 옹호를 넘어 선동의 수준에 이르면,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해석을 거쳐 규제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구별이 자의적이거나 남용되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은 일정 정도 이상의 것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행하여질 경우에 일부 사람들의 감수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사람이 강제로 일정 정도 이상의 표현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시에 그것이 미성년자들에게 함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동시에 기만되지 아니한 채 동의하는 성인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본다.

#### 다. 미성년자의 문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는 것이 음란·폭력물로부터의 미성년자의 보호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 중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성년자의 구별을 부인하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

적으로 미성년인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타인이 충고하거나 설득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하여 본인을 강제하거나 처벌하거나 하는 것이 부당함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로서는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감수성을 보호하여야 할 미성년자를 위하여 다른 성년자가 그에 대하여 음란·폭력물을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차단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구별이 자의적이거나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구별을 공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하여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계를 정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성년에 가까워진 미성년자들이 사실상 성년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미성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주장으로는 타당하지만 미성년과 성년의 구별을 없애자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다.<sup>8)</sup>

결국 '표현의 자유'와 표현물을 향유하여 행복을 추구할 성인의 권리를 최고도로 보장하되, 그러한 표현물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위하여 일정한 표현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sup>9)</sup>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줄속입법으로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청소년 수준으로 낮추는 점, 사실상의 검열의 권한을 국민 일반의 평균적 감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적어도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지 아니하고 있어 자의적이고 침해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7) 조광희, 「최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를 진단한다」, 『연세춘추』, 1997. 8. 4.

8) 인권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힌 적이 있었다.

있다는 것,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표현매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규율하는 것 기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입법 의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sup>10)</sup>

다만, 청소년문제 해결의 본질은 건전한 교육과 풍요로운 환경을 여하히 만들어주느냐에 있는 것이지 매체물을 규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참다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불건전한 문화가 넘쳐 흐르고 있다면 특정 매체물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는 매체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sup>11)</sup>

#### 라.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표현의 자유'가 최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본에서는 매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하여 그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때에는 분명히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일반적인 소설과 만화, 그리고, 영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방에

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방송의 경우에 그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명백히 한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정한 사람의 보호를 위한 요구 사이에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메카니즘을 구성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영은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완전등급제와 일반영화관에서 상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상영을 위한 등급의 전용관의 설치'라는 도식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비록 새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등급의전용관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영보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나쁜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검열이 계속 행해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소년 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마저 위 도식 자체에 대한 본래의 거부감을 버리고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위 도식이 사전검열 철폐, 표현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을 담지하면서도 일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그에 비하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만화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더 어려운 것은 아직 그 기술적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안정된 평가가 곤란하고, 전세계적인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통신의 경우이다. 이 매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수용

억제를 의도하는 경우에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 수준 침해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새로운 관리의 메카니즘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신법위법 위헌판결도 그러한 새로운 메카니즘의 창출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제하는 측조차 구체적인 논리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인다.

#### 마.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처벌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 미국의 워렌 대법원장도 외설을 재판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간주하였다. 어떤 이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realism)일 뿐이고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colorful) 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sup>13)</sup>

그러므로, 통제하려고 하는 대상의 성격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자의적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면 통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단념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국민 일반의 감수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은 국가기구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호한 기준을 갑자기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정일씨, 마광수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품이 성인에게 음란한 정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동원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소설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걱정된다면 우선 그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에게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창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성인의 표현물 수용에 대한 권리나 능력을 청소년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 4.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에까

13) 헨리 J. 에이브러햄, 윤후정 옮김, 『기본적 인권과 재판』, 238면, 이대출판부, 1992. 또한 미국 한 남부 도시의 검열위원회는 운동장에서 백인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보여준 영화를 '외설'이라고 제재한 적이 있고, 시카고에서는 경찰 검열국은 월트 디즈니의 사라져가는 초원에 대한 영화가 그것이 어미 들소가 진눈깨비가 날리는 속에서 분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외설로 판정했던 것이다(The New York Times, 1969년 6월 27일).

9) 각종 입법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호주도 출판물, 필름, 컴퓨터게임에 관하여 등급법을 시행하고 있다(www.oflc.gov.au 참조).  
10) 『한국일보』, 1997. 9. 3. 자 사설은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이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벌만 능주의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11) 이형근, 「표현의 자유와 매체물의 규제」, 『이 달의 민변』, 1996년 12월호, 19면  
12) 영화의 사전심의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와 입법방향에 대하여는 권혜령,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년 석사논문 참조.



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면 '청소년 보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일소되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던 영화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획득함에 있어서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

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현재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성질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연히 하나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침해를 그 근거와 매체, 주제별로 구체화하고, 각 매체별로 고전적 논의에 근거한 충분한 대항논리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매체의 특성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관철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이 연구와 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면서, 위원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여론을 설득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하루 바빠 쟁취하여야 한다.

##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만화가)

### 1. 심의의 역사

60년대 만화가들로부터 시작된 '자율심'이 가간의 혼란을 겪는 와중에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고 그 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검열!)를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는 문체부 산하 법인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나, 경찰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이른바 '불량만화' 단속에 나설 때 간윤의 심의필마크가 없는 것은 수거해가는 등 현실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에는 주의, 경고, 제재의 세 단계가 있고 출판등록과 취소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출판사가 출판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윤에서는 자율심의임을 주장하지만 형식상 신청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까지 가능한 까닭에 출판사 측에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심의원이라는 직책의 직원이(만화전문가 여부 불문) 일부 눈에 띄는 장면만을 체크해 올리면 간윤의 윤리위원들이 부분들만을 보면서 그 만화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장면을 수정하라는 지시에 출판사는 후환을 막기 위해 따라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윤리 위원들은 만화의 비정상적인

장면들만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만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어버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만화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으로 종전 심의에 걸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은 후퇴하면 안된다.
- 칼은 그럴 수 없다.
- 육설을 쓰지 못한다.
- 어른에게 반말을 못한다(둘리의 예).
- 어른에게 불은한 태도를 보이거나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한다(강도에게 대드는 것도 안됨).
-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 격투장면은 일정한 횟수 이상 지속할 수 없다.
- 경찰이 강도에게 서라고 했는데 도망가게 표현할 수 없다(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 거지, 판자집 등을 그리지 못한다(북한을 이롭게 하므로).
- 가난한 오누이가 한 방에 잘 수 없다(근친상간의 조장 위험).
- 계모가 학대하는 것을 그럴 수 없다(공위팔귀 불가).
- 임진왜란때 의병들과 농군들이 죽창과 낫 등을

들지 못한다(몽둥이로 고칩).

• 심지어 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 2. 심의의 영향

이러한 사전심의에 의해 작가들의 상상력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작가적 자존심이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가 없는 일본과 잭이 점점 벌어져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본만화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지요. 거의 제한이 없는 일본만화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을 다루면서 마음껏 발휘되는 상상력에 힘입어 한국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음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만화는 상상력을 맘껏 발휘하는 것이 그 매체적 특성상 주요소인데, 우리는 이것이 억압되고 왜곡당하다보니 편한 내용의 편한 표현들로만 채워진 재미없는 만화들로 독자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지요. 결국 현재의 불법복제 일본만화가 판치는 것도 궁극적 원인은 심의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문화체육부는 만화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만화를 육성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심의를 강화하여 만화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작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만화 육성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으나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만은 확실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 3. 근래의 만화와 만화계 동향

우리 만화가들은 초기의 단순한 선악이분법과 권

선징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심층적인 심리, 사회문제까지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만화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만화와 경쟁하기 위해 우리 만화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내용과 기법들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와중에서 선정적인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동성애까지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불법복제 일본만화 속에 근친상간 등의 묘사가 끼어 들어오기까지 하면서 작가들은 충격과 더불어 다양한 소재발굴에 노력하는 중이고, 근래 몇 년간 꽤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시각과 조급함에 빠진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과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전체 스토리를 보지 않은 채 문제 장면만 확대 보도) 등으로 당국은 규제정책(총리실에서 매체규제법 지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고 일진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이현세씨 소환, 음란폭력성조장매체물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의 고발에 의한 스포츠신문 만화가 기소, 만화가계와 서점 등에서 경찰의 만화 강제 수거, 대본소 주인 140여명 소환 등으로 우리 만화시장은 급격히 붕괴하고 있으며, 출판시장 수입도 1/5로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종의 청소년유해매체목록을 발표(10년간 발행된 만화를 대상으로 단 며칠만에 선정)하여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전 만화가와 만화출판인이 단결하여 표현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섭, 이두호)를 조직, 절필선언, 3개 성인잡지 휴간, 서명작업, 삭발 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문화인(예, 음악인)과 연대하여 표현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을 계획 중이며 법정 투쟁과 기타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만화인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화의 날'도 11월 3일로 제정하였습니다.

## 4. 만화에 대한 규제

### 가. 사전심의의 배경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 등 각종 규제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편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 만화는 어린이용으로 유해한 것을 막아야 한다.
  - 책은 신성한 것인데 그림이 많이 들어간 만화는 천한 것이다.
  - 만화는 공부의 적이다. 독서가 아니라 독서의 적이다. 성적이 나빠진다.
  - 불량만화는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다.
  - 일본만화는 특히 나쁘다.
  - 성인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보호, 지도해야 한다.
  - 내가 어렸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 만화가와 출판사는 믿을 수 없다.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 그러므로 규제, 단속,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 나. 언론의 자유와 만화 표현의 자유

5공때는 언론사에 기관원이 상주하여 기사와 함께 시사만화를 검열하였습니다. 그후 민주화와 더불어 없어졌지만, 아동만화, 청소년만화, 성인만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열(심의라고도 불려지는)이 지속됨으로써 우리 만화의 정상적인 성장은 다시 한번 왜곡되었지요.

물론 옛날에 비해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그로 인해 표현의 수위가(성적인 묘사, 폭력 묘사) 조금 높아지자 다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하고 있지요. 언론의 경우도 경쟁으로 인해 선정성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화가와 출판사가 약하기 때문에 만화는 여전히 검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위축되었는가 하면, 만화가 는 선불 때 만화가라는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 5. 청소년보호법

### 가.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청소년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가정에서의 자녀 학대, 버림, 학교에서의 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임신, 마약중독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면 그의 장래와 삶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약 중독자는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는 국·공립병원에 치료재활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한 줄만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하여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한 제도라든가, 내년에 제정될 예정인 학교폭력방지법 같은 것도 청소년 보호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총리실에서 지시하여 의원입법(박종용 의원)의 형식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졸속으로 제정되었고 원래 명칭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규제법'이었습니다. 즉 만화와 비디오 스포츠신문을 주타깃으로 삼은 것이었는데(관계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초기에 만화관련단체에서 이의 부당성을 개진하

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이러한 의견들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마약등을 집어넣어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럴 듯한 명칭으로 새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막강한 기구를 설치하여 기존의 임의단체였던 '간윤'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법제화 진행 도중 요식적인 여론 수렴행사는 있었으나 광범위하고 꾸준하고 진정한 상의는 없이 결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18세 이상 표시 붙이기).
- 사전심의는 하지 않는다.
- 대신 사후에 구분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한다.
- 진열은 따로 해야 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간윤에 위탁하여 사후 심의한다.
- 수거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성인용을 대여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 청소년용이라고 유통되거나 유해물이라고 판단하고 신고 또는 심의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 중 아무나(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 신고, 구두로도 가능, 포상 가능
- 2)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등
- 3)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 4)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단체 협의체 등
- 6) 청소년보호사업 수행기관, 단체, 협회

- 7) 청소년, 여성, 종교, 문화예술, 소비자단체
- 8) 30 이상 서명 받았을 때

그러므로 자율심의기구가 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 간윤)가 심의내용을 인정 안하면 그뿐인 것이고, 게다가 위의 기구에서 다시 신고, 또는 심의요청할 수 있으므로 6중 7중으로 감시하여 자율성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감시, 고발단체, 청소년유해비정기간행물 감시, 고발단체도 있습니다.

### 나.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 취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규제 중심의 사고).
- 막강한 사후심의로 인해 사전심의회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벌칙이 크므로 미리 청보위에 보여주고 확인받게 된다. 청보위에서 출판사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쪽에 달려 있다.
- 작가와 출판사를 믿지 못하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6중 7중의 감시장치를 두고 있다.
- 간윤(청보위)이라는 공권력이 문화를 규제함으로써 자율성이 파괴된다.
- 청소년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 멸시, 조롱,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청소년의 문화적 판단력과 자율성, 저항력의 성장을 막고 있음).

이런 문제점들의 이면에는 정부의 다음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폭력만화를 보면 폭력배가 된다는 논리
- 일본만화는 폭력, 선정적이므로 무조건 나쁘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매도해도 좋다는 논리(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폭력, 강간 천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요즘 만화는 대부분 나쁜 만화이므로 규제해도 된다는 논리

•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식의 생각 등

### 다. 문체부의 해결방안

• '만화는 대부분 괜찮은 것이다. 새롭고 강력한 매체이며 예술표현의 장르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만화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인식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화도 있다고 보되, 그 유해성을 가리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미국의 미즈위원회의 예: 포르노의 유해성에 관해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실시

- 영국의 차일드플레이2와 관련된 살인사건과 일진회 문제

• 조사과정에서는 반드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어떤 작품 또는 성향이 유해하다는 결론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한다.

• 그 대응은 문화적,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문화적 대응: 비평, 여론에 의한 질책, 대화, 설득, 권고, 시위, 불매운동 등

- 교육적 대응: 청소년에게 비판력, 문화적 저항력을 길러줌.

• 법적인 대응은 시민단체, 국가기관 혹은 개인의 고발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방법이다(우리는 거꾸로임).

•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 어떤 권력기관에서 몇 사람이 앉아 문화를 재단해서는 안된다. 이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 그러므로 청소년용, 성인용을 나누고 관리하되,

작가와 출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실제로 방송사의 조사에 의하면 작가, 출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70% 넘는다.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였으며 나머지는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 자율의 시대인데도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 근본적으로 문화는 문화로 해결해야 한다.

•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은 지금 것은 대부분 폐기하고 본래의 취지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지금 법의 명칭은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환경에 관한 특별규제법' 이 정확함).

## 6. 결론

작금의 문화에 대한 규제는 노동, 언론, 교육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제, 탄압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화, 영화, 음악, 소설 등 전 문화계가 연계, 단합하여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계와 그 밖의 사회단체, 지식인 등이 연대하여 함께 싸워야 합니다.

## 일본의 어선나포와 국제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일 어업수역의 기선과 어선나포사건의 국제적 해결

조시현(성신여대 전임강사, 법학박사)

### I. 머리말

일본은 올해 6월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5척의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나포된 수역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어업에 관한 권리를 갖는가 하는 다툼은 즉각 두 나라 사이의 외교문제로 되어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일어업협정<sup>1)</sup>을 고치기 위한 협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1996년에 만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으로서 종래의 통상기선<sup>2)</sup>과 더불어 직선기선<sup>3)</sup>을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1965년 맺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그 사용을 협의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영해를 설정하는 것은 주권국의 권리이며 이를 위해 직선기선을 사

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하다고 하였다.<sup>4)</sup> 일본은 또한 협정시한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어업협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할 것을 시사하였다.<sup>5)</sup>

어선나포를 둘러싼 두 나라의 다툼은 외교적으로는 같은 해 7월 28일 두 나라 외무장관이 한일어업분쟁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어선나포로 생긴 문제는 일단락되어 어업협정 개정협상은 다시 열리게 되었다.<sup>6)</sup> 한편 일본법원은 외국인 연안국(沿岸國)의 허가 없이 조업(操業)할 수 없는 영해를 침범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장에 대한 재판에서, 문제수역은 한일어업협정의 적용을 받아 일본정부에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내렸으나,<sup>7)</sup> 일본정부는 이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sup>8)</sup>

이번 어선나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물 위로 떠오른 한일어업문제는 두 나라가 어업협정 개정 협상에 다

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다가 잡혔지만 이를 둘러싼 법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특히 일본의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함과 이리한 기선을 사용할 경우 '타방 계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한 한일어업협정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9)</sup>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선의 나포로 일어난 법 문제를 모두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sup>10)</sup> 다만 이번 사건에서 지나쳤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국제법 문제들을 기선문제와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피는 데에 있다. 이 글은 특히 어선나포로 일어난 분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무엇보다 나포된 수역의 법적 지위, 즉 이 수역이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영해인가 아니면 한일어업협정 또는 일반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는 전제에서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그 동안 일본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한국어업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한일어업협정이 정하는 '어업수역'의 국제법적 성격

- 7) 마쓰에지방법원 하마다지부, 外國人漁業規制の關する法律違反被告事件 (判決要旨) (事件番號 平成九年(1997年) 第35號) (이하 '김순기 사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백승현 변호사는 필자에게 소송관련자료를 보여주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백승현,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관한 변론 요지」, 『이달의 민변』 1997.9. (통권 제12호), 38쪽 참조. 일본 법원은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하지 않았다. 같은 법원, 「特別辯護人不許可決定」(被告人 金順基) 1997.7.28.
- 8) 일본 해상보안청은 공소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선들이 앞으로 일본정부가 설정한 새 영해 내에서 조업한다면 종전대로 국내법에 따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앙일보, 1997.8.17.
- 9) 예컨대 강영훈, 「한국-일본간(동해)의 해양문제」 (『재단법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개소기념 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1997.7.4.); 권문상·옥영수, 「일본의 해양관할권 확장과 한일어업분쟁-일본주장 직선기선 및 한국어선 나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어업분쟁 및 일본 주장 영해기선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1997.7.18.); 김찬규, 「일의 "역지 영해"」, 조선일보 1997.7.10.; 정일영, 「한·일어업분규를 보고」, 한국일보, 1997.7.26.
- 10) 예컨대 한일어업협정과 이와 모순, 저촉하는 (일본) 국내법의 관계, 일본 직선기선의 국제법적 타당성,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어업수역의 존치 여부 등이 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체결된 여러 조약의 하나가 한일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일 사이의 어업을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수역')(제1조), '공동규제수역'(제2조), '공동자원조사수역'(제5조)으로 나누어 규율한다.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 논의되는 요즘 무엇보다 이 수역들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해양에 관한 국제법이 협정이 체결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진 것에 비추어 이것을 어업수역의 성격과 관련된 국제법 원칙들의 발전과정과 연결하여 간단히 보기로 한다.

#### 1.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일찍부터 사람들의 바다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고전적 국제법은 육지와 가까운 일정한 범위의 바다와 인간이 가지는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주권(主權)이 행사되는 영해(領海) 제도를 낳았고 그 밖의 해역(海域)은 공해(公海)로서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항해와 고기잡는 기술의 발달은 먼 바다에서도 어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연근해(沿岸海)에서의 외국 어선의 조업과 남획은 점차 국제문제가 되었다. 한편

-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 제166호; 외무부, 『양자조약』 제2권(1962-1967), 248쪽(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583 (1966), p. 84.
- 2)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제5조는 '공인된 대륙적해도에 표시된 연안저조선'으로 정의한다. 법원행정처, 『조약집』 제2권(다자조약 2) 하(1992), 295쪽; UN Doc. A/CONF.62/122(1982) (1994.11.16 발효, 1996.2.28 한국 가입)
- 3) 해양법협약 제7조 참조.
- 4) 한겨레신문, 1997.7.10.
- 5) 예컨대 조선일보, 1997.6.13.; 한겨레신문 1997.7.21., 1997.7.23.
- 6) 예컨대 동아일보, 1997.7.29.

해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어업은 국제법이 보호하여야 하는 이익 또는 권리로 인정되어 '공해의 자유'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원칙과 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sup>11)</sup>

특히 어업과 관련하여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에 속하므로 다른 나라는 연안국의 허가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 곳에서 어업을 할 수 없는 반면 공해는 모든 나라에 열려 있어 자유경쟁의 논리가 적용된다. 어업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이렇다할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연안국의 책임 및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물고기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됨으로써 국민의 일반적인 복지 향상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어업이 가지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로 종종 가까운 연안국끼리 또는 원양어업국과 연안국 사이에 분쟁이 있어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오래 전부터 어업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해방 후 격화되었던 어업분쟁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잠정적인 해결을 보았다. 협정이 맺어질 때에는 한국 연근해에서의 발달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어업의 진출이 문제가 되었으나 요즘에는 거꾸로

일본 연근해에서의 우리 어선의 조업이 일본어부들의 민원(民願)사항이 되었다.<sup>12)</sup>

## 2. 해양관할권의 확대경향과 '어업수역'의 성격

오래 전부터 공해에서의 무차별적 조업에 따른 어

업자원의 고갈과 연근해 어업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안국들은 이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접근방법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영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타적 어업권을 누릴 수 있는 수역을 종래 공해로 여겨지던 바다의 일부에 두는 것이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200해리(海里) 영해를 선포한 것이나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폭의 어업수역을 선포한 것은 잘 알려진 예이다.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어 해안으로부터 12해리 범위의 바다에 각기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서로 인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13)</sup> 한일어업협정은 이처럼 국제법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의 어업문제를 어업수역을 두는 형식으로 풀어보려는 시도였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 협력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당시 두 나라가 채택했던 3해리 범위의 영해와는 별도로 12해리까지 배타적인 어업수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자원의 최대지속생산성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과 공동자원조사수역도 두었다. 이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당시의 국제법이 인정하던 내수(內水),<sup>14)</sup> 영해와 공해 말고도 한일어업협정이 두고 있는 위와 같은 협정수역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주의할 것은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12해리 폭의 어업수역 바깥쪽은 국제법상 공해로서 양국 어선이 자유로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라는 것이다.<sup>15)</sup>

11) 해양법 발달사에 관하여는 예컨대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ed. by I. A. Shearer, Clarendon Press, 1984), pp. 1-28 참조.

12) 권문상·육영수, 앞의 글, 6-12쪽 참조.

13) 지정일, 「한·일·미의 어업관계의 쟁점 및 분쟁해결책」, 『국제법논총』 제23권 1호 2호 합병호(통권 제43.44호, 1978), 354쪽.

14) 해양법 협약, 제8조 1항('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보면 한·일 두 나라가 체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sup>16)</sup> 연안국이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배타적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마침내 국제관습법상 허용된다고 인정되었다.<sup>17)</sup> 또한 제3차 해양법회의(1973~1982)에서 채택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그동안 결정하지 못했던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정하여 현실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해 확대경향에 쐬기를 박은 해양법 협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산자원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인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 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5장).

## 3. 배타적 경제수역과 한일어업협정

유엔 해양법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도 EEZ 선포에 나섬에 따라<sup>18)</sup> 이 협약이 담고 있는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맞는 어업체

제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어업협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을 놓고 각국 사이에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의 어업협정이 두고 있는 수역이 모두 EEZ 안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를 아예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고칠 것인지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sup>19)</sup>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은 협정 파기의 뜻을 비추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결국이 타방 체결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유효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일어업협정 제10조 2항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의 어업수역에 대한 새로운 직선기선의 적용은 어업협정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어업회담에 들어가는 근본 이유의 하나는 과거 공해였으나 이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수역에서 한국이 가지는 전통적인 어업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일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우리 어부들의 이익

15) 한일어업협정은 그 전문(前文)에서 "공해자유 원칙이 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16) *Fisheries Jurisdiction Cases (UK v. Icela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Judgment of 25 July 1974, *ICJ Reports 1974*, p. 3 참조.

17) *Ibid.*, pp. 23, 192.

18) 배타적 어업수역법 1996.8.8. 법률 제5151호: 排他的經濟水域及公海漁業權に関する法律, 平成 8年 法律 第74號. 중국에 대하여는 박춘호, 「중국 경제수역과 한국」, 조선일보 1996.5.21. 북한은 1977년에 경제수역을 선포했다(1977.6.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정령(政令);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의 외국선박 및 항공기의 활동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결정 제60호). 백진현, 「남북한 해운협력과 국제법 - 북한 해양관할권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제1호(1994), 89쪽, 94쪽 주 11. 옛 소련의 1984년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관하여는 Decree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on the Economic Zone of the USSR, 28 Feb. 1984; United Nations,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National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 Excerpts of Legislation and Table of Claims* (1992), p. 133.

19) 그동안 지적된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예컨대 이서항, 「한일어업협정 20년의 평가 - 신해양법확립과 관련하여」, 『국제법논총』 제30권 제2호(통권 제58호, 1985), 25쪽 참조.

이 어떻게 보장될 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현대 국제법은 바다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고 각 제도는 그 배경, 법적 지위와 성격,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 글의 목적상 특히 중요한 것은 영해와 어업수역은 별개의 제도로 서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업수역과 해양법이 마련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된 경우라도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둘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시대'에 있어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은 두 나라가 각기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에서 각각 그 권리를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기하여 어업협력을 위한 특별수역을 만든 것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 III. 영해 기선과 '어업수역'의 기선

#### 1. 영해변경과 어업수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올해부터 시행된 신영해법에 따라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직선기선을 많은 지점에 걸쳐 사용하여 영해를 크게 넓혔다. 일본은 이렇게 새로이 일본의 영해로 들어간 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을 영해침범의 혐의

로 붙잡고 바편 영해의 범위를 한국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구하여 두 나라 사이의 어업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새로 바편 영해를 측정하는 기준선을 어업협정이 정한 어업수역을 정하는 데에도 적용하려고 한 것이다. 한국어선 '대동호' 선장 김순기를 영해에서 외국인 어업을 배제하고 있는 '외국인어업 규제에 관한 법률'<sup>20)</sup>에 따라 기소한 사건에서 일본정부는 역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는 어업에 관한 수역은 바편 영해의 범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의 끝은 결국 바다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한국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은 그만큼 좁아진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본이 어업협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한 이를 한국에 대항할 수 없고 일본법상 조약인 어업협정이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하므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협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sup>22)</sup>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EEZ 선포로 새로운 어업체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말고도 협정의 어느 한 당사국이 영해기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어업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덧붙여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아직 배타적 수역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20) 昭和 42年 (1967년) 法律 第60號.  
21) 마쓰에지방법원 하마다지부 「釋明書」(1997.7.28.)와 같은 날의 「意見書」: 「日韓漁業協定は、日韓兩國が固有の「領海」を有していることを前提とした上で、「領海」を除く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水域を設定することを認めたものであり、同協定第四條第一項が定める「漁業」に関する水域とは、「領海」を除く水域であり、かつ「漁業」に関する水域の外側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  
22) Fisheries Case (UK v. Norway), ICJ Reports 1951, p. 116 at p. 132 참조. 비슷한 의견으로는 *ibid.*, pp. 160 (McNair 판사), 190 (Read 판사); Fisheries Jurisdiction Cases, ICJ Reports 1974, para. 49;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ICJ Report 1982, p. 18 at p. 309 (Evensen 판사) 참조. 해양법협약, 제21조 (1)(e)도 참조.

어업문제가 확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협상의 단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 동안에 (좋은 실든) 효력을 유지하는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어선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와 관련이 되므로 중요하다.<sup>23)</sup> 아래에서는 김순기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영해의 변경으로 어업수역의 범위가 바뀌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 2. '김순기 사건'

일본 법원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가의 문제는 나포된 지점이 영해 안인지 아니면 어업수역 바깥인지에 달려 있다.<sup>24)</sup>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검찰은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 ...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즉 기국(旗國)주의를 정한 어업협정 제4조 1항의 적용범위를 일본과 한국의 영해 및 내수에 속하지 않는 수역이면서 또한 어업에 관한 수역의 바깥에 놓인 수역으로 보아 일본 영해 안에서 나포한 어선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이

23) 이 문제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1977년 한국이 영해법을 만들 때 새로 채택한 직선기선으로 영향받는 일본어업의 이익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었다. Choonho Park, 'Fishing under Troubled Waters: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1974), p. 93; reprinted in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p. 53, at pp. 71-2 참조. 일본은 이때 그어진 직선기선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영훈, 앞의 글, 9쪽. 지정일 교수는 1977년 한국 영해법에 따른 영해 설정과 한일협정상 어업수역의 관계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새로 채택된 영해법의 기점이 현어로전관수역의 기점과 다르다면 결과적으로 양 수역의 폭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앞의 글, 357쪽. 이한기·배제식·백충현, 「새로운 해양법질서와 한국어업에 관한 법적 대책」, 『국제법논총』 제23권 1호·2호 합병호(통권 제43·44호, 1978), 219쪽도 "1977년말 법률 제3037호로 공포된 영해법의 시행과 관련한 직선기선의 획선이 한일어업협정상 기선과 상이할 경우 동 협정의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동협정의 부수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만큼 양국간의 양해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영해를 12해리로 넓힘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업수역 자체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 김순기 사건 「辨論要旨」(1997.7.28.)도 같은 견해이다.  
24) 한일어업협정, 제4조 1항('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

25) 「判決要旨」, 7頁.  
26) 「辨論要旨」(1997.7.28.).  
27) 「判決要旨」, 3頁.  
28) 같은 판결, 5頁.

에 대하여 변호인측은 "본건 공소는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위법하게 제기된 것이고 (일본) 헌법 제98조 2항의 국제법규 준수 의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구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바탕한 공소인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6)</sup>

일본 지방법원은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영해와 어업에 관한 수역은 '당연'히 서로 다른 개념임을 전제로 따져나갔다.<sup>27)</sup> 법원은 한국어선을 나포한 지점이 어느 수역에 속하는가의 문제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는 그 성립의 시간적 전후를 묻지 않고 언제나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본건 해역이 일본의 영해이므로 바로 일본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업협정이 그 예외를 정하고 있으면 부정된다."<sup>28)</sup>

어업협정이 정한 수역이 일본의 영해 변경에 따라 바뀌는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어업협정을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의 영해 및 내수에도 속하지 않는 해역(공해)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오히려 어느 국가의 영해가 확대되었어도 (협정) 전문에 있는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이 변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영해가 확대되었어도 어업에 관한 수역과 그 효력에 어떠한 변경도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sup>29)</sup>

하다고 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의하여 법원은 일본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 3. 어업수역기선의 독립성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한일협정이 정한 어업수역과 영해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견해이다.<sup>30)</sup> 국제법에 있어서 영해와 어업수역(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으로 불리기도 함)에 관한 제도는 각기 다른 발전과정을 거쳐 서로 독립한 개념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은 이미 본 바 있다. 김순기 사건에서 일본 검찰은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때 교환공문으로 한국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기선으로서 직선기선을 채용한 것에 동의한 사실과 1978년 한국이 '영해'의 기선으로서 직선기선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일본에게 비공식적인 사전통보를 하고 협의하였지만 협의의 종료를 확인하는 아무런 문서도 교환되지 않은 점을 대비하여 올해 일본이 영해에 대하여 직선기선을 채택하면서 한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영해 결정에 관한 주권 행사의 당연한 결론이며 한일어업협정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이 일본 검찰도 영해와 어업수역은 서로 다른 개념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그렇다면 이러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는 수역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 역시 따로따로인가이다. 앞에서 인용한 일본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1965년 당시 어업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여진 기선은 나중에 어느 한 당사국이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그 기선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선방식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어업수역 등을 결정하는 기선과 영해를 정하는 기선 두 가지가 병존하게 된다. 수역 설정에 있어서의 기선의 독자성 문제는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그 해답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특히 일본정부와 검찰의 견해가 하나의 기선이 모든 해양관할수역의 획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입장에 바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튀니지/리비아 간의 대륙붕 사건에서 튀니지가 어장규제를 위해 그은 직선기선이 문제가 되었다.<sup>33)</sup> 국제사법법원은 튀니지가 영해의 바깥 한계를 재는 데 이 기선을 사용한 것을 리비아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선은 어업수역을 설정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주장된 것일 뿐 결코 해양이나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위해 그어진 선이 아니라고 하여 어업수역과 다른 수역의 기선을 구별하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각각의 수역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은 어업협정이 조약으로서 가지는 성질로부터도 끌어낼 수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긴 시간에 걸쳐 두나라의 어업이익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상호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어느 한 당사국이 이런 미묘한 균형을 깨고 협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sup>35)</sup> 더욱이 이 협정은 기선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데 제1조 단서는 "단 일방 체약국이 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sup>36)</sup> 이와 같이 어업수역의 설정에 쓰이는 기선은 어업협정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일본법원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채용하고 직선기선을 채용하려면 상대국과 협의할 것이 요구되는데 한 당사국이 어업에 관한 수역 바깥까지 (예를 들어 13해리까지) 영해로 하려고 영해에 대해서 직선기선을 채용하면 조약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어 어업협정을 체결한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적어도 어업협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어느 나라의 영해도 아닌 해역에 있어서, 나중에 영해가 확대되었다고 하여 어업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sup>37)</sup>

## IV. 어업협정 제1조의 협의의무와 어업수역 기선문제

### 1. 협의의무와 직선기선의 효력

이러한 일본법원의 견해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없는 한 영해에 대한 직선기선이 협정상 어업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데 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업수역 설정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관행도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두 나라는 1965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나는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 공문'에서 한국측의 어업수역에 대한 직선기선 적용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정상 협의의무를 종료한 것으로 하였다.<sup>38)</sup> 또한 같은 날 채택한 '제주도 서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 공문'에서 양측은 제주

34) 같은 판결, para. 90. S. P. Jagota, *Maritime Bound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p. 35도 참조.  
35) 이 협정은 또한 각 당사국에게 협정을 파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파기 후 1년 동안은 협정체계가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도 주의하여야 한다. 김찬규,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에 관한 문제」, 『법률신문』 1997.7.17. 14쪽 참조.  
36) 최근의 한일 어업분쟁에서 논자들의 관심은 이 조항에 집중되어 사전협의를 없앴음을 강조하고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이 국제법상 옳은가를 살피는 방향으로 나갔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어업분쟁의 해결이 일용 이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와는 별도로 영해기선이 어업수역의 기선으로 곧바로 원용(援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후자의 해결에 따라 문제수역에서의 어업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에서 있다. 또한 김순기 사건에 있어서 일본 법원이 과연 직선기선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지적하여야겠다. 이는 해양문제에 있어서 법원이 정부의 판단을 대신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일본법원이 과연 일본정부의 기선획정행위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O'Connell, 앞의 책, p. 55 참조. 결국 직선기선의 국제법적 타당성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제법정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만 그 사법적 해결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 참조.  
37) 「判決要旨」, 9項.  
38) 외무부, 「양자조약」 제2권(1962-1967), 258쪽;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583(1966), p. 85.

29) 같은 판결, 7-8頁.  
30) 이 점은 특히 한국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 않은 채 직선기선의 적법성에 대하여만 관심이 모여졌다. 다만 일본은 새로운 영해 설정을 한국정부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意見書」, 10-11頁.  
32) 앞의 주 23 참조.  
33)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ICJ Report 1982, p. 18.

도 해역에서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sup>39)</sup>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정이 제1조에서와 같은 협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본의 직선기선의 효력은 어업수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일본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어업수역의 범위는 어업협정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의의무 규정은 단지 당사국들이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기선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어업수역의 범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당사국의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업수역 범위는 처음에 어업협정을 맺었을 때 적용된 기선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의 의사와 부합하는 협정 해석일 것이다.<sup>40)</sup> 이러한 결론은 유럽공동체 법원이 1991년 내린 판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sup>41)</sup>

## 2. 영국 어업수역 사건과 기선 문제

이 사건은 영국이 1987년 영해법을 만들어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넓히면서 일부 해안에서 직선기선을 채용한 것에서 발단하였다.<sup>42)</sup> 영국은 이 영해법의 발효와 함께 새로이 영해로 된 수역에서 다른 회원국의 어선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기선의 변경의 효과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법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어선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 - '공동체 어업수역(Community fishing zones)' - 의 범위의 결정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EC 어업수역은 바다쪽으로 훨씬 더 나아간 셈이 되어 프랑스,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들은 거세게 항의하였다.<sup>43)</sup> 유럽공동체 위원회(EC Commission)는 직선기선의 적용은 후술하는 유럽공동체 공동어업정책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유럽공동체 법원에 소송을 내었다.

유럽경제공동체의 공동어업정책은 국적을 이유로 하는 회원국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 제7조에 따라 발전하였다.<sup>44)</sup> 1971년 발효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제2141/70호는 회원국에 소속하는 모든 어선들이 다른 회원국

의 영해를 포함하여 어업가능한 수역에 있는 어장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조건이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업의 공동구조정책을 마련하였다.<sup>45)</sup> 1972년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때 영국은 어업에 관한 공동체 정책의 집행을 1982년말까지 10년간 유예받아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6해리 한도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 다른 회원국 어선의 어장접근을 정지하여 이 수역을 자국 어부들에게 확보할 수 있었다.<sup>46)</sup> 이러한 어업제한권한은 그러나 영국 이외의 "회원국들이 1971년 1월 31일 누렸을 지 모를 특별어업권"을 침해할 수는 없었다.<sup>47)</sup> 이 권한은 다시 1983년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 체제로서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마련한 이사회 규칙 제170/83호 제6조에 의해 1992년말까지 연장됨과 동시에 어업제한수역의 범위도 12해리까지로 확대되었다.<sup>48)</sup> 이 규칙의 제6조 2항과 제1부속서는 영국의 연안해에 적용되는 어업제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어 영국 연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와 벨기에

가 몇몇 어종에 대한 어업권을 가지는 일련의 수역을 열거하였다. 바로 이 이사회 규칙의 적용을 놓고 영국과 공동체 위원회가 다투게 되었다.

영국 어업수역 사건에서 위원회는 영국의 새로운 영해법 규정이 영해의 설정과 기선을 긋는 것에 관한 국제법규와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sup>49)</sup> 다만 영국 연안해에서 다른 회원국이 어업권을 가지는 수역의 범위는 앞의 이사회 규칙이 만들어진 1983년 당시의 기선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 뒤 변경된 기선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50)</sup> 위원회는 그 근거로서 특정한 조업활동은 "어장의 성질과 깊이와 델레야 델 수 없이 결부"되어 이와 다른 결론은 규칙 제170/83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들어 제1부속서에 정한 수역의 범위는 회원국의 일방적 행동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51)</sup> 이와 관련한 다음의 주장은 한일 어업분규와 관련하여 흥미롭다:

"끝으로 프랑스 정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영국 법규가 정한 새로운 수역에서 다른 관련 회원국들의 어부들은 이미 조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수

39) 외무부, 『양자조약』 제2권(1962-1967), 260쪽;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583 (1966), p. 148.  
40) 한국은 일본이 설정한 '저인망어업금지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을 막아달라는 1981년 이래의 요청에 대하여 "일본이 1965년 어업협정 체결 후 임의로 확대한 수역에 대하여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병화, 『동북아시아지역과 해양법』(진정사, 1991), 111, 339쪽.  
41) Case C-146/8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v. United Kingdom),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9 July 1991, [1991] European Court Reports(이하 'ECR') I-3533: 100 International Law Reports 114 (이하 '영국 어업수역 사건').  
42) Section 1 (1) (a), Territorial Sea Act 1987 (1987.10.1. 발효), Halsbury's Statutes of England and Wales, vol. 49 (Fourth ed., 1992), p. 288; Territorial Sea (Limits) Order 1987, Statutory Instruments 1987/1269.  
43) 이 문제를 놓고 영국과 EC 위원회, 벨기에, 프랑스 사이에 논의가 벌어지고 급기야 1987년 12월 8일 영국 하원에서 영국 정부는 "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쟁을 악화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밝혔다. [1991] ECR, p. 3540. 이로써 영해법 제정 이전의 상태가 유지되어 유럽공동체 법원이 따로 분쟁 수역에 대한 중간보존조치(interim measure)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모범적인 행동'은 소송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되었다. ECR, p. 3583.  
44) Trait institu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 (avec annexes et Protocoles), fait Rome, le 25 mars 195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98 (1958), p. 18, at p. 27. 제38, 39, 43조, 제2 부속서도 참조.

45) Council Regulation (EEC) No. 2141/70, 20 October 1970, Official Journal, English Special Edition, 1970 (III), p. 703; Council Regulation (EEC) No. 101/76, 19 January 1976, Official Journal, 1976, No. L 20, p. 19)에 의해 대체.  
46) Article 100 (1), Act concerning the conditions of accession and the adjustments to the Treaties annexed to the Treaty concerning the accession of the Kingdom of Denmark,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fficial Journal, English Special Edition, 27 March 1972, p. 14.  
47) Article 100 (2), *ibid.*  
48) Council Regulation (EEC) No. 170/83, 25 January 1983, Official Journal, 1983, No. L 24, p. 1, as amended by Article 26 and Annex I, Section XV, paragraph 8 of the Act concerning the conditions of accession of the Kingdom of Spain and the Portuguese Republic and the adjustments to the Treaties, Official Journal, 1985, No. L 302, p. 23. 1992년 12월에 이러한 공동어업정책은 어업과 양식업에 관한 새로운 기본규칙(framework regulation)으로 개정되어 이제는 200해리 범위의 모든 유럽연합의 수역이 원칙적으로 모든 유럽연합 어부에게 열리고 다만 회원국들은 자국의 연안에서 12해리 내의 수역을 자국 어부와 전통적 어업권을 가지는 어부에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Council Regulation (EEC) No. 3760/92, 20 December 1992, Official Journal, 1992, No. L 389.  
49) [1991] ECR, pp. 3543, 3572, 3574 참조.  
50) 같은 판결, p. 3673.  
51) 같은 판결, p. 3574.



역은 1983년 1월 25일 그러했던 것같이 12해리 밖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연안국의 어부에게 배타적 접근을 허용하는 체제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국의 조치는' 단지 다른 회원국 어부들이 조업했던 수역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52</sup>

유럽공동체 법원은 문제되는 6해리에서 12해리 범위의 수역을 재는 기준선이 영국의 직선기선 채용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된다는 영국의 주장<sup>53</sup>을 물리치고 특히 특정 시점에 고정된 기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별단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sup>54</sup> 공동어업정책을 정한 공동체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sup>55</sup>

이 사건은 비록 유럽공동체의 공동어업정책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기는 하였으나<sup>56</sup> 관련국들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에 관한 수역을 설정하고 나중에 그 수역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는 1965년 맺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규율이 되고 따라서 협정 체결 시점에 당사국이 이해한 기선방식에 따라 이미 정하

여진 것이다.<sup>57</sup> 일본이 새로운 영해법을 만들기 전 일본 해안에서 12해리 밖의 수역은 (어업협정이 특별히 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이외에) 공해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의 조업은 합법한 것이었다.<sup>58</sup> 일본의 새로운 영해 설정과 이를 위한 직선기선 사용이 국제법과 합치하는가의 문제를 떠나 일본은 이러한 기선을 어업수역에까지 적용하여 이미 만들어진 한일간의 어업체제의 지역적 효력범위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장의 가치는 해안에서 떨어진 정도, 물의 깊이, 바닷물의 흐름 등 복잡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어업수역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sup>59</sup>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당사국이 기선을 변경하여 배타적 어업권이 미치는 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일간에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낸 타협의 산물인 한일어업협정이 이루어낸 양국 어업의 균형은 깨지고 '차별적인 효과'<sup>60</sup>를 가져와 한일어업협정의 참뜻은 온데간데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정 제1조의 협의의무가 따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느 한 당사국의 기선 변경은 어업수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른 당사국에 대항할 수 없다.

### 3. 어업수역, 공동규제수역,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기준 문제

김순기 사건에서 일본 검찰은 추가적으로 어업협정 제2조가 공동규제수역을 두면서 기선으로부터 일정한 폭의 수역으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경도와 위도 상의 일정한 점을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한 것을 들어 어업수역의 범위가 영해의 변경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려 하였다.<sup>61</sup> 일본 법원은 협정 제2조가 명시적으로 영해를 제외하고 제1조는 이를 제외하지 않았지만 "어업협정 제2조를 반대해석하여 '각 계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까지의 수역'은 영해를 뺀 공해에 한정되지 않고 영해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을 물리쳤다.<sup>62</sup>

연안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업수역과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조치'<sup>63</sup>를 취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이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의 수역의 설정에 있어 자기 다른 기선이 설정된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공동규제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업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선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푸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동규제수역이 영해의 변경에 의해 그 범위가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어업수역도 마찬가지로라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의 위의 견해는 타당하다.<sup>64</sup> 덧붙여서 공동규제수역의 바깥에 놓이는 어업협정 제5조의 공동자원조사수역의 범위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계약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됨도 특기할 만하다. 이로써 어업협정이 두고 있는 3개의 수역은 모두 자기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범위가 확정되게 된다.<sup>65</sup>

### V. 한일 어업분쟁의 국제적 해결방법

이와 같이 일본은 기선 변경의 효력을 한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판결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직선기선의 적용으로 인한 어업수역의 변동을 둘러싼 한일간의 국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에서 끌어낸 결론에 따르면 일본의 어선나포는 한일어업협정을 위배한 불법행위인 것이 자명하다.<sup>66</sup> 또한 나포된 수역의 지위가 국제법상 공해임에 비추어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공해의 자유를 침범한 것도 된다.<sup>67</sup>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문제로

52) 같은 판결, p. 3575. 프랑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pp. 3547-8 참조.  
 53) 같은 판결, pp. 3548-9, 3575-6.  
 54) 같은 판결, p. 3577.  
 55) 같은 판결, p. 3583.  
 56) 「1991」 ECR, pp. 3558, 3564 참조.  
 57) 일본의 1965년 당시의 영해의 범위는 3해리였으므로 일본이 1977년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넓혔을 때 3해리에서 12해리까지의 일본 연안 수역에서 합법적으로(공해대(公海帶)이므로) 이루어지던 한국 어부의 조업이 어떻게 보호되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으나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58) 김순기 사건의 변호인은 1997년 7월 14일 제출한 「意見書」에서 "...일본국은 한국과의 협의를 결한 채,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채용한 신영해선을 어업협정 제1조의 적법한 어업수역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영해법의 규정보다 어업협정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양국간에 있어서의 어업수역은 구영해선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59) 「1991」 ECR, pp. 3547-8 참조.  
 60) 같은 판결, p. 3557.

61) 「意見書」, 5頁.  
 62) 「判決要旨」, 8頁.  
 63) 한일어업협정, 제3조.  
 64) 앞에서 살펴본 '영국 어업수역사건'에서도 유럽법원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ECR, pp. 3576-7.  
 65) 한일어업협정, 제5조, 제7조 1항(b).  
 66) 1997.7.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어선나포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하고 특히 "우리 어선에 대한 일본의 불법납치, 억류행위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이며 "일본측이 설정한 영해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부기점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일보, 1997.7.25.  
 67) 해양법 협약 제87조 (1)(e); 제116조, 협약 제19조 (2)(i)도 참조.  
 68) 그럼에도 지난 7월 두 나라 외무장관이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과 직선기선영해에 대한 양국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본이 직선기선영해 침범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한국어선도 일본의 직선기선영해 내에서 조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동아일보, 1997.7.29. 이는 문제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임에 비추어 무엇을 위하

생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게 된다.<sup>66)</sup> 그러나 어선나포를 계기로 한·일 두 나라의 다툼은 끝나지 않았고 범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어 한·일어업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sup>67)</sup> 그렇다면 이러한 한일어업협정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의 적용에 대한 두 나라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 1. 한일어업협정의 중재위원회

우선 어업분쟁도 국제분쟁인 만큼 두 나라는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sup>68)</sup> 한일어업협정 역시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계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한다.<sup>69)</sup> 한국과 일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단되었던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다시 열고 있으므로 일단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업협정 문제를 떠나서 어선들이 나포된 수역에서의 어업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와 어선나포로 생긴 일본의 국제적인 책임을 어떻게 묻고 또 이로 인하여 어업이익의 손해(나포된 사람들에게 대한 배상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

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국제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한일어업협정은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두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sup>70)</sup> 어선나포로 제기된 문제를 이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sup>71)</sup>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일본이 영해 기선으로서 새로 채택한 직선기선이 제기하는 문제는 어업수역과 관련되는 한도에서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이 반드시 사건 해결을 위한 선결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국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sup>72)</sup> 이 위원회의 관할권을 넘는 문제라고 다루어질 수 있다.

### 2. 해양법 협약의 분쟁해결절차

이렇게 직선기선의 적법성 문제가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직선기선 문제가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도 일으킨다는 점에서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을 피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sup>73)</sup>

협약 제282조는 당사자 사이에 평화적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협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직선기선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른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정하는 분쟁은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어업협정의 중재위원회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따를 수 없고 해양법 협약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sup>74)</sup> 따라서 협약상의 조정(調停, conciliation)절차<sup>75)</sup>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sup>76)</sup> 국제해양법 법원(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사법법원, 중재법원, 특별중재법원 등의 강제절차 가운데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sup>77)</sup> 한국과 일본은 1996년말 현재 아직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협약 제287조 3항에 의해 제7부속서에서 정하는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sup>80)</sup> 그러나 두 나라는 언제든지 국제해양법 법원과 같은 다른 강제절차를 이용할 것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sup>81)</sup>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적절한 분쟁해결기구는 직선기선 문제 뿐만 아니라 나포로 인한 국제법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영해와 어업관할권에 관한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므로 한일어업협정 위반 부분에 대한 관할권도 부수적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재판절차를 이용하든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문제수역에서의 당사자의 어업관계에 대하여 그 재판기관은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내릴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82)</sup> 어업협정은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위원회는 일종의 중재법원으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sup>83)</sup>

### 3. 나포된 어선과 어부의 신속한 석방을 위한 국제절차의 이용 가능성

나포된 어선과 선원의 처리에 관하여 한일어업협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양법 협약

76) 이 경우 먼저 1965년 한·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정한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conciliation(일본 번역), mediation(한국번역))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583 (1966), pp. 149-150. 이 조항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절차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7) 해양법 협약, 제284조와 제5 부속서.  
78) 제286조, 제287조, 제297조 3항과 제6·제7·제8 부속서.  
79) 해양법 협약, 제287조 1항.  
80) *The Law of the Sea: Declarations and statements with respect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o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7.V.3) 참조.  
81) 해양법 협약, 제280조, 282조 등 참조.  
82) 협약, 제290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41조; 외무부, 『대한민국 조약집』, 다자조약, 제10권 (1991), 648쪽 참조. *Fisheries Jurisdiction Cases (UK v Iceland; FRG v Iceland)*, Interim Protection, Order of 17 August 1972, *ICJ Reports 1972*, p. 12; *ibid.*, Interim Measures, Order of 12 July 1973, *ICJ Reports 1973*, p. 302 참조.  
83) Jerome B. Elkind, *Interim Protection: A Functional Approa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1) 참조.

여 이러한 권리를 양보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로 인한 우리 어떤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결의를 채택하였다(앞의 주 66 참조).  
69) 경향신문 1997.7.29. (“이케다 외상은 그러나 어선나포와 선원폭행사건의 사과요구에 대해 한국어선나포가 일본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행사였다고 주장,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참조.  
70) 국제연합헌장, 제2조 3항, 제33조 1항; 외무부, 『대한민국 조약집』, 다자조약, 제10권 (1991), 542쪽. 해양법협약 제279조, 제283조 참조.  
71) 제9조 1항.  
72) 제9조. 이 위원회는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이 접수’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된다. 동조 2-3항.  
73) 제9조 1항.  
74) 해양법협약 제280조 참조.  
75) 협약, 제280조 참조.

제73조 2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합리적인 보석금이나 기타 보증금을 예치하면"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즉 각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협약은 선박의 억류된 경우 신속하게 선박과 선원을 석방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제292조는 선박을 억류하는 국가가 "합리적 담보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이 제공"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강제절차에 따라 적절한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소는 선적국뿐만 아니라 국내입법이 있는 경우 기국을 대리 하여 선장이나 해당지역 영사도 할 수 있다.<sup>84)</sup>

이러한 절차를 영해 침범의 혐의로 억류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협약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아직 이에 관한 판결도 없어 의문이 있을 수 있다.<sup>85)</sup> 그러나 이 신속 절차를 만든 취지는 해양법 협약에 위반한다고 주장되는 억류가 오랜 기간 계속되는 사태를 예방하는데 있음에 비추어<sup>86)</sup> 영해에 관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원의 실행이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sup>87)</sup>

이러한 국제법과 절차에 비추어볼 때 영해 침범 혐의로 구류되어 있는 김순기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크게 미흡한 것 같다.<sup>88)</sup>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의 법정이나 국제법정에서 굳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과 관련이 되는 경우 적용법리에 대한 자기 나라의 견해를 명백히 밝히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비추어 어선나포사건에 대한 일본에서의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할 수 없다. 정부는 마땅히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고려하고 관련 국제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어선나포로 인한 한·일 사이의 분쟁은 한일어업협정이 예정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또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이러한 사법적 해결에 맡길 것인지는 의문이다. 10여년의 통상마찰 속에서도 미국에 대한 법적 항변이 이제 막 이루어진 형편은 그간의 사정을 웅변한다.<sup>89)</sup>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1995년 캐나다가 북서대서양 어업기구(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의

84) Louis B. Sohn, 'The Importance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94 Rhodes Papers - Entry Into Force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eds. Myron H. Nordquist and John Norton Moore, 1995), p. 265 at p. 267.

85) 이 조항의 입법과정에 대하여는 A. O. Adede,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 Drafting History and a Comment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pp. 65-66, 138-9 참조.

86) 같은 책, p. 66.

87) 뒤에서 보는 캐나다와 스페인 간의 어업분규과정에서 캐나다 법원은 나포한 스페인 어선의 선장을 보석금을 받고 석방하였다. Fisheries and Oceans Canada, *News Release*, March 12, 1995.

88)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나포된 어선들에 부과된 벌금을 변제해주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7.7.10. 1997년 7월 28일 말레이시아 쿨라룸푸르에서 있는 양국 외무회담에서 "선원구타 사건의 정확한 진상확인을 위해 양국 당국자들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7.7.29.

89) 이태희, 「정부, WTO에 미국 제소키로: '컬러TV·디램 반도체 등 덩펍판정 고의로 안풀어」, 한겨레신문, 1997.6.5.

90) Canadian Coastal Fisheries Protection Act, as amended on 12 May 1994.

규제지역에서의 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안어업보호법<sup>90)</sup>을 집행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너머의 공해에서 스페인 선적의 어선에 승선하는 등 강제조치를 취한 것에 항의하여 국제사법법원에 곧바로 제소한 스페인의 자세와 크게 대비된다.<sup>91)</sup> 더욱이 해양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많은 제3세계국가들도 재판에 의한 해결의 길을 받아들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분쟁해결방법에 따라 국제법정에 제소하기를 망설여서는 안된다.

### VI. 맺는 말

한일간의 해양문제는 국가의 안위(安危)에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바다의 경계를 가르는 해양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현안을 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식민청산이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개정론이 제기되고 북한도 일본과 수교협상중이다. 독도문제도 따지고 보면 군국주의로 치달음치던 일

본의 팽창주의가 빚어낸 부산물이다. 새로운 해양질서에 따라 우리 앞바다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려는 발걸음이 아직도 깨끗이 정리되지 못한 과거의 일들로 더디고 무겁기만 하다. 한국 어선나포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고려가 여전히 앞서고 적용되는 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은 단순히 직선기선의 채용을 협의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에 그치지 않고 어업협정이 규율하는 일본의 '어업에 관한 수역' 자체를 확대하여 어업협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이 일으키는 여러 법 문제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전제로 하지 않은 외교적 해결의 방법은 굴욕외교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나포된 어민들이 문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가혹행위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흐도(糊塗)하는 것일 따름이다. 적법하게 어업할 수 있는 수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에게 있다. 아직 두 나라는 나포를 둘러싼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였다 하므로 '외교전쟁의 포로'가 되어 한여름 남의 땅 구치소에서 흘린 어부의 땀방울이 헛된 것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91) *Fisheries Jurisdiction Case* (Spain v. Canada),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Communiqu s 95/9 (29 March 1995), 95/12(2 May 1995) 참조.

## 변호사의 정체성과 소중한 느낌들

차 홍 권

어느덧 꿈과 희망에 가득찬 고시(孤試) 후의 사법연수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변호사로서의 길을 밟은 지도 5년째를 맞는 즈음에 이르러, 지나간 날들에 대한 새로운 기억과 아울러 변호사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주 상념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은 강간치상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는데, 사건 내용은 겨울에 한강시민공원 내 청원경찰 초소에서 청원경찰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초소에 잠서 들른 여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찾기 위해 약 10분 후 위 초소로 찾아온 피해자의 애인(유부남)의 진술이 있어 유죄가 명백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접견을 통하여 본인의 결백을 확신한 후 본인진술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과 피해자의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진술, 즉 당시 피해자의 속옷이 범행장소의 의자에 가지런히 순서대로 놓여 있었던 점등 강간을 당한 과정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옷을 벗긴 피고인의 손에 대하여 왼손, 오른손으로 수시로 번복되는 진술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모순, 불일치하는

점, 현명한 피고인이 무죄으로 동료에게 사기꾼으로 표현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 등이 밝혀져,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동 사건은 변호사를 시작한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건이라 감회가 남다른 바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반(半)강요와 억압을 통한 자백의 도출이 관행화된 현실에서 범행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접견을 통한 조력이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비록 무죄는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는 고통에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이미 유린되고 내·외적으로 침해받은 피고인의 고통과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현실에 대한 아픔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느낌은 변호사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하고 느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직업의식에 투철하면서 의뢰인의 이익과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보고 느끼는 정서는 이와는 다른 것이 현실이어서 변호사의 정체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윤리등과 관련하여 우리 변호사법은, 변

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내세우고서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변호사법은 위 변호사의 사명에서 더 나아가 변호사는 항상 깊은 교양의 보지(保持)와 높은 품위의 도양에 힘쓰고 법령과 법령사무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교양과 품위유지를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윤리장전에서는 위 변호사의 사명과 아울러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 대하여 예의를 지켜야 하며,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직업상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업계의 흐름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고도의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세계화와 개방화의 예곡된 편향인지는 몰라도 우리 변호사업계의 주류적인 발상과 시각이 위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관련된 정체성의 확립 및 유지의 측면보다는 사업자등록에 기한 중소기업의 경영자(장사치)로서의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과 자탄에 이르게 되어 서글퍼집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시각도 존경과 존엄보다는 불신과 자본에 기한 장사꾼으로 보는 면이 강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의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 중에서 가장 역겹고 슬픈 부분은 "변호사를 산다"는 말입니다. 한번은 상담과정에서 그동안 교양 있고 어느 정도 지식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에게 "얼마 정도면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자식등 가족이 있어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팔 수 없다"고 하자, 무안해진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적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느덧 변호사가 돈에 의한 매매의 목적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의식의 한편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우리 변호사들의

귀책사유로 돌아가 그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이 변호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변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후 그 이념 및 표상을 통하여 변호사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음은 본인으로서서는 커다란 행운이자 신선한 샘물이었습니다.

민변에의 가입절차가 끝나고 「이달의 민변」에 가입의 변을 게재한 지 바로 얼마되지 않아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이적단체 사건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민변에 가입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사건배당을 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건을 배당한 사실과,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민변에서 구조신청을 받아 사건을 배당한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사실 5년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국선변호 항소심사건에서 형식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접하여본 외에는 전혀 변론의 경험이 없는 관계로 무척 당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자를 소개받을 때와 다름없는 금금함과 설레임이 교차되어 실로 오랫동안 잠시동안이나마 혈류가 뜨거워지고 대뇌가 격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변호과정에서 변호사로서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가보는 안기부 대공분실에서 흥미롭고 의미있는 접견, 관련 수사관들의 변호사에 대한 호의적인(비록 수사의 기법이나 내용 및 행태는 변함이 없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응태도, 속칭 좌경과 의식화로 분류된 의식 있는 학생 피의자들과의 사상의 공감, 수사와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잠시 의식화된 변호사로서 공안부 검사와의 보이지 않는 전략과 전술의 투쟁과정, 법정을 가득 메운 피고인의 동료 학우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거침없고 또렷한 최후변론 등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보는 君子의 三道에 대한 실천과도 부합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민변에의 가입이 매우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과 같이 수사기관과 연결된 형사브로커의 장난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가족의 변호사 선임권이 반강제로 제한당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간의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공평한 형사사건의 선임이라는 질서가 파괴되어버린 법조의 현실하에서, 특정한 사건에 제한되는 한계는 있으나 민변에서 구조신청을 받아 이를 변호사 각인에 배당하는 일종의 형사사건의 공선계의 체계와 운영은,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의 윤리 및 정체성과 관련하여 변호사시장의 개혁과 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부분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변의 특유 중 위원장의 권유로 가입한 동북아특위의 1997. 9. 11. 모임에서는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로서 갖은 차별과 역경 속에서도 최초로 대학교수가 되어 현재 가나가와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국내에서도 출판된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현대일본의 역사의식』, 『일본 - 그 국가·민족·국민』 등의 저자로서 잠시 서울대 교환교수로 내한한 윤건차 교수의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 강의를 통하여 서구열강의 아시아 진출과 천황제 국가의 창출 및 아시아 침략이라는 일본근대사의 3대 기둥에 기한 서구송배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및 아시아 멸시관이라는 중추구조를 가진 일본의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은 뜨거운 분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재일교포 1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재일동포들의 사상의 변화와 흐름을 통하여, 민족보다 역사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재일동포에 대하여 변화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얻은 것도 민변의 활동 중에 갖게 된 소중한 지식과 지각의 하

나로 생각됩니다.

급하게 생각나는 느낌들을 정리하다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법조의 현실과 세계화, 개방화의 조류 속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위치 및 영역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정신에 있어서만큼은 변호사 각자가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정신에 따라야 하며,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그 행동양식이 일반 시민윤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자가 강조한 君子의 三道의 실천도 변호사로서의 이념과 실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상념에 이르게 됩니다. 君子의 三道란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는 것인데, 이를 법조인에 대비하여 보면 '법률적인 전문지식은 박식하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각박한 실정법 만능주의자가 될 것이고, 어진 마음까지는 갖추어도 인권과 정의를 보고도 행할 줄 모르던 용기없는 나약한 지식인에 머물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 君子의 三道를 변호사로서의 사명으로 여기고 생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 뮌헨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김인만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뮌헨은 밤 8시 반이 넘었지만, 아직 환한 하늘을 가지고 있었다. 맑고 깨끗하게 단장한 공항을 빠져나와 마중 나온 분들의 차를 타고 아우토반(Autobahn)으로 들어서니, 말로만 듣던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의 명차들이 총알처럼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30분 후에 도착한 뮌헨시는 5층 이내의 단층건물과 끊어질 듯하면 이어지는 푸른 공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중 나온 분의 집에 도착하자 오랜 비행시간 속에 쌓여 있던 피로가 몰려와 이런 독일에서의 첫인상을 뒤로 두고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뮌헨은 1972년의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들에 대한 테러로 전세계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멀면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도시이다. 독일에서 베를린, 함부르크 다음으로 큰 도시임에도 재독교민 3만5천명 중에서 겨우 1%인 350명만이 살고 있다는 점에 우리에게 소개될 기회가 적었지만, 최초의 재독교민이라고 불리우는 『암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미륵씨가 뮌헨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었고, 전혜린씨가 뮌헨대학 유학 시절을 배경으로 하여 쓴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통하여, 또 몇년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김영희씨의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뮌헨의

노란 민들레』 등을 통하여 뮌헨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져 가깝게 느껴지는 도시이다.

내가 뮌헨을 해외연수지로 선택한 것은 우연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사무실은 4년 동안의 신참 변호사 생활을 마치면 2년간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까지 사무실의 선배님들은 모두 미국에서 해외연수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러던 중 선배님 몇 분이 사무실의 모든 변호사가 섭외사건만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변호사가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으로만 연수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시어, 같은 시기에 해외연수기회를 가진 동료 변호사 4명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나라에서 각자 연수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내가 선택한 독일이 그 4개국이었다. 통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우리 법의 골격이 독일법이라는 점, 그동안 로펌 변호사들의 천편일률적인 미국연수에 대한 반발감이 어우러져 나는 독일을 해외연수 대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후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독일 중 어떤 도시로 갈 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여러 모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뮌헨은 날씨가 안 좋기로 유명한 독일 중에서도 그중 날씨가 좋고, 독

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 인접하여 여행하기도 좋으며, 120만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문화시설도 많아서 독일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뮌헨을 그 목적지로 결정하였다.

다음 문제로 2년 동안의 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는데, 뮌헨대학 법학부에도 미국 로스쿨의 LL.M과 같은 성격의 외국인인을 위한 마기스터(MAGISTER)라는 과정이 있어 이를 고려해보았지만,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배나 동기들이 전부 이를 말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위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어학준비를 해야 하고 들어가서도 시험이나 논문 때문에 나머지 1년 6개월 기간도 도서관에서 살아야 하는데, 학위가 필요하거나 학계를 나갈 계획이 없는 실무자에게는 적합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의 낭비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때문이었다. 다만, 위와 같이 정규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한 비자 신청사유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뮌헨대학에서 수학하신 교수님을 통하여 뮌헨대학의 민법교수와 연락이 되어 그분의 초청장을 받아 비자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독일비자청에서 받은 나의 비자 내용은 2년 동안 뮌헨대학 부속 민법 및 민사소송법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수님의 양해 아래 아무런 구속이나 과제 없이 2년 동안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처음 6개월은 독일 어학원을 다녔고, 그 후 1년은 강의실과 도서관을 들락거리면서 독일의 법학교육을 접해볼 기회를 가졌다. 나머지 6개월 중 3개월은 뮌헨에 있는 독일의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독일 변호사들의 생활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 3개월은 여행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별로 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2년간

의 독일생활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각을 넓혀주는 좋은 기회였다. 기나긴 회색빛의 겨울을 지내보면서 그리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을 둘러보면서 날씨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와 우리가 지구상에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도로나 각종 계단에 설치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나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아직 잘 못산다는 평계 하나로 우리의 장애인들을 사실상 얼마나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게 했는지도 확연히 알게 되었다. 고속도로 주행중 노면에 잠깐만 차를 세워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자기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는 그들의 행동들 속에서 서구의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기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느끼는 것도 나만의 경험만은 아니었다. 도로표지만 보면 지도 없이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고, 도시계획이나 교통체계등만을 보아도 서구의 합리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독일 여행중 가장 인상에 남았던 지역은 바이마르, 라이프찌히 등 구동독지역이었다. 그 인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의 인상이다. 사회주의국가 중 가장 소득이 높았고 또한 통일 후에 서독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들러본 동독의 도시들은 우리의 30년 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을 북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통일 후 거의 모든 동독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현실, 그리고 30년 이상 동독체제에서 살던 사람은 서독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경험적인 사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양독정부가 과도기를 설정하기로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교통과 통신의 자유로 인하여 서독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빨리 통일이 되면 자기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동독주민의 막을 수 없는 열망으로 급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이런 독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떠나, 최소한 30년 이상의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수반하는 고통의 과정이 될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2년간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다른 선진사회를 보고 이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물론 얼마 전에 사망한 중국의 노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성공하는 것은 없지만, 사회라는 현실은 논리나 추론의 세계가 아니라 경험의 세계이므로, 다른 사회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변의 여러 회원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란다.

가끔 화창한 여름, 뮌헨의 어느 비어가르텐(번역하자면 야외 생맥주집)에서 먹던 맥주와 모젤강가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먹던 갓 담은 와인의 신선한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이국에서의 이런 추억도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정유진 사무국장

임영화

인터뷰 일시: 1997. 10. 1.(수) 16:00

인터뷰 장소: 위 운동본부 사무실

임: 먼저 지난 9월 23일 호텔 인터컨티넨탈(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제5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시민인권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임: 운동본부의 설립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 우리 운동본부는 1992년 10월에 발생했던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인 윤금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각계각층의 48개 단체가 함께 모여 '주한미군의 윤금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미국의 사과와 범인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일과성 대책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범죄를 예방, 근절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상호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기 위한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0월 26일 인권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사회단체, 학생단체 등 각계각층의 2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본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임: 그렇다면, 운동본부의 목적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단체의 목적을 한 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 한마디로 '민족자주권 확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 즉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의 경우 주로 평화군 축운동이나 '환경운동' 또는 '반기지운동' 등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개의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을 단위로 민족자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 귀 운동본부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정: 우리 운동본부에 단체 자격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웃음) 비록 단체로서는 민변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변 소속 회원 자격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들께서 우리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 특히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 문제와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임: 귀 운동본부의 대체적인 조직 구성과 주요 사업은 어떤가요.

정: 크게 대표자회의, 실행위원회, 위원회 등이 있는데, 특히 위원회의 경우,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회 별로 중심이 되어 미군범죄의 예방, 근절사업, 미군범죄신고센터 운영, 미군기지 실태조사사업, 여성인권 보호사업, 한미행정협정 개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 귀 운동본부의 설립 이후 주한미군범죄의 숫자는 변화가 있던가요.

정: 네, 그런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미군범죄의 숫자는 실제로 통계숫자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일단 윤금씨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 이전까지 연간 약 2,000여건을 상회하던 주한미군범죄의 수가 활동 이후부터는 연간 700건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임: 주한미군범죄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단국가의 현실상 활동이나 대국민 인식에 있어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정: 네, 사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하는 특수성과 6.25 한국전쟁 이후 생긴 레드컴플렉스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미군범죄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극히 미미하여 아예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까지 있었다는 점 등등이 활동 초기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우리 활동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였고, 다행히 그런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셨는지 현재는 많은 분들이 후원회원으로 운동본부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후원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현실 변화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 많은 분들이 후원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후원회원의 성격과 그 참여방식은 어떠한가요.

정: 사실 우리 운동본부는 24개 단체의 연합단체 성격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운동본부의 회원이란 것은 단체회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후원회원'으로 참여할 길이 폭넓게 열려 있고, 후원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운동본부의 중요한 역할이나 간부직을 맡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려면, 우리 운동본부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찬성하신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번역, 실태조사, 범죄상담, 소식지 발간, 기타 사무보조 등 '지원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액수에 관계 없이 정기적으로 혹은 일시불로 우리 운동본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정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 귀 운동본부의 정기적인 '금요시위'는 아주 유명하던데, 한 번 소개해주시죠.

정: 네,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1994년 발생한 '한국인 새 모녀 폭행사건'을 계기로, 1994년 12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12시에서 오후 1시 15분까지 용산에 있는 미군사령부 제5정문 앞에서 '금요집회'를 열어 미군부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미군 헌병에 의한 한국인 불법감금, 체포행위의 근절과 새 모녀를 폭행한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결국 미군 당국으로부터 미군의 잘못을 시인받고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문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군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매주 금요일 금요집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 9월 26일로서 연속 140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요집회는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각 회원단체별로 매번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세부 주제를 달리하고, 각 집회나 시위형태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 1994년에 발생했다는 '한국인 새 모녀 폭행사건'이란 어떤 내용이었는가요.

정: 1994년 10월 25일 서울 한남동 한남빌리지 외인주택에서 미군과 국제결혼해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하고 귀가하던 김금순씨(당시68세)가 미군 헌병대에 의하여 미제물품판매상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연행되어 딸 설은하, 설은주씨와 함께 약 5시간 동안 불법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입: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법률구조지원활동도 여러 번 있었던데,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 네, 우선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마클 케네스 이병

이 미군클럽 종업원인 윤금이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 결과 결국 한국검찰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여 마클 이병을 불구속 기소케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클 이병은 1993년 4월 14일 1심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1993년 12월 16일 2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았고, 이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4년 4월 29일 상고기각되어 1994년 5월 17일 한국정부의 신병인도요청에 의하여 인도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인 새 모녀 폭행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김씨 모녀가 미제물품을 암거래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미군측이 김씨 모녀를 감금, 폭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로 1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셋째로, 1996년 9월 7일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는 이기순씨(당시44세)가 미군 제2사단에 근무하는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에 의하여 목이 잘리는 참혹한 살해사건에 대한 활동입니다. 운동본부에서는 미군에 대한 항의방문,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의 개최를 개최하고 용산미군기지 앞에서의 장례식 거행 등의 활동 외에도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997년 1월 이기순씨 유족들이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 미군으로부터 7천8백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하는데 법률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수십 건의 국가배상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입: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운동은 어떻습니까?

정: 우리 운동본부는 1994년 10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6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론화 작업을 해왔고, 특히 1995년 12월 한미행정협정 개정안을 발표하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정부와의 한미행정협정의 개정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함으로써 한미정부가 개정협상을 사작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한미행정협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미행정협정 개정방향」,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알기 쉬운 한미행정협정」 등 여러 가지 홍보책자와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운동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1995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약 7만3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민들의 관심을 확산시킨 바 있으며, 1995년 8월 5일 용산 미군사령부 정문 주변을 약 2,000여명의 시민과 학생, 회원단체 회원들이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대회'를 가져 미군범죄근절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입: 귀 운동본부의 활동내용 중에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조사하여 여러 주둔 지역의 그 PPM 수치등 과학적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던데,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다행히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업무는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리 운동본부는 녹색연합과 연대하여 주로 각 미군 기지의 오염방출지점 및 각 미군의 비협

조적 방해 저지, 각 지역여론 환기 등을 통해 주로 구체적인 과학적 검증작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 부평, 동두천, 평택, 원주, 군산 등지에서 농업용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미군기지의 오폐수방출사실을 적발하고, 원주, 군산지역의 미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피해와 하남시 미군기지 주변 농경지 오염과 농작물 고사(枯死) 및 기름오염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 2월에는 연천군 군부대 사격장에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1발의 잘못된 파기로 인한 방사능 오염 파문을 폭로하고 방사능 조사를 벌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비롯하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일반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가요.

정: 네, 그것이 바로 '미군공여지'의 문제입니다. 미군공여지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전용공여지, 지역공여지, 임시공여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된 토지는 많은 부분이 한국국민들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토지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한미양국정부가 한미행정협정을 통해 미군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군 공여지에 대한 '사용권 부존재 확인등 청구의 소'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지원활동을 하여 현재 그 사건들이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 장시간에 걸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앞으로의 각오 또는 대국민 홍보활동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정: 그동안 우리 운동본부는 어떤 획일적인 틀에 운동방식을 고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운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홍보활동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운동본부의 임직원들은 물론 본부에 참여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회원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라도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운동본부의 명함과 홍보책자를 전해드리며 소개하는 차원입니다. 더불어 금요집회나 각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거나, 개별적인 미군범죄 피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군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힘써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가 『이달의 민변』지에 소개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운동본부의 후원회원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 우리 본부의 후원회비 납부구조를 꼭 소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으로 인터뷰 종결)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 전화: 744-1211 팩스: 3673-2296

• 계좌번호:

국민은행 205-21-0736-460 전우섭

우체국 010793-0113109 조재학

신한은행 216-02-006805 조재학

한일은행 012-121012-02-201 조재학

서울은행 14704-1663003 조재학

제일은행 125-20-221110 조재학

농협 027-02-224544 정유진

조흥은행 325-04-471053 정유진

## 노들담 N.M. 프로그램 소개

박찬운

안녕하십니까. 무뎠지만 하던 여름도 이제는 한풀 꺾였지요. 아무리 아등바등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세월은 살같이 흘러만 갑니다. 한국은 벌써 대선국면에 들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겠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의 소식은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민변소식지를 보면 민변의 활동이 얼마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 동료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한국의 민주화는 가까우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민변 회원 중 한 분이 내년 꼭 지원하길 바라면서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노들담대학에 대하여

노들담대학은 1842년에 프랑스 신부 소린에 의하여 세워진 카톨릭대학입니다. 미국에 여러 개의 카톨릭 대학이 있지만, 노들담은 명실공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카톨릭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입니다. 시카고

에서 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바로 위에는 5대호 중 하나인 미시간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들담은 지도상으로는 사우스벤드라는 도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상으로는 노들담대학 자체가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는 중북부의 지형에 맞게 완전한 평지에 고딕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의 골든돔의 주빌당과 그 옆의 성당, 그 위의 호수 2개, 9홀의 골프코스 및 8만 명이 들어가는 풋볼경기장은 이 지역의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캠퍼스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노들담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전설적인 풋볼경기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서는 풋볼시즌이 시작됩니다. 노들담의 풋볼을 보기 위하여 이 조그만 도시에 수십만명이 찾아옵니다. 12번의 내셔널 챔피언을 한 학교로, 매주 토요일에 생방송으로 그들의 풋볼경기를 중계해주는 미국의 유일한 대학교입니다.

학교 분위기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 비해서도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치안, 사립학교의 특징에 맞는 우수하고 안정적인 배경의 학생, 주변의 아늑한 주거조건 등등... 노들담은 한국에서는 비교

적 생소한 학교이나,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곳 중부권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립학교입니다. 학교의 랭킹도 높아 미국의 톱 25위권에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올해는 19위, 작년에는 17위였음).

## 2. 노틀담 로스쿨에 대하여

로스쿨은 186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카톨릭 대학 중 가장 오래된 로스쿨입니다. 랭킹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뉴스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19위, 최근의 『아메리칸로뉴스』에 의하면 11위입니다. 학생만족도에 의하면 전국 3위라고 최근 학교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랭킹은 동부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미국에서는 랭킹 25위권 내이면 최상위권이라 부르는 모양임), JD과정의 경우 입학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 3. LL.M.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프로그램은 로스쿨이 미국사회와 세계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로스쿨의 모토는 무엇인가 다른 변호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변호사란 무엇인가. 다수를 위한 것보다는 소수를, 부자보다는 가난한 이를 대변하는 것이 다른 변호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로스쿨에서 보통 만든 LL.M. 프로그램은 모두가 비지니스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엇인가 특징적인 것을 만들기로 하였답니다. 이런 생각 끝에 만든 것이 지금의 인권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퍼블릭한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게 미국에서 연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 몇 가지 특징과 프로그램의 내용

### 가. 인원

매년 12~13명을 선발함. 올해는 13명 선발.

### 나. 학비

등록금만 약 2만불 이상이나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노틀담에서 펠로우십을 제공함.(학비가 면제되고 학기중 9천불이 생활비로 지급됨. 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며, 현재 13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조건으로 입학이 허가되었음. 포함되지 않은 한두 명은 들어오기 전 폴브라이트등에서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였음. 위 펠로우십은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 허가시에 결정됨.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국에서 오는 변호사는 이것이 제공될 것이 확실시됨.)

### 다. 주거조건

독신으로 오는 경우는 미혼인 경우 캠퍼스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고(한달에 약 240불), 기혼자인 경우는 캠퍼스 부근의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좋음(약 600불이면 넓은 잔디밭에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음). 참고로 미국의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음(동부의 경우는 가족과 오는 경우 적어도 1,500불은 예상하여야 하고, 서부의 경우 약 1,000불은 생각하여야 함).

### 라. 생활여건

주변에 많은 쇼핑몰이 있어 편리하며, 특히 골프장이 많은 것이 특징임. 혹시나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는 지역이 될 것임.

### 마. 수업내용

1년간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학기에는 4학점으로 인정되는 논문을 써야 함(이것이 조금은 부담될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 미리 논문제목이나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것임. 비교법적인 연구나 국제인권과 관련된 것이면 무방). 약 절반 정도는 필수과목인데, 그것은 국제법, 국제인권법, 리걸 리서치, 국제인권의 실무 등이며, 나머지 학점은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됨. 약 100개의 과목이 설강됨으로 선택의 여지는 지극히 많음.

### 바. 수업방법

지극히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적인 방법임. 필수과목은 거의 LL.M. 학생들로만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적으로 토론식 수업진행임. 미리 과제물을 읽어오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고문임. 그러나 미국의 로스쿨이라는 것이 거의가 그런 것인데 이것은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음. 이 수업에 참가하다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어학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영어 때문에 이 과정을 포기한 사람은 없다고 함.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 사. 후속프로그램

이것은 선택사항인데 대부분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후속 인턴십 과정에 도전함. 인턴십을 하는 곳은 UN, EU 등의 국제기구, 국제 NGO임.

### 아. 입학준비

매년 2월 1일이 마감이므로 원서는 적어도 1월 초까지는 내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세이와 추천서인데 민변 변호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만일 지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제출한 추천서와 에세이를 참고로 보내줄 것임. 토플은 필수임(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음. 참고로 미국의 대학원 최저기준은 550점이며, 로스쿨은 하버드나 버클리의 570을 제외하고는 600점 이상을 요구함.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이 학교는 토플은 입학사정과정중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고 함. 권장점수 570~580). 참고로 브로셔를 보내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자. 기타

자세한 것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팩스: 1-219-255-9345

천리안: kya62

학교e-mail: chan.u.park.15@nd.edu

## 4. 마지막 부탁의 말씀

민변 변호사님들께 꼭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중연과 리정은등의 과제

# 자료 및 성명서

## 한중연의 결성근거

한중연은 198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성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목적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친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구성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구성원은 한국과 중국 국민으로,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연의 규약에 서명하고,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운영은 창립총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창립총회는 본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임원회의는 창립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본연의 예산과 결산은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규약은 본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창립총회에서 제정한다. 규약에는 본연의 목적, 임무, 구성원, 운영,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규약은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명칭은 '한중연'으로,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과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연의 명칭은 본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본연의 명칭은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사무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사무소는 본연의 창립총회所在地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 설치한다. 본연의 사무소는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본연의 사무소는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 한중연의 창립총회 결의사항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결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결의사항은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이는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본연의 결의사항은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목적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친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구성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구성원은 한국과 중국 국민으로,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연의 규약에 서명하고,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운영은 창립총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창립총회는 본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임원회의는 창립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본연의 예산과 결산은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명칭은 '한중연'으로,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과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연의 명칭은 본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본연의 명칭은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목적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친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구성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구성원은 한국과 중국 국민으로,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연의 규약에 서명하고,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운영은 창립총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창립총회는 본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임원회의는 창립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본연의 예산과 결산은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중연의 창립총회에서는 '한중연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중연의 명칭은 '한중연'으로,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과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연의 명칭은 본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본연의 명칭은 본연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편집자 주: 이 자료는 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로 지난 9월 5일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입니다.

##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박수근

### 1. 한총련의 결성과 활동

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시기를 전후해 태동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기반으로 성립한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자치조직이다.

한총련은 전국의 각 대학 총학생회를 그 기본단위로 하여 총학생회장을 중앙위원, 각 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대의원으로 하는 전국 8개 지역조직, 1개 특별지구조직, 총 25개 지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학생운동조직과 재야운동단체는 1992년 대선 이후 전세계적인 진보이념의 퇴조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학생운동권의 위치가 위축 내지 축소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한총련 1기 집행부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라는 노선을 설정하였다. 그 후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본부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통일대축전에 해마다 참가하였다. 특히 1994년 7월경 북한 김일성 주석의 조문파동, 1996년 8월경 연세대에서 있었던 범청학련 총회와 청년학생 연석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통일대축전 행사(이른바 연세대사태), 1997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양대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가지려다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된 후 발생한 유지웅 의경 사망과 이석씨의 치사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이 심해지고, 국민과 학생대중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 한편 한총련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노선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둔 자주적인 통일운동, 국민과 학생대중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을 내세우면서 한총련 주류의 통일운동 노선을 비판하며 한총련의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비주류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우리 민족에 있어 분단은 현실이고 통일은 미래기에 한총련이 통일운동을 주도하여 왔으나, 1996년 연세대사태와 1997년 5월의 출범식 직후 발생한 치사사건등을 계기로 학생들의 대량구속과 탈퇴가 계속되어 한총련이 와해되는가 하는 우려와 학생운동의 진로를 위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어 한총련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과 그 대책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 한총련의 운동노선과 지적사항

민족의 미래인 통일을 학생운동의 주된 노선으로

설정하고 활동한 한총련이 왜 정부당국의 탄압으로 인해 외해 위기를 맞고 있고, 국민과 학생대중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운동의 대중성 확보와 집회와 시위과정에서 노출된 폭력성 여부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가. 통일운동의 대중성 확보

통일운동은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계급과 계층, 사상과 정파의 차이를 초월한 것이기에 학생운동의 가장 인기 있고 대중성 있는 주제였으며, 학생들이 담당해온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통일운동의 투쟁방식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촉진시키거나 대중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한총련이 설정하고 활동하여 온 통일운동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퇴조된 민주, 진보라는 학생운동의 기존 이념을 대체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총련이 주장해온 통일운동의 핵심은 북미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북한·해외의 민족자주역량을 하나로 묶기 위한 3자 연대운동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들이 북한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며 정부의 주장처럼 북한에 동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한총련의 통일 관련 주장에 이적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운동진영에서도 북미관계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3자 연대운동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강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수구와 냉전, 반통일세력에 포위되어 김영삼 정부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고, 오

히려 북한 핵문제, 김일성 조문논쟁,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과거 정권에서 나타났던 대립과 갈등의 냉전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과 학생대중은 1970년대, 1980년대와 달리 북한을 대립의 상대로 보지 아니하고 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 여기고 북한과 상호공존하에 발전과 통일을 위해 점진적으로 교류 내지 협력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의식수준은 단순하지 않다. 북한이 붕괴되고 흡수통일이 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 예상울 초월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통일 불필요 의견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총련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의 철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한총련의 통일운동이 어떻게 국민들의 통일정서를 극복하면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본다.

한총련 내부의 결정과정과 경위는 자세히 모르지만 김일성 사망 후의 조문투쟁의 내용과 방식, 각종 집회의 구호내용,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후의 의견, 연세대사태시에 발표된 기자회견, 대의원대회와 각종 출범식에 배포된 선언문 등을 보면 당국에 한총련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과 학생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나 투쟁구호들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우리 남한사회가 통일을 위해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개혁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음에도, 한총련은 대북관을 명쾌하게 밝히거나 비판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총련은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이 아니라 남한사회 내의 자주적인 학생대중조직이므로, 국민과 학생대중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그들이 공감하고 통일운

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회의자료, 성명서, 대자보를 작성할 때도 내용의 수준과 단어의 의미 등을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국제인권기구 등을 통해 발표된 북한의 인권과 사회문제,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은 명백한 침략행위 등을 가지고 북한을 비판하는 등 명쾌한 대북관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한총련은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민정서를 고려한 자주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주장과 활동을 해야만, 정부의 탄압을 벗어나고 국민, 학생대중과 함께 하는 자주적인 학생운동단체로 존속할 것이다.

### 나. 집회와 시위의 폭력성 여부

한총련 출범 이후 공권력과 충돌한 집회와 시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학생들이 신청한 집회와 시위를 적절한 이유를 붙여 불허 내지 원천봉쇄하고, 학생들은 이를 강행하여 개최하였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진압하고, 학생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한 결과,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에 나타난 폭력성은 정부당국이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 내지 왜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우선 한총련의 학생운동이 탄압을 받지 않고 국민, 학생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의 폭력성을, 우선 각종 회의자료나 대자보, 성명서에 나타난 표현과,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나타난 시위용품과, 시위대 학생들의 행위가 국민, 학생대중들로부터

더 용인받을 수 있는 정도인가로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학생운동은 냉철한 정세 판단 하에 운동주체의 역량과 국민, 학생대중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투쟁을 설정하면 극단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한총련은 김일성 조문투쟁, 1996년 연세대사태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전민항쟁노선을 설정하는 정세 판단의 과도함과 아울러 표현의 과도함이 상당부분 지적받아야 하리라고 본다. 우선 한총련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미제와 김영삼 일당, 너희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민중이 죽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어느 출범식에서는 '반도 곳곳에 피로 물들인 저 산들의 싹뻗건 핏빛 강물이 돼버린 낙동강을 등지고 눈물을 씹으며 돌아간 해방전사들의 투혼이 아직도 우리의 심장에 강물되어 거세게 굽어치고 있다'라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상임위원이 '미국과 김영삼정권을 적으로 표현하고, 김00을 광화문에 내걸 때까지 투쟁하자'는 대중을 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 대회를 취재하던 언론관계자들도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표현한 사람이 학생이어서 표현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주적 학생대중조직임을 내세우는 한총련이 국민, 학생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여 학생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총련 출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전전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던 것이 쌀투쟁, 김일성조문투쟁, 통일대축전을 거치며 공권력과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자위수단의 차원에서 시위용품 사용 정도가 과격하고, 경찰과 공방과정에서 선봉대가 보여준 행위가 자위수준을 넘어 폭력성을 띠고 있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총련 간부들이 구속되었다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정당을 점거하는 행위, 정부당국이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철도편으로 상경하지 못하도록 검문을 강화하자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켜 탑승하는 행위, 각목과 화염병, 보도블록을 켜 들먹이 등은 기본이고 길이 1.5미터나 되는 쇠파이프를 준비하여 각종 시위에서 경찰과 시가전 전투를 연상케 하는 행위 등은 그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에서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에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인지, 국민, 학생대중들의 도덕성의 기준에서 용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집단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원천봉쇄하고, 한총련이 각 대학의 총학생회를 기본단위로 조직된 단체이지만 집회와 시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므로 그들에 대한 통일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집회와 시위에 맞서는 경찰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수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집회와 시위에 나타난 시위용품과 그것을 이용한 행위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학생운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적절한 예시가 될 지 모르지만, 1996년말경 노동법 파동 당시 노동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노동단체의 집행부는 시위 참가자들의 돌출적 행동에 기인한 폭력성이 표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고, 결과적으로도 정부당국의 예상과 달리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성을 띤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한총련 지도부는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부각되고 있는 폭력성이 정부에 의해 왜곡, 과장되는 빌미를 주지 않고, 국민, 학생대중들이 염려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그야말로 자위적 수단의 범위 내에서 건전한 집회와 시위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3. 정부당국 대응방법에 관한 지적

#### 가. 강경대응 여부

집단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 또는 지배계층이 언론매체등을 독점하거나 집회 및 시위의 정당성에 흠을 내고 폭력성을 부각 내지 과장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전달한다면 집회 및 시위의 주체자는 공권력과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그 긴장관계가 격화되어 과격하고 폭력성을 띠는 시위로 나타날 수 있다.

한총련은 통일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통일논의의 독점, 창구단일화, 통일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가 필요하다고 하며 각종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불허하고 진압을 하여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오고 있는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고 한총련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해서만 지적하고자 한다.

1996년 연세대사태로 구속된 학생 수가 약 500여명, 19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싼 집회와 시위로 구속된 학생의 수가 약 2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총련은 1992년 이후 조국의 통일을 위해 통일대축전에 해마다 참여하여왔는데, 1996년 8월 통일대축전에서는 범청학련총회와 청년학생 연석회의를 가지려 했다는 점이 그 이전의 행사와는 다른 점이다. 또한 한총련은 결성 이후 해마다 집행부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여왔는데 1997년 5월의 출범식은 다른 해의 출범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대축전 행사와 한총련의 출범식에 대해 정부

당국은 매년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여왔다. 그래서 학생들은 집회장소를 옮겨가며 개최를 강행하였으며 집회 후에는 시위가 따랐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지도부 학생들의 연행과 수배로 종결되어 국민, 학생대중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96년 8월의 연세대에서 개최된 통일대축전행사는 정부당국이 집회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하는 것까지는 예년의 대응방법과 유사하였지만, 학생들이 집회불허와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서 간략하게 예정된 순서에 따라 통일대축전 행사를 진행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학생들은 자진해산을 하겠다며 안전귀가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몇 차례 혼선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불법행사 엄단, 한총련 와해, 행사 참가자 전원 검거의 입장으로 급선회하여, 연세대의 과학관, 종합관으로 행사에 참가한 수천명의 학생들을 몰아붙였고, 동년 8월 20일에는 건물 내로 진입하여 학생 2,193명을 연행하여 이 가운데 470여명을 구속하였다.

정부당국은 검찰, 안기부, 경찰, 기무사, 교육부 등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총련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때마침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대북경계심리가 고조되었다. 급기야 1997년 5월에는 출범식을 강행하려는 한총련과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경과 시민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한총련의 와해를 외치며 한총련의 집행부, 중앙상임위원인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을 검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주동자를 색출하여 구속하던 종래의 정부방침과는 달리 시위에 참가한 저학년 학생들도 무차별적으로 구속하였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가능한 해산 위주의 진압방식이 적극적이고 강경한 체포 위주의 진압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시위진압태도에 대해,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과 개혁작업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학생운동이 통일운동뿐만 아니라 정권 반대를 넘어 정권타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의식을 느껴 강경진압으로 선회하였고, 공안세력들의 계몽찾기에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악용되었다는 주장이 부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고서라도, 학생들이 통일대축전을 마치고 자진해산 선언을 하였음에도 많은 학생들을 건물 안으로 밀어붙여 봉쇄하고, 건물 안의 단전, 단수를 학교측에 요구하고, 음식물 반입을 차단시키고,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지친 학생들을 검거하기 위해 건물 내로 진입하여 체포하는 진압방법은 법률적 의미를 떠나 정치적, 도덕적 기준에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세대사태를 기점으로 한 경찰의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등 과도한 최루탄 사용, 직격 최루탄으로 인한 실명자 발생 등은 최루탄이 시위해산 목적을 위해 넘어서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또한 시위대열을 이탈하여 골목안으로 피신하는 학생들에 대한 헬기를 동원한 추적이나 체포와 연행단계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한 폭언과 폭행은, 1996. 4. 11. 총선 이후 폭력시위 엄단, 검거 위주의 해산작전 등 정부의 계속된 강경방침 발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위진압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공권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다.

#### 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여부

연세대사태와 1997년 출범식을 전후하여 구속된 학생들은 집시법 위반은 기본이고 한총련 간부학생

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경우가 많다.

건전한 집회와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총련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하겠지만, 위 법은 신고대상으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이름과 주소,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 시위방법에 있어 각종 시위용품의 갯수와 구호내용까지 상세히 신고하도록 하는 등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회 금지 통고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과 그 실효, 신고한 집회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하거나 집회장소 주위의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입구에서 무차별적인 검문과 검색 등을 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 법이 허가제와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계속하여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집시법 위반의 점은,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한 집회와 시위를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 돌 등 시위용품을 사용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적인 문제 이외에 정부가 창구단일화의 논리로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저지하고 그들의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신고한 집회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한 상황과 분리하여 파악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한총련 또는 산하단체인 중앙위원회와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적성 여부, 한총련대의원자료집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이를 들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내지 소지한 것으로 기소되고 있다.

한총련을 비롯한 민주운동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계속 제기하여왔기에 그 점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구체적 행위와 그에 따른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총련은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이므로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이다. 한총련과 그 산하

단체인 중앙위원회 또는 조국통일위원회가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정국당국과 언론기관은 한총련이 노골적인 이적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총련의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가 다양한 변수를 현실적으로 고르게 고려하는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점과 충분한 국민적, 대중적인 정서와 합의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경계와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미군철수의 예를 보면 그들의 논리는 한반도의 통일에 주한미군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군이 전쟁시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불평등관계에 있다는 현실에 출발하여 민족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여도 그 논리와 과정이 다르므로 북한을 동조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총련의 주장들은 우리 사회에서 생성되어 주장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논리로서 검증되고 비판되어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로 발전되거나 도태될 것이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에 의거 처벌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한총련 제4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 내지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문건은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토론을 거쳐 만든 것이기에, 이를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려는 의사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상도 가질 수 있고, 자주적 학생대중조직인 한총련은 위상에 맞는 신념과 사상을 가져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성격의 총학생회와 간부학생들이 있고

각종 자료집을 만들 때도 다양한 사상적 견해에 입각하여 검토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이 마치 주체사상등 특정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북한의 논리를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한 채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의 자료집 등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는 민주사회가 다양한 사상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도외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부당국의 강경대응은 공권력 남용

연세대 사태, 북한잠수함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의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 학생대중의 경계심리를 기초한 강경대응방침에다가 1997년 5월의 출범식을 전후해 발생한 치사사건을 정부당국은 한총련의 와해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것 같다. 예컨대 1997년 7월말경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대학 총학생회의 간부 중 한총련 중앙상임위원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계속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 학생대중들에게 알리는 것, 수사기관원들이 한총련 간부학생의 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전화를 하여 가족들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것, 한총련에 가입하는 것은 학생개인이 아니라 총학생회이고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학생 개인에게 불처벌을 조건으로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학생운동은 현재의 국민정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 위에 존재하고 특히 통일운동은 북한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논리와 신념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음은 국민, 학생대중, 정부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 학생대중들이 한총련을 비판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통일논리주장의 미숙함, 집회와 시위에서 표출된 투쟁방식의 위험성이지만 학생운동을 위한 한총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에 정부당국이 한총련의 집회와 시위에서 보여준 집회 불허, 원천봉쇄, 진압방법은 군사독재시절에 보여준 공권력의 행사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 없다. 또 한총련의 노선과 투쟁방식을 가지고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학생운동단체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1. 한총련변론지침(민변)
2. 양심수총회보고서(민가협)
3. 건전한 시위 문화정착(인권협)
4. 국가보안법문제(인권협)
5. 한총련의 개혁(전국연합)
6. 통일운동대중화논쟁(월간 말)
7. 한총련 수사결과(서울지검)
8.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등

# 한총련 탄압에 대한 학생운동의 진로

김영규(민교협,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1. 학생운동 탄압의 실태

김영삼정권의 집권 5년은 시국관련 구속자만도 총 3,600명을 넘기고 있으며 94년 389명, 95년 285명에 이어 96년에는 학생구속자만도 922명(이 중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494명)에 이른다. 게다가 올 97년에는 6월까지의 구속자만 하더라도 744명에 이르고, 이 중에 413명에 달하는 구속자가 6월 한 달 동안에만 발생하였다. 지난해 연세대 사건은 단일사건으로는 학생운동에 대한 최대 탄압기록을 세웠다. 총연행자수 5,899명, 총구속자수 462명, 불구속입건 3,341명이나 된다. 특히나 김영삼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날이 갈수록 그 깊이와 폭을 더하고 있다.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도 같은 비이성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김영삼정권의 공안탄압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진보적인 운동세력 내에서는 이러한 탄압을 피해간 단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한총련 연세대 사건 이후부터 올해의 출범식과 이석씨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 대한 구속은 매일같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정권과 공안세력들은 한총련 출범식에서의 이석씨 사망을 마치 기다리길래도 한 것처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전면 외해를 선포하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의 학생회장들에 대한 전원 검거방침과 한총련 탈퇴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의 이러한 광폭한 탄압은 이미 지난 7월 31일까지 한총련 산하의 206개 대학중의 60.2%인 124개 대학이 한총련을 탈퇴했으며, 한총련 중앙대의원 1,658명 가운데 63.5%에 달하는 1,053명이 총학생회 또는 개인별로 한총련을 탈퇴하였다. 그러나 정권과 공안세력은 8월 1일부터 구속된 대의원 52명을 제외한 553명 중 1차 사법처리 대상자 92명을 우선 소환조사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대중적인 자치기구인 학생회의 뿌리를 뽑고자 한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한 폭력행사 및 강제연행, 납치는 물론이거니와 신성한 연구와 교육의 요람이 되어야 할 대학교정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감시·방해하는 헬기가 뜨고 권총위협을 통한 검거열풍이 불고 있는 한편, 공권력은 마치 자기집 안방을 드나들듯이 대학을 출입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 2. 학생운동 탄압의 본질

김영삼정권은 지난 93년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문민정부'라는 정권합리화 이데올로기 속에서 과거 5, 6공 군사독재정권과의 차별화 정책을 실현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허구적 외피로 정권을 포장하였지만 반노동자, 반민중적 지배정책들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압살하는 독재정치는 김영삼정권을 본질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

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김영삼정권의 공안 칼날은 지난 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형성된 대북강경정책과 진보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박홍의 '주사파' 발언으로 공안공포를 조성하면서, 지난해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연세대 통일행사에 대한 초강경 과잉진압에 힘입어, 급기야는 북한 잠수함의 동해안 좌초사건 등을 계기로 삼아 국가안보를 빙자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선도적 인사들,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 등의 죄목을 씌워 영어의 신세로 전락시켜 왔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김영삼독재정권의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공안탄압의 주대상이 되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연세대사건 이후 전국 대학 총장·학장과의 오찬에서 "이들 폭력세력에 대한 무분별한 동정론은 일부학생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생시위는 정당한 시위라고 할 수 없다" (1996. 8. 21.)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김영삼정권의 한총련 탄압은 이미 이적성 시비를 떠나 학생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정권은 지난 4월 24일 '한총련 죽이기' 등 현재의 공안탄압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좌익사법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국의 40여개 단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한총련 관련 학생들을 검거할 때 안기부의 수사관들까지 동원되는 등 지난 12월 26일에 날치기 개악된 안기부법에 의해 수사권이 부활된 안기부도 공안분위기 조성 및 탄압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 초에 명명한 황장엽의 고정간첩설과 관련한 '황장엽 파일'은 뚜껑을 열고 파괴적인 공안탄압과 분위기 조성의 시기만을 점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결국 아래와 같이 진보적 민중진영에 대한 탄압의 본질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억압하고 보수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책동이다

군사독재정권 이래 지금까지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에나 그리고 선거때만 되었다 하면 언제든지 불거져 나오는 것이 있다. 다음아닌 각종 간첩사건과 북한의 전쟁위협등 공안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진보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이런 공안탄압은 정권에 강력히 도전하는 학생과 진보인사, 그리고 선진노동자에게 무차별하게 감행되어져 왔다.

현시기 공안탄압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거센 것은 그만큼 김영삼정권과 정권 재창출이 위기에 몰려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해주는 것이다.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개악에 의한 총파업 국면과 한보 사태 및 김현철 부정사건, 권력말기의 공동화현상 및 신한국당 내의 정파간 갈등문제 등으로 김영삼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지지도를 한 자리수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작년 이후부터 무르익은 공안사건 및 황장엽파일, 최근 휴전선에서 있었던 무력충돌 등은 더없이 좋은 메뉴감이자,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관철시키고 안정적인 권력 재창출을 위협하는 노동자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중들로부터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들을 분리 고립화시키고 대중을 개량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지난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이 대중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력과 지향 및 세력화의 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후퇴하였다. 즉, 대중적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노동자 민중운동세력의 근본적인 지향을 한 축으로는 억압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개량적인 정책들만 취하도록 강제하는 다양한 사전정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반북이데올로기와 공안 여론 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변혁의 근본적 지향을 갖는 노동자 민중운동세력을 대중으로부터 분리 고립시켜내고 체제내적 개량화를 유도하려는 저의가 함께 있는 것이다.

### 3. 학생운동 탄압의 무기 - 국가보안법

역대 독재정권들은 물론 현정권의, 학생운동은 물론이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의 무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김영삼정권은 외국의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제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국내외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4년 3월 여야영수회담에서 “북한이 아직도 간첩을 남파하는 등 한반도 적화통일 전락”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여론과 논의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았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유린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을 포함하여 역대정권들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승만정권이 집권하면서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는 물론이고 모든 고유한 기본권

들을 유린하거나 반정부 민주화투쟁을 탄압하고 독재정권과 이에 유착한 지배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및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의 공안탄압기구들을 동원하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왔음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과 매관자본가와 결탁한 정권의 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박정희정권 이후로는 친미세력, 독점세력과 야합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비판하는 진보적인 인사나 단체는 물론이고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투쟁조차도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징역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내렸던 법이 다름아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폐지할 수 없는 김영삼정권의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독점체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한 그 이면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 학생, 지식인 등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 위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이러한 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자본의 착취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하나의 독자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세력 나아가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보적인 학생운동, 노동자 민중운동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은 양 누명을 씌우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역사적 필연의 과정은 지금의 독재와 독점이 누려온 민중수탈·억압체제를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이들을 거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으로 유효한 수단인 것이다.

### 4. 한총련 탄압에 맞선 학생운동의 진로

가. 학생운동의 역사성에 대한 재검립을 통한 철저한 자기비판과 운동의 대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학생운동은 부당한 권력과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고 실천적인 문제제기를 선도하면서 유지되고 존재해왔다. 정권과 자본은 공안탄압을 통한 학생운동의 말살을 기도하고 있으나, 물리적 탄압으로 ‘한총련이라는 조직’의 와해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학생운동이 존립할 수 있는 결사적 자유와 대학사회가 갖는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저항정신 등은 말살될 수도 없을 뿐더러 말살되어서도 안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그 어느 집단보다도 선도적인 공헌을 했던 것이 다름아닌 학생운동이었으며, 이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대중적인 자치조직 - 학생회 - 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총련의 ‘김영삼정권 조기퇴진과 전면항쟁’ 전술이 갖는 한계와 유지용 상경 및 이석씨 사망 등 폭력행사의 문제 등은 향후 학생운동의 진로모색에서 깊이 있게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엄혹한 원천봉쇄와 강제진압에 맞서서 운동의 대의와 대중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생폭력을 폭력 일반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 국민은 이에 앞서 그러한 폭력을 부른 국가권력 자체의 반민주적 공작력과 반국민적 폭력성을 비판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모순인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통일적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형성·조장해 온 정권과 자본의 역사와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이 모순을 견지해온 권력과 자본에 있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국민들의 이해와 자

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정세와 계급역관계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운동의 기본노선 및 투쟁전술의 전면적인 재정립 등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한총련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은 최근 보수화, 체제내화하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투쟁성과 폭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권력과 자본, 언론에 의해 과도한 투쟁일변도와 지나친 폭력성의 문제 등으로 크게 왜곡되어왔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정당성, 진리성, 대중성을 이에 매장시키고 말았다. 여전히 학생운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투쟁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모든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지지 지원 연대투쟁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것은 학생운동이 역사 속에서 검증받은 정체성의 구현이자 사회변혁운동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학생운동의 선도성에 있다.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오는 한계와 오류의 문제를 시급히 극복하고 학생운동의 선도성 -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중투쟁 방법을 바꾸는 등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철폐투쟁을 비롯한 민주주의 쟁취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정권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본질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당면의 주요 과제는 노동자 민중운동세력이 학생운동과 연대할 때 더욱 힘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은 학생조직을 비롯한 대중조직들마저도 이적단체로 몰아 불법시하는 어이없는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사독

재정권과의 야합에 의해 탄생한 김영삼정권이 태생적 한계와 본질로 말미암아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5년간 오히려 민주화에 역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악법들에게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학생운동은 과거 군사독재의 유물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노동자 민중탄압법과 반민주악법들에 대한 완강한 철폐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근본적인 지향을 분명히 하는 대선투쟁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대중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운동세력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이자 중심으로 나서야 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즉,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더 이상 보수세력들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위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하는 것 - 이것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학생운동이 지향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라. 이제 한총련과 학생운동은 다양한 학생대중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포용해야 하며,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학생들 사이에 "50%의 학생들이(선거에) 참여하고, 5%의 학생들에 운영되는 학생회"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이는 학생대중의 보수화, 개인주의화의 문제도 한 편으로는 존재하겠지만 대중적인 학생 자치조직으로써의 학생회가 그만큼 경직된 활동으로 일관하여왔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대목이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한총련 중앙대의원회 선거에 의해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는 문제와 연 2회 정도로 제한된 논의 구조 문제 등을 재고하면서 한총련 활동에 대한 학생대중의 구체적인 공유구조 및 평가구조 등을 마련하는 등으로, 전국 단일의 학생조직인 한총련의 민주화와 올바른 학생운동의 구조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결산의 집행 및 보고 등을 포함하여 '공개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견지될 수 있어야 한다.

##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요약문

### 김선웅(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그동안 학생운동의 지지 요인은 학생으로서의 양심적 순수성과 도덕성이었다. 그러나 작년 연대 사태와 올 한총련 출범식은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였다. 그로 인해 존립 근거를 상당부분 잃게 되었다. 그것은 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고립과 일맥상통한다. 더구나 올해는 객관적 사회변화에 따르는 자기혁신의 부재와 더불어 정권의 전략적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있어서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 방안을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이야기해보겠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한총련 출범식 전후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시급히 정리를 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최대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기적 과제는 3가지 문제로 나누어보자. 첫째는 사상적 부분이고, 둘째는 조직적, 셋째는 활동방식이다. 이 세 가지는 학생운동의 핵심적 구성요인이고,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

먼저 사상적 부분에서는 학생운동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통일투쟁의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보겠다. 학생운동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학생운동의 위상 설정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간 학생운동의

역할은 선도성과 급진성, 그리고 진보적 사회참여 역량의 배출이었다. 이 선도성과 급진성을 현시기에 어떻게 재구성하고, 더불어 사회적 진보역량을 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의 핵심부분은 상층부 중심의 통일운동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이같은 대중적 통일운동을 벌이면서, 국민, 학우들과 동떨어지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한다. 8월 한 달만 하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대중적 통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총학생회연합체 구조의 개혁이다. 1년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장을 뽑고,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일년 내내 계속되는 등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또 중앙집행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업의 기획권, 집행권들은 제도적으로 분산시켜서 개별학교가 자신의 역할과 처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로 활동방식에 있어서는, 작년 연대 사태나 올 출범식같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권의 정치적 술수에 맞서 좀더 유연한 전술로 극복했어야 했다. 그래서 점차 집회와 시위문화를 비우고 장기적으로 학생사회에서 학우들과 국민들에 기반을 상실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현재 정권에서 말하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탈퇴 시한 등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일고의 가

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10, 11월의 학생회 선거를 통해 검증받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 강현욱(전학추본(준) 임시대표, 국민대)

먼저 이 자리에 한총련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가 없어 아쉽다. 나는 한총련 내에서 비주류의 입장에서 주류측 운동을 비판하고, 특히 한총련의 97년 총노선, 총기치를 중심으로한 한총련 운동을 평가해보겠다.

3월 초부터 학우들에게 회자된 97년 한총련의 총기치는 '올해는 전민항쟁의 발파공, 불바람으로 김영삼정권을 조기퇴진시키고...' 등이다.

전민항쟁의 노선은 한총련 주류가 가지고 있는 정세인식, 사회인식에서 기반하였다. 전민항쟁의 의미는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반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며 범민주세력의 단결투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낙관적이며 낙후된 정세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것은 학생운동이 해당시기에 어떻게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에서 출발하며, 학생사회 내부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담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학부제 문제, 학회운동의 어려움, 여성문제, 환경문제 등을 올곧게 총기치에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상당부분 친북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앞에서 말했듯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투쟁방식에 있어서도 폭력성 문제는, 방어적 폭력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투쟁이 대중들로부터 지지, 공감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유지웅, 이석씨의 죽음은 공격적 폭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져왔던 부분도 분명히 머리숙여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향후 학생운동의 방향은 먼저 올바른 정세인식과 사회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현시기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보편적 민주 획득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학회운동, 환경문제같이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천착하는 학생운동이어야 한다. 아울러 한총련 운영상 민주성 문제는 한총련 직선제같은 형태로 대중들로부터 평가, 검증받고, 재정의 공개를 통해 학우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한총련 주류의 정치사상적 노선엔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시기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가 점점 보수화해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먹히고 있다는 얘기다. 이 기회를 통해 한총련과 학생운동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이태호(참여연대 기획부장)

난 전대협 세대다. 86년 건대항쟁과 임수경씨의 방북까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세대다. 이 자리에서 먼저 10여년의 차이가 나지만, 86, 87년과 96, 97년을 비교해보고 싶다.

86년 건대항쟁 이후 사람들은 학생운동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듬해 6월 항쟁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학생운동세력을 지지하고, 그에 동감하는 것을 경험했다.

10년이 지난 96년은 건대항쟁과 비교가 된다. 학생들의 주의, 주장과 탄압의 정도에서 비슷하다. 또 한총련은 97년을 제2의 6월항쟁으로 만들겠다고 공

언했지만, 다른 많은 사회운동세력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6월항쟁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6월항쟁때 일부에서 전경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을 써도 국민들은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 한총련의 행위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다. 그게 단순히 정세가 악화되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통령 지지도만을 비교해도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지금 호응받지 못하는 건 학생운동진영의 정세에 대한 판단오류가 아닌가 한다.

또 90년대 이전에는 물리력으로 전선을 돌파하거나 사수하는 게 정치적, 전술적으로 엄청난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한총련은 너무 물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현재 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탄압이 한총련이나 학생운동이 정권에 큰 위협이 되어서 하는 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정권이 탄압을 함으로써 생기는 돌발변수로 인해 그걸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이러저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해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적 오류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학생운동이 전체적으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80년대 학생운동이 가졌던 역할이나 목적과는 구분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나 목적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학생운동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실천했으면서도, 통일이 현실화되어가는 지금,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없고 보잘 것 없는 집단을 전략해 버렸다. 그것은 학생운동의 통일정책역량 부족의 문제도 아니고, 이데올로기 탄압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남한에서는 당연히 구분하는 북한의 정권과 민중의 구분

을 북한에 대해 전혀 적용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북한 정권의 주장을 진실이고, 현실인 양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서, 올해 한총련은 북한동포의 쌀문제나 식량위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현시기 학생운동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 상상력을 회복하는 문제다. 이전 10년, 아니 김영삼정권의 출범 이후 5년간 학생운동의 처지와 조건, 역할이 어떻게 변했고, 냉철히 봐서 이후 5년 뒤에 학운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상상력을 회복해야 한다. 막연히 대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간부들이 좀더 헌신하면 잘 될거더라는 전제위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과격하게 말하면, 92년 이후 학생운동이 정치적 선도성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통일문제도 과격한 주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도 선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립된 주장이었다. 학생운동이 지나치게 선도적 위치와 역할을 전제하여 활동을 하고 대중을 동원, 조직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는 우리 사회의 운동이 구체화,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사회운동과 만나는 장(場)도 정치적 구호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한총련 문건을 보면 그들은 1만 간부, 백만학도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1만 간부에서 해마다 수천명의 간부가 졸업을 하면서도 얼마큼 많은 사회일꾼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성운동, 환경운동, 지역운동 일꾼들이 나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단일한 지도노선에 움직이는 구조에선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일꾼을 만들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더

불어 학생회 내에서 사상이나 노선의 대립, 대결이 아니라 정책대결을 펼쳐, 소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규업(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한총련과 학생운동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학생들은 체면을 따지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대수술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학생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여타의 제반 사회운동단체에 까지 미치고 있다. 해서 여타의 단체도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한다.

양심과 도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학생운동이라면 민간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그 이후의 학생들의 행동이었다. 땀땀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려 들고, 인정을 하더라도 단서를 붙이는 등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건 현재 학생운동이 가지는 철학과 사상의 문제이고, 이를 근본부터 되짚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우리 전국연합은 한총련이 이야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등과 같은 외부적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구호도 정세와 시기에 맞게 주장하여야 한다.

한총련의 많은 간부들은 연행된 후 비굴하게 반성문을 쓰고 빨리 나오려고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의 과오는 땀땀이 인정해야 하고, 책임자들은 자진출두해야 한다. 그런 운동가로서 기품 있는 자세가 선행되었더라면, 현재 공안탄압 분쇄투쟁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총련에도 애정어린 비판을

하고,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동시에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자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반 사회단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학생운동도 살리고 공안탄압도 분쇄하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것이 얼마만큼 현재 한총련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다. 현재는 한총련의 위기가 아니라 학생운동의 위기임에 분명하다. 한총련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것을 대체할 어떤 세력이 이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학생운동 전체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같이 대학문화가 개인화되고 상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면 기록하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학생운동권이 관심없는 일반학우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간부들은 상층으로 갈수록 고립화되고 있고, 하부의 정서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대중들과 유리된 투쟁과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관료주의화되는 것이다.

이젠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술먹는 것부터 다시 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대화부터 다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학생운동 출신들이 과연 사회운동가들로 배출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그건 학내에서 기반이 없는 간부들이 사회에 진출할 역량과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

서 학생운동의 위기는 자체의 위협만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학생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학생들이 한총련을 사수하자고 하는데 한총련 간부들조차 한총련을 사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너무 쉽게 굴복한다. 빨리 나가서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반성문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지킬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학내에서도 너무 쉽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버린다. 강의실,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끌려가도 교수나 학생들 누구하나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지켜볼 뿐이다. 자칫 학원이 옛날의 무권리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그런 것들이 위기다.

현재는 단순한 한총련의 재건도 아니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을 거친 학생운동의 재건이 필요하다. 그건 한총련이 기반하고 있는 학우들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무분별한 정치투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부제와 같이 학내에서 제기되는 걸림들부터 극복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를 단순히 학생운동의 위기가 아닌 사회운동의 위기, 진보운동의 위기로 보고, 극복하는 슬기를 모아야 하겠다.

### 전용석(민중운동탄압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 노동정치연대 의장)

원론적 얘기는 건너치우고 현장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현재 한총련의 탄압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임을 수차례 말했다. 한총련 출범식 이후 민운탄범대위 동지들과 명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는 동안 시민들로부터 혹독한 냉대를 받았다. 유인물을 구겨 얼굴에 던지고, 대자보를 찢고 하는 행동을 당하며, 학생들의 미숙하고 감성적인 순간의 행동이 얼마나 전체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답하기도 했다.

한총련의 대중성 확보의 문제는 노동자, 민중들의 구체적 삶과 투쟁에 연대했을 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중성이란 대중추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의 정당성 문제도 정당한 대응의 조건을 갖춘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 무조건적인 양비론은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총련의 혁신이란 노동자와 민중들의 구체적 투쟁에 강고하게 결합하는 것을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하승창(경실련 정책실장)

과연 현재의 학생운동이 미래지향적인가 꼼꼼히 생각해 보자. 왜 10년도 더 된 구호가 아직도 붙어 있을까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가 변한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자.

80년대에도 학생운동은 폭력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때는 별로 비난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비난받을까. 그만큼 사회가 바뀐 것이다. 군사독재시절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의 성격을 명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동일한 방식의 폭력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학생운동진영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대중의 조건이 바뀌었다고 약간의 전술적 수정만으로 가능할까 하면 그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학생운동 내에는 정치의 과잉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정파간의 대립, 대결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새로운 가치와 신념들을 대학사

회에 놓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 어쩌면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르게 시작해야 우리 학생운동이 바뀔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걸맞게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와 신념, 수단과 조직을 갖추고 학생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영규

교수된 입장에서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문제는 미처 제기하지 못하였다. 아긴다면 더 철저히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어쨌든 민간인 치사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또 검찰에서 쉽게 반성문을 쓰는 문제도 도덕성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는 문제라면 분명히 재고해 봐야 한다.

학생운동의 기본은 우리 사회의 근본 모순을 타격하는 데 있다. 그것은 통일투쟁보다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몇 토론자가 제기했듯,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만이라도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대책위를 꾸리고 투쟁을 시작하자. 또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한총련 주류측에 제안하여 올바른 학생운동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 박수근

변론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회단체 중 몇몇 단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

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대개 조직이 열악하거나 내부 구성원들간에 토론, 비판, 전술과 그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많이 보였다. 한총련도 그와 유사한 사례를 보여준다. 한총련이 판성화,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그게 공안당국의 주목대상이기도 하다.

더불어 제반 민주·사회단체들도 그동안 한총련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좀더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어야 하고, 그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민우(과거청산국민위원회 간사, 객석토론)

예를 들어보자. 달리기를 하다가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자. 함정을 파놓은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함정에 걸려 넘어진 사람의 준비 부족과 미숙함을 탓해야 할까. 순서가 조금 뒤 바뀐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또 주장과 구호에 있어서 대중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총련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은 90년대 들어 민족민주운동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하였던 문제다. 그런데 정작 작년에 한총련이 그런 주장으로 인해 이적단체로 몰리고 탄압을 받을 때, 이전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한총련의 주장을 적극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대중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한총련이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하겠다고 정부측에 수차례 집회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원천 봉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럴 때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책임 있는 어른들을 보지 못했다. 일정 정

도 우리들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요즘 들어 시민운동과 민족민주운동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 현재 시민운동이 누리는 열린 공간은 분명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결과물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요즘 시민운동진영에서 민족민주운동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폄하하는 데 이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본다.

### 최규업

앞서 김교수님이, 전국연합이 8월 투쟁에서 왜 의도적으로 한총련을 배제했는지와 전민항쟁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서 말하듯 8월 대회에서 일부러 한총련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부 언론의 고의성 오보다.

민족회의와 범민련은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서로 만나 올 통일대회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안을 한총련 지도부측에서 반대한 거다. 그 뒤로 범민련측도 같이하려고 노력했고 우리도 노력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따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오히려 한총련측이 범민련 어른들을 배제한 결과를 낳았다.

전민항쟁에 관하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법적, 제도적 여건상 합법투쟁만을 할 수 없는 건 상식이다. 반면 지방자치체나 기타 다른 선거공간을 통하여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민여론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투쟁만을 할 수도 그렇다고 비합법투쟁만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합법투쟁을 지향하지만 전민항쟁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기본입장이다.

현재 한총련의 문제는 통일운동에 있어서 교조적 3자 연대다.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또 민중연대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회운동 진

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 물론 대중노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들은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치투쟁 일변도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 박래군

앞에서 공안탄압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나는 반대한다. 현재 그런 대책기구를 만들면 유명기구가 될 거라고 장담한다. 지금껏 대책기구가 급조된 경향이 많았고 이후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양으로 갔다. 지금의 분위기가 딱 그렇다. 공안탄압 반대 분위기가 끓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 조직만 안전하면 된다'는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또 하반기 정치일정이 대선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힘을 신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탄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규정에 따르는 단체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손을 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운동권 중심의 공안탄압대책기구가 아니라, 누구나 공유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불심검문반대 캠페인같이 민족민주운동진영이나 시민운동단체, 혹은 시민들이나 학생들 모두 함께 나설 수 있는 운동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이태호

대중성이 하나의 테마 같은데, 그것과 관련하여 아까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보겠다. 학생운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기제나 수단은 굉장히 대중적이며 문화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한총련의 각종 집회

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기제나 기술 등은 외국의 학생 운동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워하고 배우려고까지 한다. 한총련은 기술적인 면에서 대중적인 요소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극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운동이 발전시켜온 문화적 기제 말고 실제적으로 대중적일 수 있는 요소 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회 간부대오와 학생회 자체가 지나치게 학우들을 지도하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학우들과 토론이 가능한 부분을 가로막고 있다. 한총련의 문서에 보면 '학우들을 만나자, 과총회를 열심히 하자' 등의 당위적 구호는 있지만, 간부들은 실제 어떠한 내용을 관철시키려는 지도적 관점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지 못한 게 실정이다.

많은 대중조직이 잘 굴러가느냐 아니냐의 척도는 간부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한총련이 자랑하는 1만 간부가 대중의 밖에 있고, 1만 간부가 만들어놓은 화려한 체계와 말 속에만 스스로 숨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전받을 땐 당황하고, 그것을 단순히 문화적 기제나 대중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환상, 당위적 담론으로 우회하여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한총련이 받고 있는 탄압에 대해 생각해보면, 분명히 탄압에 대해 정치적 방어선을 내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다루는 방식에서 본다면 탄압 분쇄라는 것은 운동권의 자위(自衛)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대를 실제적으로 구축하여 보다 공세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대응할 방법을 더욱 적극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총련 탄압에 대해 '한총련 탄압 분쇄'라고만 얘기한다면 한총련을 적극 옹호하는 투쟁이지만, 한총련이 보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한총련에 대해 욕도 하고 정부를 비판도 하고 하는 이런 토론이 한총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총련도 스스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참여하면서, 언론에 이용당할 거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집자 주: 이 자료는 지난 9월 5일 사회복지위원회 모임에서 있었던 초청강연의 발제문입니다.

## 빈민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호(한국도시연구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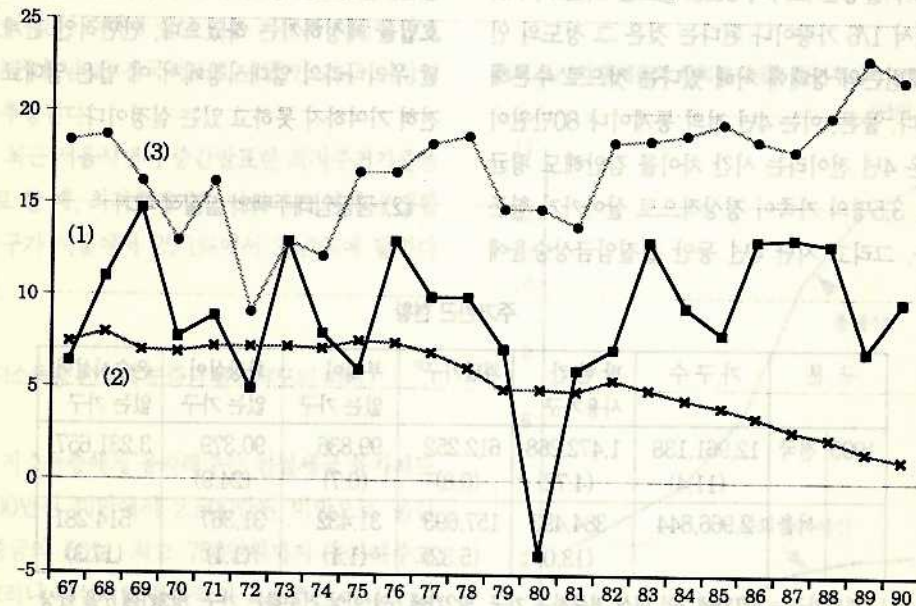
### 1. 우리나라 빈민복지의 문제점

#### 가. 선성장 후분배 논리의 허구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지표가 극히 열악한 것은 소

위 '파이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야 각자에게 분배되는 몫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논리가 가당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GNP 성장률 및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추이



- (1) GNP 성장률
- (2) 1991년 의료부조대상자 선정기준(85천원) 가치 이하의 소비지출 도시가구원의 비율(1/10배율)
- (3) 각년도 도시가계지출의 50% 이하를 소비지출하는 도시가구원의 비율
- 출처: 박순원, 「빈곤의 실태 및 특성」, 1993

나. 빈곤계층의 증가

우리나라에 빈곤한 이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빈곤선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빈곤선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속하는 가구만도 1/5이나 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만 약 60만 가구가 빈곤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3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가구가 도시에서는 약 15%, 전국적으로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듯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정도를 버는 가구가 약 1/5에서 1/6 가량이나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인구가 절대빈곤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4년 전의 통계이나 80만원이란 소득은 4년 전이라는 시간 차이를 감안해도 평균 가구수인 3.5명의 가족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액수이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실질임금상승율에

비해 물가상승율이 더 높다는 것과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불안정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전국의 가구 중 약 1/5의 가구, 최소 250만 가구 이상이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 도시서민들의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 전월세 비용의 계속된 상승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건설은 해방 후 처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도시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전월세 비용은 집값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물론, 임대료를 통제하기 위하여 1989년에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안면적인 관제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에서 이 법은 임대료 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폐기

주거빈곤 현황

구분	가구수	방한칸 사용가구	파밀가구 <sup>1)</sup>	부업이 없는 가구	화장실이 없는 가구	온수시설이 없는 가구
1995 전국	12,961,138 (11.4)	1,472,268 (4.72)	612,252 (0.8)	99,836 (0.7)	90,379 (24.9)	3,231,657
서울	2,966,844	384,493 (13.0)	157,693 (5.32)	31,432 (1.1)	31,367 (1.1)	514,281 (17.3)

1) 파밀가구는 방1칸에 3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방2칸에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방3칸에 7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파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준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국토개발원에서 제시한 인체공학적 기준을 참고했음.

2) () 안은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1990.

이러한 도시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공화국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도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거의 폐기되다시피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있으나, 도시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공영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있다. 25만호를 짓겠다던 영구임대주택도 19만호를 지은 채 중단되었다. 그리고 6공화국에서 공약했던 매년 5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현재는 철거지역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있다.

(3) 주거빈곤 가구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시서민들의 주거문제는 계속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옆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방 2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서울에만도 20만 가구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70만 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중간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서울에서 25.1%에서 38.1%에 달한다고 한다.

(4)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의 미비

또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주는 전월세금 융자제도도 2,0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옮길 때, 보증금의 50%, 최고 75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융자액의 과소뿐만 아니라,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동사무소별로 융자신청을 받는 방식이나, 이사갈 집주인의 보증을 받는 과정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재개발로 인한 서민용 주거의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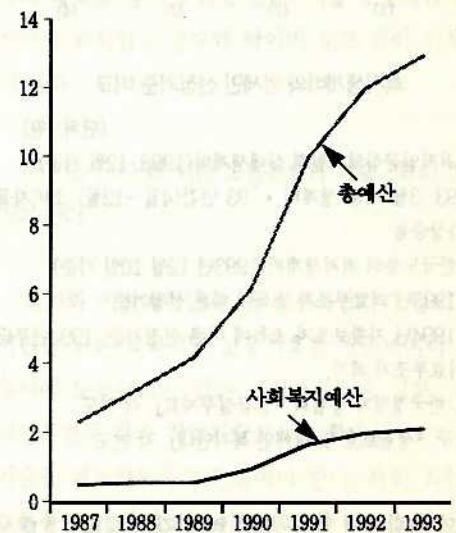
게다가 계속되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서민들이 살 아갈 수 있는 싼 주거지를 계속해서 해체하여 중산층 이상의 비싼 아파트들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의 성격이 여전히 도시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개발이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사회복지

(1) 턱없이 낮은 사회복지예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특히 우리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훨씬 뒤처지는 나라에 비해서도 현저히 복지예산이 뒤처진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전국 도시의 총세출과 사회복지세출 증가추이 비교(88~92)  
(단위: 조원)



주: 여기서 세출은 일반회계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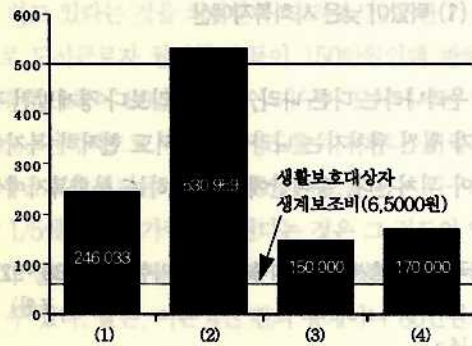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의 낮은 비율은 그 연도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

앞 쪽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도시들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 예산에 쫓겨맞춘 생활보호

공적부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영세민 선정기준 비교

(단위: 원)

-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태생계비(1993. 12월 기준)
- '93. 3월 기준 생계비 \* '93 년간(4월~12월) 소비자물가상승율
- (2)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1993년 12월 10일 기준)
- (3) 1993년 의료부조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 (4) 1994년 자활보호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1994년부터 의료부조자 폐지.

자료: 한국경영자 총협회, 『임금실무자료』, 각 연도 관악구, 『생활보호 및 장애인 복지안내』, 각 연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95 거택보호자 기준 7만8천원, 복지부 최저생계비

18만8천원).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공적부조의 문제는 단지 급여의 정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1997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소득은 거택보호자의 경우 가구 1인당 21만원 이하, 자활보호자의 경우 22만원 이하이다. 그 외에도 법정요건을 만족해야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짜여진 예산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관악구나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구, 서초구의 생활보호자 생활수준이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는 실제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급여를 제공할 것보다, 정책의 필요에 의해 선정되고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도시서민 외면하는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보조가 미흡한 까닭에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충실하기보다 복지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에 많은 인력과 사업을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도, 필요한 업무에 비해 그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고, 그나마도 이들의 업무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도시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2. 개선방안

가. 도시서민의 고용안정과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1) 연 200일 이하 노동에 대해서 생계비를 보조한다

건설일용노동자들과 같이 기업주와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업을 당하는 수가 많다. 즉, 일용·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하루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용관계가 일단 종료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용·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기간 외에는 실업,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감이 없을 경우 일용·임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계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경기불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일용·임시직 노동자들(연 200일 이하 노동자)의 실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자신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생계보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영세민 취로사업이나 생계보조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전근대적인 일용건설노동의 고용구조를 개선한다

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의 중층적인 하도급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확보한다.

(3) 임시, 일용노동자의 작업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현재 사업규모(총 공사비 기준)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강제가입토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험을 규모에 상관없이 전 사업에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4) 임시직,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보한다

임시직,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제도에는 일용건설자들의 지역노조 설립 및 국가지원, 영세노점상의 단결권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교섭권을 인정하는 '점포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노동자를 보호한다

영세하청업체에 근무하거나 가내하청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법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적어도 최저임금 준수와 탁아비 보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도시서민을 위한 고용창출과 기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사업기관 등이 도시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노동능력이 있는 도시서민들에 대한 공공립 직업훈련 등 각종 직업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문기술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여, 누구라도 쉽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서민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준을 '총액임금'의 50%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대기기간도 7일로 단축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 (1) 최저주거기준을 공식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거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주거권의 조건에 대해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연구하고 결정해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정책적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포괄적으로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와 관련된 하위법에서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택과 관련한 모든 제도에서 도시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는 일반 주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도시서민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주택건설과 관

리를 주택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2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임대료 보조를 실시한다

지금과 같이 일부 계층에 한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월세 보증금을 용자해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도시서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신청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5) 현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정책을 실시한다

재개발정책은 소수의 투기꾼과 건설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대형 중심의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도시서민의 형편에 맞는 소형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외지 가옥주의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고,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거나 순환식 개발을 통해, 도시서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주거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세입자에게도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 (6)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우리 나라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상 현재의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모든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등을 통해 임대료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도시서민들의 의료보장을 실시한다

현행 치료 중심의 보험 적용, 과다한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도시서민들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 적용의 범위를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지금보다 현저히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도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누진율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도시서민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라. 도시서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를 정비하고 확대 실시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적용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으로 재정적 파탄지경에 이르러, 서민 및 근로자의 노후 최저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법에 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장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예컨대 도시서민을 위해서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평균소득자의 임금대체를 40% 이상 보장, 상해급여와 유족급여의 임금대체를 40% 이상 보장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마.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설정한다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도 설정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바.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들을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생업자금 및 창업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

##### 사.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를 보다 많이 양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지역사회복지는 도시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전문가를 보다 많이 양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보다 확대한다.

## 신고한 시위를 무력 저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 장

원 고 이장호 외 14(별지목록에 기재한 이름과 주소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 창림빌딩 2층(우:135-080)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2. 엄호성

서울 중구 저동 2가 62(우:100-032)

3. 이성규

위 같은 곳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0원 및 1996.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원고들은 1996. 8. 8. 11:00경 명동성당을 출발하여 중앙극장과 외환은행본점을 경유하여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오는 시위진행을 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피고 엄호성은 중부경찰서장이고, 피고 이성규는 같은 경찰서의 정보과장입니다.

2. 이번 시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단체가 주최하는 '96 양심수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침묵행진이었습니다. 주최자인 민가협은 1996. 8. 5. 중부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시위개최일시: 1996. 8. 8. 11:00~13:00, 주최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위방법: 인도를 따라 행진, 행진하며 홍보물 전달, 시위진로: 명동성당입구앞-중앙극장-외환은행본점앞-에스콰이어-명동성당입구앞)를 제출하였고, 중부경찰서

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의 보완통고나, 시위 금지통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위 단체들의 구성원들로서 위 행사에 참여한 원고들 등 150여명의 행사 참여자들은 예정된 대로 1996. 8. 8. 11:00경 명동성당을 출발하여 시위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들과 참여자들은 누구도 위협한 물건이나 기구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위 도중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예정된 진행방향으로 침묵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미터의 진행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부경찰서장인 피고 엄호성과 그 명령을 받고 현장에 나온 정보과장 피고 이성규는 원고들이 참여한 시위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시위진행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습니다.

4. 시위의 주최자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승훈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 김철준 등은 신고한 시위를 막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요구하자, 피고 이성규는 시위자들 중 일부가 '수의' (죄수복)를 입고 있고 '포승' (포승형태의 줄)으로 묶여 있으므로 신고되지 않은 시위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위자들 중 일부가 착용하고 있는 옷은 '수의' 형태의 일반적인 옷에 불과하지 '수의'가 아니며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어떤 옷을 입고 시위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이성규는 막무가내로 200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도로를 전면통제함으로써 시위의 진행을 무력으로 막아섰습니다.

5. 하지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법률로 일정하게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금지통고를 하지 아니한 시위를 무력으로 막아설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집시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유, 즉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에 하는 집회 또는 시위, 국회의사당 등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만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6. 원고들이 주최하고 참여한 위 시위는 금지통고를 받지 않았고, 시위금지시간도 시위금지장소도 아니었으며 인도를 따라서만 행진하는 평화적인 침묵시위였으므로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할 수도 없었던 외에 어떠한 시위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 엄호성 등이 주장하는 신고하지 않은 시위용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도('수의'형태의 옷'은 시위용품이 아니나 시위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집시법 제6조는 '그 목적,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세,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위용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집시법 시행령 제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 원고등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시위를 막지 말 것이며 만약 시위를 계속 막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정보과장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계속 시위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에 원고등 시위참여자들은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 위와 같은 피고 이성규등의 행위는 명백하게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제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9조 단서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위 피고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시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가 금지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도 분명합니다.

9.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로서 인정하는 이유는 이 자유와 권리가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피고 엄호성, 이성규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위와 같은 점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가 침해당하였고, 그 침해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합니다. 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0.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6.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기타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96. 8.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 창 국
- 변호사 이 석 태
- 변호사 김 형 태
- 변호사 조 용 환
- 변호사 김 기 중

서울지방법원 귀중

**원고목록**

번호	이 름	주 소	구 분
1	이장호	서울 서초구 염곡동 265번지	영화감독
2	변영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35-9 고급빌딩 4층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영화감독
3	나해집	서울 강북구 번2동 148-65 열림교회	목 사
4	황상익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1동 306호	교 수
5	이영우	서울 도봉구 창1동 659-30 천주교 창동교회	신 부
6	임선순	서울 마포구 아현3동 631-26 21통3반	민가협 회원
7	김순자	서울 관악구 신림3동 610-127 지층 4호	민가협 회원
8	최인화	서울 중구 황학동 2544 1/13	민가협 회원
9	정동희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217-2 (장안시장 내)	민가협 회원
10	유임순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1-9	민가협 회원
11	조순선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주공아파트 402동 1209호	민가협 회원
12	김순태	서울 강서구 등촌 1동 655-27 현대아파트 101동 110호	교 수
13	고재환(지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번지 보광사	스 님
14	정성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 411호	원불교 교무
15	김철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벽산한성아파트 802동 1102호	변호사

# 신고한 시위를 무력 저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1997. 8. 29. 판결선고	인
1997. 8. 29. 원본영수	

## 판 결

사 건 96가단174974  
 원 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광주 북구 운암동 294번지 7동 5반 운암아파트 326동 102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재형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소송수행자 김윤상  
 2. 엄호성  
 서울 중구 저동2가 62  
 3. 이성규  
 위 같은 곳  
 변론종결 1997. 7. 25.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6. 8.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남규선의 증언,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단체가 연대하여 1996.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명동성당에서 주최하는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이라고 한다)는 침묵행진을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1995. 8. 5.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신고사항을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1996. 8. 8. 시위를 개최하였다.

- 집회의 명칭: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
- 집회의 목적: 양심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 개최 일시: 1996. 8. 8. 11:00~13:00
- 개최 장소(시위 행진의 진로): 명동성당 - 중앙극장 - 의환은행 본점 옆 - 에스콰이어 로타리 - 명동성당 입구 앞
- 질서 유지인: 신승민등 10명
- 시위 방법: 3월 종대로 인도 이용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며 홍보물 전달

나. 원고들을 포함한 150여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민가협이 개최하는 위 시위에 참가하여 이날 11:00경 명동성당을 출발하여 중앙극장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00여명은 죄수복 형태의 옷을 착용하고 포승으로 서로를 앞뒤로 묶은 채 시위 행렬의 선두에서 도로를 행진하였다.

다. 이들 시위 대열이 진행하던 도로는 인도와 차

도가 백색의 경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위 대열은 그중 차도로 진행하였으며, 시위자들이 착용하고 있던 죄수복 형태의 옷은 단순히 수의에서 디자인을 착안한 수의 형태의 일반복이라기보다는 왼쪽 가슴 부분에 죄수번호가 부착된 것으로서 형태상 죄수복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포승 역시 형사절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외양을 띠는 것이었다.

라. 시위대열이 채 50미터를 진행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인 피고 이성규는 원고들이 참가한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면서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을 착용할 것을 요청하며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 진행을 막았다.

마. 그러자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며 도로 가운데서 연좌농성을 하다가 약 40분 후 명동성당으로 되돌아갔다.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 3. 26. 법률 제 40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 1항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목적, 일시, 장소, 시위 방법 등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신고하여야 할 시위방법으로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산기, 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 (5) 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이 표시된 약도, (6)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민가협에서는 위와 같이 수의형태의 옷을 착용하고 포승으로 서로를 묶은 채로 시위를 진행한다는 것을 시위방법으로 신고한 바 없었다.

##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중부경찰서장인 피고 엄호성의 지시를 받은 피고 이성규가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시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부담자로서, 피고 엄호성, 이성규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이러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을 기초로 하여 우선 피고 이성규등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시위를 저지한 것이 위법한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에서 시위 주최자에게 시위방법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취지는 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는지, 사회의 공공안녕질서를 침해하였는지의 결과에 관계없이 당해관청으로서의 사전에 시위 자체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시위방법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위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진 경

우 그 신고내용과의 차이가 타인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극히 미미하여 당초 신고된 바와 전체적으로 보아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시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비조직적이고 유동적인 시위의 특성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 신고내용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는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변경된 내용의 시위가 실제로 공공질서를 침해하였는지의 결과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런 견지에서 법에서도 시위의 주최자에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금하면서(법제14조 제4항 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까지 마련하고 있다(법제19조 제3항).

둘이켜 이 사건을 보면, 위와 같이 통상 착용하지 아니하는 죄수복 형태의 옷을, 그것도 가슴에 수인번호를 부착한 채로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나아가 포승으로 상호결박까지 한 채 시위를 하는 경우, 이는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 방식으로서의 시위방법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신고대상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시위방법은 그 시각적 효과가 매우 큰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자들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그들을 자극하여 상호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질서 유지의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로서는 미리 이러한 내용을 신고받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등 중요한 시위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심의 도로를 행진하는 내용의 시위를 인도에서 할 것인지 또는 차도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것이 교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역시 중요한 시위방법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죄수복과

포승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도로 행진하겠다는 신고 내용과는 달리 차도로 행진한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된 시위방법을 현저히 일탈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 시위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공질서 유지를 책임진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였다고 한들(원고들은 경찰관들의 이러한 저지행위를 두고 시위의 금지 또는 해산이라고 보고 이는 법 소정의 금지 또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성규등 경찰관들이 신고내용과 다른 원고들의 시위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으면서 신고내용대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더 나아가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 또는 강제해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를 두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엄호성, 또는 이성규가 이 사건 시위 저지와 관련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

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엄호성, 이성규의 시위 저지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9.

판사 김홍도

### 원고목록

소장 참조

## 한국노동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 장

#### 원 고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서울 성북구 동서문동 4가 278의 2 백호빌딩 4층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 김종배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4.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의 29 4층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희, 백승현, 정연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4 영웅빌딩 3층

변호사 안상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1의 8 건원빌딩 401호

#### 피 고

1. 주식회사 한국노동당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38

대표이사 이도형

2. 이도형

서울 종로구 청운동 벽산빌리지 7동 12호

3. 전원영

위 같은 곳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노동당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노동당 25쪽에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1. 당사자 관계

#### 가. 피고들에 대한 설명

피고 주식회사 한국노동당은 월간 『한국노동』의 발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 이도형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위 월간 『한국노동』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자, 피고 전원영은 위 법인 소속 기자인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수차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 『한국노동』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 나. 원고들에 대한 설명

(1)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은 1988년 5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률전문가단체입니다.

(2) 원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라 한다)은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 민족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사회운동단체로서 산하에 각 부문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3) 원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라 한다)는 1994년 9월 10일 창립된 시민운동단체로서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등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회원 2,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국내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에 인권의식을 확립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문단체로서 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사무국장 이하 실무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원고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피고들이 월간 『한국노동』에 게재한 기사들로 인하여 법률전문가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로서의 명예에 심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한국노동』 1997년 2월호에 실린 「노동운동인

가, '노동당운동'인가?'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 이도형은 월간 『한국논단』 1997년 2월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소제목> 資本家 對 노동자, 계급투쟁이 기본구도

제작년 봄(95년 4월)에 이르러서는 소위 '노동법 개정투쟁'을 내걸고 25개 단체들로 '진퇴'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 동시다발 '평화대행진' 전개와 함께 민노총의 총파업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범대위는 '전국연합', '한총련',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함께 파업압력을 가하고 있다. ... (중략) ... 이들의 기본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으로 되도록 과격한 행동을 지향,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논단』 2월호 21쪽에서 22쪽)

또한 피고 이도형은 위 기사 중 밑줄친 부분을 발췌하여 23쪽에서 다시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 이도형이 작성한 위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입니다. 원고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이 「노동법개악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민

노총의 총파업을 선동한 사실도 없고, 한국노총에 파업압력을 가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원고 민변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이고, 원고 전국연합은 민주주의 실현과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운동단체이며, 원고 참여연대는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회칙, 정관 내지 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고 이도형은 원고들이 계급투쟁과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였습니다.

(3) 피고 이도형은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지위를 악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도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위와 같은 피고 이도형의 기사작성·게재행위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한국논단』 1997년 3월호에 실린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 전원영이 작성하여 『한국논단』 1997년 3월호에 실린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제목의 기사는 기사의 제목 바로 밑에 굵고 큰 글씨로 "1천억 넘는 무노동·유임금, 노조 각출금 체제 파괴 공작비에"라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단 후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실고 있습니다.

(중략) <소제목> 극소수의 노동자가 「혁명의 주력군」이다.

(중략)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엮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작년 12월 28일 결성된 노동법 범대위(공동대표 김상곤 등) 참가단체들이 그 주축이다. 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 ... (중략) ... 참여연대 ... (중략) 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김상곤(민교협), 신창균(범민련), 천영세(전국연합), 오세철(지식인연대), 최영도(민변), 문규현(정사단), 최지선(전불련), 김중배(참여연대) 등이다. 이들은 범대위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계에 정치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한국논단』 3월호 27쪽부터 28쪽까지)

(2) 피고 전원영이 작성한 위 기사 중 발췌한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입니다. 먼저, 피고 전원영은 원고 전국연합과 참여연대가 1996년 12월 28일경부터 참가한 바 있는 「노동법 및 안기부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한다) 참가단체들을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엮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범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단체들로서 이들은 비록 비정부기구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틀 내에서 인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정관이나 규약을 살펴보면, 원고 참여연대는 그 정관 제2조(목적)에서 밝혔듯이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고 전국연합은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 평화적·자주적인 민족

통일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전원영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러한 단체들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3) 또한 피고 전원영은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가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핵심"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의 사실입니다. 원고들은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원고들의 정관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고 전국연합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대표적인 재야단체이고, 참여연대는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보편화된 이론인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원고 민변은 변호사법 제1조가 추구하고 있는 바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지 피고의 상식이 의심스럽습니다. 피고 전원영은 원고들이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피고 전원영의 기사내용은 그동안 원고들이 법률전문가단체로서, 그리고 건전한 시민사회운동단체로서 쌓아온 명예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전원영의 기사는 원고들이 그동안 국민대중들로부터 획득한 신뢰성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의도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피고 전원영이 원고 단체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저명한 언론인과 법조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기사를 작성한 점, 1997년 2월호에 이어 3월호에서 또다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만 보아도 피고 전원영의 악의는 명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며,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체제파괴적이라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5) 피고 이도형은 주식회사 한국논단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전원영이 작성한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월간 『한국논단』 3월호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인 자입니다. 비록 위 기사를 직접 작성한 자는 피고 전원영이라고 하나, 피고 이도형은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사가 작성·게재되는 과정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방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전원영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언론법인으로서 피고 전원영과 이도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논단』 1997년 8월호에 실린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 이도형은 월간 『한국논단』 1997년 8월호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원고 전국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였습니다. 위 기사는 제목 바로 옆에 “대한-민주공화국인가?, 조선-인민공화국인가?”라는 부제를 단 후, 그 밑에 아래와 같이 원고 전국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소제목> 공산당 지원하고 있는 재야단체들

(중략) <소제목> 북한산 술 팔아 자금마련

특히, 「전국연합」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 (중략) … 전국연합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밀誌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 「애국가」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밀誌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권양섭이 최근 사망하자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한국논단』 1997년 8월호 21쪽에서 22쪽).

(2) 그러나 피고 이도형이 작성한 위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입니다. 먼저, 원고 전국연합이 94년 3월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모략입니다. 전국연합은 1994년 3월 결성되었다는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에 대해서는 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단체가 있다고 해도 전국연합은 그러한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피고 이도형은 전국연합이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이도형은 “전국연합의 인권운동사랑방”이라고 하여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연합의 산하단체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전국연합의 산하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 이도형은 인권운

동사랑방이 공산주의자들을 애국가로 미화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로서 인권문제의 일환으로서 장기수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공산주의자들을 애국가로 미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 이도형이 예로 들고 있는 말지 5월호의 기사에서도 소의 권양섭을 미화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단지 권양섭이라는 미전향장기수의 죽음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재조명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권양섭이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표현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이도형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3) 피고 이도형은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인 지위를 악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 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도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위와 같은 피고 이도형의 기사작성·게재행위에 대하여 민법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금전적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금액은 위 기사들의 취재목적과 경위, 보도내용의 악의성과 편파성, 원고들의 사회적 지명도, 피고들의 자력과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부수와 판매량(월간 『한국논단』은 서울시내 지하철 객차 안에 있는 광고란에 계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그 기사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대한 것입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1997년에만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하여 작성 게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단체들 각각에 대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나.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의 게재

아울러 원고들이 회원모집에 사활이 달려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인 점, 피고의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로 입은 명예훼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회복에 충분치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에 대하여 민법 제 764조에 따라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공고문을 이 판결 선고 후에 처음 발행되는 월간 『한국논단』에 게재할 것을 청구합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7. 8.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처음 발간되는 월간 『한국논단』에 별지1의 공고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입증방법**

- 1. 갑 제1-1호증 민변
- 1. 갑 제1-2호증 "
- 1. 갑 제1-3호증 "
- 1. 갑 제1-4호증 "
- 1. 갑 제1-5호증 "
- 1. 갑 제1-6호증 "
- 1. 갑 제2-1호증 전국연합
- 1. 갑 제2-2호증 "
- 1. 갑 제2-3호증 "
- 1. 갑 제2-4호증 "
- 1. 갑 제2-5호증 "
- 1. 갑 제2-6호증 "
- 1. 갑 제2-7호증 "
- 1. 갑 제3-1호증 참여연대
- 1. 갑 제3-2호증 "
- 1. 갑 제3-3호증 "
- 1. 갑 제3-4호증 "
- 1. 갑 제3-5호증 "
- 1. 갑 제3-6호증 "
- 1. 갑 제3-7호증 "
- 1. 갑 제4-1호증 인권운동사랑방
- 1. 갑 제4-2호증 "
- 1. 갑 제4-3호증 "
- 1. 갑 제5-1호증 월간 『한국논단』(1997년 2월호)
- 1. 갑 제5-2호증 "
- 1. 갑 제6-1호증 월간 『한국논단』(1997년 3월호)
- 1. 갑 제6-2호증 "
- 1. 갑 제7-1호증 월간 『한국논단』(1997년 8월호)
- 1. 갑 제7-2호증 "

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 회칙
- 조직과 임원
- 연혁
- 제10차 정치총회회의록
- 제9차년도 사업보고
- 제9차년도 결산보고
- 구성
- 규약
-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구성예관규정
- 참관단체예관규정
- 상벌및복권에관한규정
- 6기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6기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기구표
- 정관 개정안
- 임원인선 · 보강안
- 경과보고(94. 9. ~95. 3.)
- 경과보고(95. 3. ~96. 2.)
- 경과보고(96. 3. ~96. 9.)
- 97년 주요 활동
- 규약
- 연혁 및 조직
- 93~97년 사업실적
- 표지
- 내용
- 표지
- 내용
- 표지
- 내용

**첨부서류**

- 1. 소장부분 3통 원고들 소송대리인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변호사 백승헌
- 1. 소송위임장 1통 안상운  
조광희  
정연순

**참고자료**

- 1. 『한국논단』 목차(96. 1. ~97. 7.)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지 1.**

제목: 본지 1997년 2월호에 게재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 인가」, 3월호에 게재된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 8월호에 게재된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인하여 본지가 피해자들에게 각 금 50,000,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내용: 본지는 1997년 2월호 21쪽부터 25쪽까지 사이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 인가」, 3월호 26쪽부터 31쪽까지 사이에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 8월호 20쪽부터 23쪽까지 사이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바, 위 기사들의 본문 내용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라 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라고 한다)가 마치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계급투쟁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과 인권운동사랑방이 마치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허위보도가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단체들에 대하여 금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5.18 관련 수사기록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공개의 방법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청구이유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첨부                    위임장 1통

1997. 9.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 별지 청구이유

1. 청구인들은 1980. 5. 18.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신창 외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군인들의 내란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 1994. 5. 13. 위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35명에 대하여 내란죄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나(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 47925호 및 94형제 47924호) 서울지방검찰청 및 국방부 검찰부는 1995. 7. 18. 위 피고소인 35명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소인들의 행위나 조치가 구체적으로 내란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피고소인들 전원에게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첫째, 정치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헌법질서를 수립해나간 경우에는 무너진 구헌정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

며 둘째, 이러한 견지에서 형법학자들은 내란죄에 대하여, 이는 현존하는 국가의 헌법상의 통치기구 또는 정치적 기본제도에 대항하여 이를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처벌법규가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어 역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전두환이 1981. 3. 3.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전두환등이 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선포, 김대중 등 여야정치인과 재야인사 등의 체포·연행·감금, 정치활동의 금지와 임시국회의 소집무산,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의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새 정권이 출범하여 새로운 헌법질서가 실효화되었으므로 위 피의자들이 정권창출과정에서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은 첫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에 위반되고, 둘째, 헌법상의 삼권분립제도와 사법부의 독립조항에도 반하며, 셋째, 고소인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법 앞에서의 평등권(제11조),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국민의 구조청구권(제30조) 등을 침해한 위헌·위법의 처분이므로,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은 위헌·위법임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인들인 청구인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피해자진술권, 범죄피해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무참히 침해당하였으며 과연 이땅에 법이 존재하는지, 정의가 살아 있는지 또 검찰조직이 왜 필요하며 검찰이 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등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1995. 12. 12. 대한민국의 5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5가합 109826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문서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방법인 문서등본송부촉탁 및 서증조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채택하는 증거결정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조사협조의뢰를 받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문서들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에 불응하였다.

5. 그러나 별지 제2목록기재 문서들은 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로서 민사소송법 제3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마땅히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위 문서들은 청구인들이 1994. 5. 13. 소외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죄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대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들

이 위 피고소인 35명을 포함한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내용 및 관련 수사서류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청구인들의 청구원인 사실 즉, 청구인들의 고소한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 전두환, 노태우 등을 직접 그리고 충분히 수사를 하였는지 여부,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인 장운석이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사유의 유무,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공모 내지 방조행위(결재과장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1) 청구인들이 1994. 5. 13. 서울지방법검찰청에 소의 전두환, 노태우등 35명을 내란죄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 (2) 청구인들이 위 형사고소에서 고소한 내용은 소의 전두환, 노태우등이 1980. 5. 18.~1980. 5. 27 사이에 전남 광주시(당시) 및 전남도 일원에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군사반란죄 등 반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는 고소인들 및 피고소인들을 소환, 수사하는 등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의 별다른 증거수집등 수사활동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른바 계엄군에 의한 주남마을 양민학살등 내란목적살인죄 및 군사반란죄 등 일부 고소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3)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인 장운석이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을 1995. 7.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증거조사나 법률적용, 법률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4)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인 장운석이 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인 서울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인 한부환,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장인 최영광, 검찰총장인 김도연, 법무부장관인 안우만에게 각 순차로 보고한 사실과 그에 대하여 상급자들이 불기소처분으로 지시(결재)한 사실 (5)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인 장운석이 1995. 12. 청구인들이 고소한 사건을 대통령의 지시(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기하여 당초 불기소처분시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고소사실까지도 수사하여 공소제기한 사실 (6) 청구인들이 당초 고소한 내용이 1995. 12. 이후 거의 대부분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초(1995. 7. 18.자)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배한 위헌적 처분이며 아울러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들이므로 마땅히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6. 그럼에도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장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들의 알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들은 위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위 문서들의 등사분량이 과다할 경우 그 일부분씩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열람 및 등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귀 청의 예산상 등사비용(등사용지 포함)이 문제될 경우 청구인들이 직접 등사용지 및 등사장비를 마련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7. 따라서 조속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다.

별지 제1목록

- ① 청구인 1. 강두구  
광주 북구 용봉동 605-11
- 의 167명
- 2. 이하 생략

별지 제2목록

- 1. 서울지방법검찰청 93형제 51255호, 81259호, 82885호, 94형제 47924호, 47925호, 51321호, 73430호, 73434호, 73929호, 74313호, 74327호, 74333호, 74342호, 74350호, 74357호, 77253호, 77278호, 77651호, 79572호, 79573호, 110643호, 110878호, 124705호, 124818호, 124819호, 131023호, 132154호, 132155호, 95형제 4980호, 33568호, 69645호, 95형제 144116호, 96불항 383호, 393호 피의사건 기록 일체
- 2. 서울지방법검찰청이 1995. 7. 18.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서 및 그에 대한 보도자료문 일체
- 3. 대법원 96도 3376호, 서울고등법원 96노 1892호, 서울지방법원 96고합 1280호 피고사건 기록 일체

# 사업 및 업무보고 (97년 8월 29일~9월 24일)

## I. 모임 현황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87명, 부산·경남지부 27명,  
대전·충청지부 10명  
총 224명

## II. 사업 및 업무보고

### 가. 사무국 업무보고

- (1) 8월 정기 월례회 개최 / 8. 29.  
- 23명 참가  
- 강연 : 북한 방문기 / 강사 인요한 세브란스 의  
국인 진료소 소장
- (2)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 민교협과  
공동 / 9. 5. 오후 2시 종로성당
- (3) 부산지부, 대전·충청지부, 본부 간사 모임 / 9.  
5.~9. 6.  
- 부산의 하근씨, 대전지부의 김종복 소장, 박정  
임 간사 참가
- (4) 성명서 발표  
①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 발표 /  
9. 2.  
②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 전·노사면 반대한다」  
발표 / 9. 4.

### 나. 언론배달보고

- (1) 엄룡(서강대), 조선아(대전총련 선전국장): 국보  
법등 / 이원영 회원
- (2) 김인호(한양대): 국보법등 / 오세훈 회원
- (3) 광정현(조선대), 최기혜(호남대), 유용혁(한림  
대): 국보법등 / 유중원 회원
- (4) 이성진(시립대): 집시법등 / 신현호 회원
- (5) 조대호, 장영진(서울대): 서울대 학생연대 사건,

### 국보법등 / 한정화 회원

- (6) 김은희(덕성여대): 국보법등 / 김기중 회원
- (7) 이영주(연세대): 서총련 교육선전국장, 집시등 /  
박수근 회원
- (8) 이준구(건국대): 한총련 조총위원장, 국보법등 /  
이경우 회원
- (9) 피광복(대구산업전문대): 집시등 / 이상중 회원
- (10) 신민자(광주대): 집시등 / 임재균 회원
- (11) 이형삼(조선대): 집시등 / 정태상 회원

## III. 상임위원회

### 가. 기획위원회

### 나. 회원위원회

- (1) 이종필 변호사 입회원서 접수

### 다. 출판홍보위원회

- (1) 「이달의 민변」 9월호 발간, 발송 / 9. 18.

### 라. 대외협력위원회

- (1) 민주연대 대표자회의 / 8. 27. 오전 8시 마로니  
에  
① 대선정국에서 국민후보를 결의한 전국연합, 민주  
노총등이 참여한 민주연대가 공정성을 인정받기  
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다. 대선 이후 공고한 연  
대를 위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해 사  
업을 추진하기로 하다.
- ② 대선까지 휴면기로 삼고, 사안별로 연대하자.
- ③ 합의, 실천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실무차원에서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민주연대의 방향을 논  
의, 결정하기로 하다.
- (2) 과거청산국민위, 전·노사면저지 기획단 회의 /

### 9. 2. 오전 8시 한국교회인권센터 회의실

- ① 추석 전 전·노사면이 표면화됨에 따라 부당성을  
적극 공유하고, 대선 표몰이용 사면 반대를 중심  
기조로 실천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하다.
- ② 교수, 교사, 천주교등 과거청산국민위에 참여하는  
각 부문별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선언 또는 광  
고를 8. 9일 이전까지 집중해서 발표하기로 하다.
- ③ 9월 3일과 5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당사 앞에서  
사면반대 집회 갖기로 하다.

### 마. 국제연대 위원회

## IV. 상설특별위원회

### 가. 노동위원회

- (1) 회의: 9. 3.(수) 12:00 오후  
① 10월 전체모임 준비건  
- 주제를 96년 중노위 심결례분석으로 하고, 발  
제자를 이인호 회원으로 확정하다.  
- 심결례자료는 이경우 위원장이 수집하기로 하  
다.  
- 각 위원에게 참가 여부 확인하여 9월 20일까지  
정재성 회원에서 통지하기로 하다.
- (2) 회의: 9. 10.(수) 12:00 호화반점  
① 민주노총,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청  
구기간 결정에 대한 대응 건.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위임장은 류호식  
간사가 챙기기로 하다.
- ② 전혜투지원대책위 회의  
- 전혜투의 중점사업 및 민변의 역할등에 대하여  
전혜철 대외사업부장이 지원대책위의 담당자에  
게 직접 확인하여 앞으로 결합형태등을 결정하기  
로 하다.

### 나. 언론위원회

- (1) 회의: 8. 29.(금) 12:00 민변사무실  
① 「나는야 통일 1세대」 용공도서매도에 대한 공  
동변호인단 요청건  
- 안상운, 김기중 회원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키  
로 하다.
- ② <LaborMedia' 97> 대회 참가요청건  
- 김기중 회원이 참여하기로 하다.
- ③ 표현매체에 대한 최근의 규제현상에 대한 문  
제  
- 민예총, 민교협 등 주관의 「표현의 자유 대토론  
회」 보고하고, 조광희 위원이 보조발제자로 참여  
하기로 하다.

### 다. 사회복지위원회

- (1) 국민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참여 / 대  
표회의 결과  
① 공동대표 2인 선출등 공동대표를 5인 체제로  
확정하고, 사무처장도 확정함.
- ② 복지예산 문제토론회를 신한국당의 안이 나오  
는 것을 지켜보고 개최하기로 함
- ③ 토론회의 날짜를 9월말이나 10월 초쯤에 개최  
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실 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기로 하다.

### 라. 환경위원회

### 마. 사법위원회

- (1) 회의: 8. 27.(수) 12:30 민변사무실  
① 영장실질심사제 대응건  
- 김제완 위원의 원고가 9월말에 완성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② 대법원판사 임명의 건  
- 대법원판사 임명의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의 의견서 발표와 일정을 맞추어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천낙봉 간사가 담당하기로 하다.

③ 수사기관의 야간, 철야수사 대응건  
7월말 검찰에서 철야수사를 받고 돌아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쟁송의사 확인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바. 통일위원회

(1) 회의: 9. 2.(수) 저녁 6시 30분 민변사무실

①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지속적 전개에 대한 제안  
- 북한의 기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한번에 많은 액수를 거두어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월 1만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약정하여 자동이체화하는 안이 제기됨. 집행위에 보고하여 결정에 따라 모임의 사업으로할지, 통일위 자체사업으로 할지 결정키로 요청.

② 북한동포돕기 보고대회 비용을 위원회에산으로 할지 여부 사무국과 협의하기로 함.

③ 김진옥 회원이 북한동포돕기 기금마련 사업으로 주말법률상담을 제안. 김진옥 회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오기로 함.

④ 이상호 회원이 탈북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자료검색한 경과를 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위 특집기획안을 마련하기로 함.

⑤ 차정인 회원이 신입회원으로 가입.

(2)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6차 실행위 / 9. 19.(금) 12:00

① 9. 5. 보고대회에 대한 평가

② 전국보고대회 자료집 증보판을 500부 제작하여 각 단체와 유관기관에 발송하기로 함.

③ 전국회의의 향후 사업과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

기 위하여 실행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다. / 10. 7.(화) 오후 4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의정부의 다락원 캠프장

사. 경제정의위원회

아. 동북아시아 특별위원회

(1) 회의: 9. 11. 18:30 민변사무실

- 강연: <현대일본의 역사외식> 강연 / 강사: 윤진차 교수

V. 임시특별위원회

가. 민변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나. 형사자료집발간팀

다. 통합전자주민카드대책 특별위원회

(1) 통합전자주민카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회의 / 9. 4.(목) 12:00 참여연대(별첨)

- 자료집 제작과 배포, 홍보계획 등 논의

(2) 회의: 9. 4. 19:00 민변사무실

①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활동보고

- 김기중 회원이 참여연대의 이대훈 국장과 함께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임.

② 프라이버시보호법에 관한 건

- 명칭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안

라. 정보통신위원회

(1) 회의: 8. 30.(목) 12:00 민변사무실

- 9월 12일을 최종마감일로 하고 번역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모아 소책자로 발간키로 함.

- <LaborMedia '97> 대회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도형 회원이 참여하기로 하다.

마. 정치개혁임시특별위원회

바. 미국법연구위원회

(1) 회의: 9. 2. 12:00 나라합동

① 미국법개론을 4개월에 걸쳐 공부하고 이후 각론적 활동을 모색하기로 하다.

② 모임 날짜를 한달에 2번,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갖기로 하다.

③ 10월 첫번 모임에 연세대 영미법 교수 이상운 씨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로 하다.

# 성명서

##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

- 새 대법관은 민주적 의견수렴과 인적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

1997. 9. 11.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에 관하여 법조계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다. 우리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어떤 인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양상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리를 새삼 상기시키고 또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대법관은

- 첫째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민주발전에 기여한 사람,
- 둘째 청렴한 생활과 겸허한 행동으로 국민과 법조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 셋째 소신과 용기로 사법권의 독립에 헌신한 사람,
- 넷째 사회발전에 적응할 지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반드시 위와 같은 인물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오로지 입신양명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법조인의 기본적 사명을 외면한 채, 공권력으로부터 무참하게 유린당한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법논리로 파악하지 않고 권위주의 정권의 잣대로만 사실적으로 판단하였던 사람,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무력화시키는 발언으로 법제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사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인권존중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출세지향적이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고르는 일은 단지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로 중대한 사안 이므로 대법원장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인물들을 두루 추천받기 위하여 각계의 의사를 대표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인사들로 대법관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그 추천에 따를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도 없이 찬반투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그들이 과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적절한 인물인지를 세밀히 검증함으로써 합당한 인물이 대법관에 임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대법관추천기구 구성, 인사청문회 개최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기 위하여 차제에 법원조직법, 국회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위와 같은 추천 절차나 청문 절차는 최고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라는 시대적 요청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1997. 9. 2.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성명서

## 서성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견해

윤관 대법원장은 1997. 9. 11. 임기가 만료되는 박만호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동안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 문제는 법조계 주변에서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다는 점 그리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어떤 인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양상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또 어떠한 인물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그것이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다.

### 대법관은

- 첫째,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민주발전에 기여한 사람,
- 둘째, 청렴한 생활과 겸허한 행동으로 국민과 법조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 셋째, 소신과 용기로 사법권의 독립에 헌신한 사람,
- 넷째, 사회발전에 적용할 지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오로지 입신양명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범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사명을 외면한 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 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범조인으로서의 인권존중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으로서의 생활을 살펴보면 다음의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선정 기준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본다.

서성 내정자는 83~86년 5공 치하에서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1985년경에는 김근태씨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혹독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또한 이러한 고문에 의하여 행해진 수사자료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또한 검사가 징역 10년형을 구형하였는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당시 일반 공안사건에 적용되는 양형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가혹하였다.

또한 93년에 있었던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의 사법개혁에 관한 성명서에 대하여도 "성명서의 내용 중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리기도 했다는 표현은 수긍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시 판사들이 고쳐야 찬 자기 반성에 대하여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도 하였다.

93년에 있었던 재산공개 당시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의 공개를 거부한 점도 법관으로서 당연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1997. 9. 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성명서

##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중 전·노씨 사면에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여야당 대표들의 발언으로 벌어진 추석 전 전두환·노태우 사면 문제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된 것을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며 정략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면 논의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일 밤 진행된 김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더 큰 우려 하나를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김대통령은 전·노씨에 대하여 자신의 임기중 사면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여·야당 대표들이 무책임하게 사면 운운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역사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진정한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국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권을 회화화시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악습은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 정권 아래서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어 왔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이번에 여당 대표에게 밝혔다는 자신의 임기중 사면은 지난 시기 권력형 비리사건 주범들에 대한 사면조치와 그 궤를 같이 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군주 아래서의 은사권과 같은 것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책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노씨 등 5·18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권력자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국민 대다수는 전·노씨에 대한 사면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노씨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힌 바도 없고, 뇌물로 받은 천문학적 비자금도 아직도 숨기고 추징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배상,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인권 피해자들이 전·노씨에 대한 관용을 요구해온 바도 없으며, 전·노씨가 집권할 당시 민주회복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 아직도 수감중인 양심수들도 적지 않다.

결국 현재 상황은 전·노씨의 사면 논의를 진행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 대통령은 전·노씨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자신의 임기 중 행하겠다는 오만하고 반법적인 발상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임기중 사면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천명하고 오로지 과거의

적폐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권력형 비리와 실정 등으로 얼룩진 자신의 임기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임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1997. 9.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이달의 민변 정기구독회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언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전문 법률가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속회원들의 성과물을 매월 『이달의 민변』이라는 월간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외부 인권단체 자료와 법학자, 인권운동가의 글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던 『이달의 민변』을, 통권 제10호(97년 7월호)부터 비회원에게도 판매합니다.

책값 권당 3,000원 /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특별소위원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력으로,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 4. 17. 대법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가 된 이 판결에 깊이 관여하여온 민변에서는 판결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여 문헌으로 남겨둘 것을 예정하였고, 이제 『12.12, 5.18 판결 평석집』의 발간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여두고자 합니다.

차례: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 내란죄의 종료시기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 / 5.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신국판 198쪽 / 값 4,000원

###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996 노동판례비평』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젊은 노동법 교수, 노동법 전공 판사들의 1996년 대법원 노동판결 분석서입니다.

책의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원리를 실질적 평등원리에 따라 수정하여 불완전한 시민사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신국판 392쪽 / 값 8,000원

## 이달의 민변 97년 10월호(통권 제13호)

발행일 97년 10월 15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박원순 이석태 조용환 박성호 차병직

이백수 정연순 염규홍 최미희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

나무누리·하이텔 minbyun7

값 3,000 원